

Contents

▶ 대회 개요	1
---------------	---

기조강연

1.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3
한유경(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교폭력예방 정책중점연구소 소장)	

1 분 과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논문〉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과 민주시민교육	21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사례 1〉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큰 기쁨을 만들다!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든 학교규칙	41
대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사례 2〉 새로운 시도 학교구성원(학생·학부모·교사)이 함께 만드는 학교규칙	57
인천 서곶중학교	
〈패널토론 1〉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서의 학교규칙 제·개정	77
송재범(서울시교육청 장학관)	
〈패널토론 2〉 학교(학급)규칙	83
설선국(서울 장원중학교 교사)	
〈패널토론 3〉 기자 입장에서 본 학칙 제·개정 -교육현장의 반응과 제안-	93
최예나(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2 분 과 학교규칙 준수 · 실천운동

〈논문〉 학생자치와 학교공동체	99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	
〈사례 1〉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자율적 학교 문화 조성	115
서울 구암고등학교	
〈사례 2〉 학생이 주인공 되는 짱짱 학교문화	131
경기 오산원일중학교	
〈패널토론 1〉 학생자치 활동을 ‘인성교육’에 연계하는 논의에 대한 토론	149
강태중(중앙대학교 교육학과)	
〈패널토론 2〉 학교규칙 준수 · 실천 운동 토론문	155
김성수 (창덕여자중학교 교장)	
〈패널토론 3〉 학교규칙, 바른 인성 실천의 협약이어야	161
이재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팀장)	

3 분 과 청소년법제관 운영과 학교규칙

〈논문〉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해 본 학생법제교육	169
송상훈(법제처 법제관)	
〈사례 1〉 청소년 법제관 운영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183
서울 풍납중학교	
〈사례 2〉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자율과 책임존중의 송향문화 조성	207
경기 와부중학교	
〈패널토론 1〉 청소년법제관 운영과 학교규칙에 대한 토론	233
정성수(대구교육대학교 교수)	
〈패널토론 2〉 청소년 법제관제 운영을 위한 제언	239
서권수(옥련여자고등학교 교감)	
〈패널토론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245
차지운(법률신문사 기자)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행정학회

□ 일 시 : '12. 9. 26(수) 14:00~17:2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등)

□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3:30~14:00	'30	■ 등록	
14:00~14:30	'30	■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환영사 (허병기 한국행정학회장) - 축 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축 사 (이재원 법제처장)	(중회의실A) 사회: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
14:30~14:40	'10	■ 동영상 상영 -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14:40~15:10	'30	■ 기조강연 -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 방안 (이화여대 한유경 교수*) * 학교폭력예방 정책중점연구소 소장	
15:10~15:30	'20	■ 휴식 및 이동	
15:30~17:20	'110	■ 분과별 주제발표 및 토론 * 논문발표(20분), 사례발표(각20분, 총40분), 패널토론(각10분, 총30분), 청중토론(20분)	

2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_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 간		내 용	비고
		▲1분과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 (논문)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과 민주시민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교수) - (사례1) 대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 (사례2) 인천 서곶중학교 - (패널토론) 송재범(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설선국(서울 장원중학교 교사) 최예나(동아일보 기자) - (청중토론) 질의/응답	중회의실A 사회: 경인교대 김왕준 교수
		▲2분과 : 학교규칙 준수·실천운동 - (논문) 학생자치와 학교공동체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 - (사례1) 서울 구암고등학교 - (사례2) 경기 오산원일중학교 - (패널토론) 강태중(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성수(서울 창덕여자중학교 교장) 이재곤(한국교총 교권팀장) - (청중토론) 질의/응답	소회의실2 사회: 교과부 오승걸 학생자치과장
		▲3분과 : 청소년법제관 운영과 학교규칙 - (논문)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해 본 학생법제교육 (법제처 송상훈 법제관) - (사례1) 서울 풍납중학교 - (사례2) 경기 와부중학교 - (패널토론) 정성수(대구교대 교수) 서권수(인천 옥련여고 교감) 차지윤(법률신문 기자) - (청중토론) 질의/응답	소회의실1 사회: 법제처 방극봉 대변인
17:20		■ 분과별 폐회 및 해산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기조강연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 한 유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교폭력예방 정책중점연구소 소장)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 학생들의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로의 변화

한 유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교폭력예방 정책중점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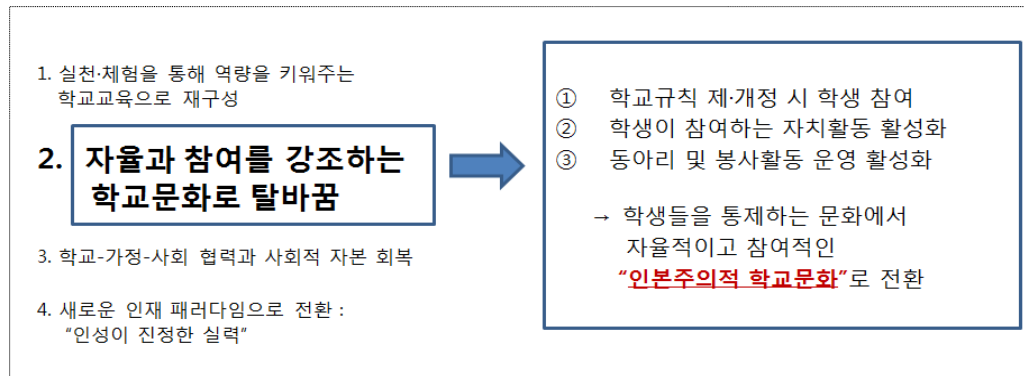
I. 들어가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교과부가 실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17만 명(12.3%)이 최근 1년 이내에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이 가운데 53.6%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이 더 흉포화, 조직화되고 저연령화 되는 것도 학교폭력의 문제이지만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여 아무런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고, 같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등한시 되어 온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인성교육 실태조사(교과부,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학부모, 교사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뢰와 협력, 참여 등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2011년 실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Willower(1967)의 학생통제이념(PCI: Pupil Control Ideology)을 바탕으로 학교문화 이론을 살펴보고, 2012년 인성교육 비전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 활동에 관한 설문’을 통해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운영 등 학생생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통제이념(PCI)이 학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학교규칙, 학생자치, 학교문화 그리고 인성교육 실천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I-1]과 같다.

6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_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그림 I -1】 학교규칙, 학생자치활동, 학교문화, 그리고 인성교육 실천과의 관계

II. 학생통제 방식과 학교문화

학교의 문화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개념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용성과 신뢰의 학교문화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킨다는 개념인 반면, 통제의 학교문화는 학생들의 인성발달- 특히 사회정서발달과 관련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즉, 교사들과 학교장이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배적 통제 양식(dominant control pattern)의 관점과 학생들의 인성발달과 관계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생 지도관은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며 이를 근거로 지도하는 가에 대한 이념이며 지도관이다(Hoy & Miskel, 2010).

학교를 사회적 체제로 보고 학교문화의 구조적 규범적 모습에 관하여 학생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Willower(1967)는 학생지도이념을 측정하는 학생통제이념, PCI(Pupil Control Ideology) 도구를 개발하여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갖는 보호감독적인(Custodial) 태도와 인본주의적인(Humanistic) 태도를 양극단으로 하여 연속선상에 놓고 그 성향을 측정하였다. PCI 양식은 20개 항목이며 Likert 척도로 강한 찬성에서 강력한 반대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PCI 도구는 복잡한 측정은 아니지만 학생통제와 그 특정 개념은 학교문화와 풍토의 또 다른 관점을 나타낸다.

보호감독적 문화(Custodial School Culture)는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하고 고도로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학교로 학생들은 용모, 행동 및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있어 정형화되어 있다. 또한 보호감독적인 지향성을 가진 교사들은 학교를 학생-교사 간에 엄격한 지위 위계로 되어 있는 하나의 독재적 조직으로 생각

하고, 권력과 의사소통은 일방적이고 하향적이며, 학생들은 교사들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 대신 나쁜 행실을 하나의 개인적인 무례한 언동으로 간주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처벌이라는 제재를 통해 통제되어야 할 무책임하고 훈육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식한다. 보호감독적 문화의 학교는 비인격성, 냉소, 감시적인 불신이 학교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이다.

인본주의적 문화(Humanistic School Culture)는 학교를 학생들이 협동적인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생각한다. 또한 학습과 행동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되며, 엄격한 교사통제 대신에 자율이 권장되고, 학교를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이 권고되는 민주적 분위기를 만든다.

■ <표 II -1> 학생통제이념(PCI 문항 구성)

문 항	점 수
1. 수업 중에 학생은 똑바로 앉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논리적 추론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 3. 반항적인 학생을 공개적으로 꾸지람하는 것은 학생지도의 좋은 방법이다. 4. 초임교사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다. 5. 교사의 수업방식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면 수업 방법을 바꿔야 한다. 6. 가장 훌륭한 교장 선생님은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전폭적으로 믿고 지원해주는 분이다. 7.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반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8.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응용이 안 되는 지식일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 9. 수업 준비 시간은 부족하고, 학생지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0. 학생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학생들을 버릇없이 만들 수 있다. 11. 학생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보다 학교의 규칙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12. 학생 자치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학교의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3. 학생들은 교사의 감독 없이도 협동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다. 14. 학교에서 학생들이 음란한 말을 사용한다면 성희롱 또는 성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15. 수업 중에 교사의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런 기회를 학생들이 남용할 수 있다. 16. 불량학생의 경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17.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위와 교사의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18. 학교 물건이나 건물을 손상시키는 학생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19.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무질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20. 학생들은 종종 교사가 곤경에 처하도록 일부러 문제행동을 한다.	<Likert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번 13번 역문항

Willower(1984)와 그의 동료들은 성, 연령, 경력, 교육성취 수준과 같은 교사들의 특성과 교사들의 학생통제이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남교사들이 여교사들보다 그들의 이념에서 더욱 보호주의적이며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학생통제이념에서 더욱 보호주의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들은 보호주의적인 정도는 다소 교사들의 직책, 교육성취 수준, 경력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초임교사들의 교육경력이 증가될 때 학생통제이념에서 보호주의는 감소되었고, 교육행정에 5년 혹은 5년 미만의 경험을 가진 중등학교장들은 경험이 더 많은 교장들보다 훨씬 더 보호주의적으로 나타났다.

보호감독적인 이념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질서유지와 학생과의 정의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존재로 보며, 지도방법은 처벌이 주가 되고 학생을 불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인본주의적 지도이념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학생 개성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특징으로 따라서 학생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계획된 허용적 분위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호감독적 지도관은 강압적으로 학생통솔을 하기 때문에 규율은 엄격하고 통제의 정도가 심하며 권력과 의사소통의 흐름도 책임적이고 하향적이다. 반면에 인본주의적 지도관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원적이고, 상향적인 의사소통망으로 허용하고 있고 자기 결정과 자기 훈련을 조장하며, 학생 개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욕구충족도 조장하는 지도관이라고 할 수 있다(유낙주, 1994). 또한 이런 보호감독적 학교문화는 학생들의 사회정서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을 저해하여(Hoy & Miskel, 2010)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든다.

김소미(2007)의 연구는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의 학생지도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성별, 직위별, 교직경력별에서 모두 인본주의적 지도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의 학생지도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소규모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보호감독적 지도관으로, 대규모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인도적 지도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인본주의적 지도관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2> 보호감독적 문화와 인본주의적 문화의 특징

하위요인	내 용
보호 감독적	· 엄격한 전통적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 학교는 '질서유지'를 위한 엄격한 통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 학생들의 외모, 행동,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학생을 구분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비행,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없다. · 학생들의 잘못된 처벌로서 통제해야 한다. · 불신, 비행에 대한 주의 깊은 감시를 해야 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을 하기 보다는 규칙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인본 주의적	· 학교는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교육 공동체의 장이다. · 학생들의 행동과 학습을 도덕적인 관점보다는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 학생들이 책임감과 자기통제를 배울 수 있다고 본다. ·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해 낙관적이고 항상 열려있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 지위나 규칙에 대해 융통성 있는 민주적 교실 분위기를 조성한다. · 양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나 학생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한다.

출처: 김소미(2007). 학교조직유형과 교사의 학생지도관에 따른 학생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

Ⅲ. 설문 조사 결과 및 시사점

학교문화 실태조사를 위해 총 11,320개 학교의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참여, 학교 규칙,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의 내용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별 응답 대상은 총 9명으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다. 교사는 생활지도부장 또는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 1명과 생활지도부에 소속되지 않은 담임교사 1명이다. 학생은 전교학생회장(어린이 회장) 1명, 학급반장 또는 부반장 3명(학년별 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4, 5, 6 학년만 대상임), 학생회장반장부반장 외 일반학생 3명(학년별 1명) 등이다.

1. 학생통제이념(PCI) 인식 조사

전국 11,434명의 교사가 응답한 학생통제이념(PCI)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중 64.77점으로, 학교 문화는 보호감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감독적

인 학교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결과를 설립주체, 학교급, 학교소재지, 소속, 성별, 경력, 연령, 학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교사의 소속(학생부, 일반)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64.77)에 비해 사립학교(65.97)가 좀 더 보호감독적이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63.68)에 비해 중(66.39)·고등학교(65.93)가 보호감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등학교(67.16)가 가장 보호감독적이고, 특목고(63.45)는 가장 낮은 점수로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비교적 통제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중소도시(64.79), 읍면지역(64.41)보다 대도시(65.50)가 좀 더 보호감독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교사(64.25)보다 남교사(65.73) 집단이 다소 보호감독적이며, 경력별로는 경력 1-5년 이하(64.89), 21년 이상(65.66)인 집단이 6-10년(64.87), 11-20년(64.22) 집단보다 좀 더 보호감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연령별로는 31-40세 이하(64.43)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51세 이상(65.87)이 가장 보호감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규모별로는 18-35학급(65.45) 규모의 집단이 가장 보호 감독적이고, 6-11학급 규모 집단(63.75)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Ⅲ-1〉 학생통제이념(PCI) 인식 조사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설립주체	국·공립	9799	64.77	7.40	37.16***	
	사립	1635	65.97	7.32		
학교급	초등학교	5720	63.68	7.39	171.73***	A<B A<C
	중학교	3266	66.39	7.21		
	고등학교	2448	65.93	7.17		
	일반고	1530	65.75	6.97	8.91***	A<B A>C B>C B>D
	특성화고	579	67.16	7.67		
	특목고	107	63.45	6.29		
	자율고	197	64.90	7.11		
	기타	35	66.71	6.90		
학교소재지	대도시	4340	65.50	7.31	22.44***	A>B A>C
	중소도시	3457	64.79	7.19		
	읍면지역	3637	64.41	7.65		
교사 소속	학생부	6308	65.06	7.43	3.54	
	일반	5126	64.79	7.36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교사 성별	남	5282	65.73	7.46	115.10***	
	여	6152	64.25	7.28		
교사 경력	1-5년	2747	64.89	7.14	21.42***	A>C
	6-10년	1957	64.87	7.18		A<D
	11-20년	3178	64.22	7.50		B>C
	21년 이상	3552	65.66	7.56		B<D C<D
교사 연령	30 이하	2323	64.74	7.00	15.94***	A<D
	31-40	3840	64.43	7.40		B<C
	41-50	3854	65.22	7.56		B<D
	51 이상	1417	65.87	7.48		C<D
학급 규모	5학급이하	841	65.02	7.53	16.41***	A>B
	6-11	2197	63.75	7.87		B<C
	12-17	1277	64.94	7.30		B<D
	18-35	5158	65.45	7.19		B<E
	36-41	1104	64.82	7.36		B<F
	42학급이상	857	64.99	7.13		
합 계		11434	64.94	7.40		

2. 학생활동(학생참여, 학교자치, 동아리 및 봉사활동)에 대한 교사 인식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 학생활동에 관하여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III-2> 학생활동 구성 문항

	문 항	척 도
학생 참여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비율(%)
학생 자치	1.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건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2.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3.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5.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6.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7. 학급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	<Likert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_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문 항	척 도
동아리 운영	1.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동아리 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4.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동아리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	
봉사활동 운영	1.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봉사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봉사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평균 8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사립학교(83.3%), 일반고(88.7%), 대도시(85.8%), 학생부 소속(87.0%), 남교사(84.7%), 21년 이상 경력(85.5%), 51세 이상(85.0%), 36-41학급(83.0%)에서 학생 참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생자치의 수준은 평균 3.38, 표준편차 0.55로, 설립주체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초등학교(3.39), 특목고(3.60), 대도시(3.40), 여교사(3.39), 교사경력 6년-21년 이상(3.39), 51세 이상(3.39), 42학급 이상(3.43)의 대규모학교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 운영은 평균 3.74점, 표준편차 0.65점으로, 사립학교(3.79), 자율고(4.13), 대도시(3.76), 학생부 소속 교사(3.77), 남교사(3.78), 교사 경력 21년 이상(3.84), 51세 이상(3.85), 12-17학급(3.76)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운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운영은 평균 3.94점, 표준편차 0.65점으로 학생자치, 동아리활동 운영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립학교(4.01), 특목고(4.16), 대도시(3.99), 학생부 소속(3.97), 남교사(3.95), 교사경력 21년 이상(4.01), 51세 이상(4.02)이 다소 높고, 6-11학급 소규모 학교의 경우 봉사활동 운영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3>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 및 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

		PCI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		봉사활동	
			N	%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설립 주체	국·공립	64.77	6420	82.1	3.38	0.55	3.73	0.65	3.93	0.65
	사립	65.97	1195	83.3	3.38	0.52	3.79	0.63	4.01	0.60
학교급	초등학교	63.68	3447	76.0	3.39	0.60	3.64	0.67	3.87	0.68
	중학교	66.39	2407	88.6	3.33	0.53	3.77	0.59	4.02	0.59
	고등학교	65.93	1761	88.2	3.43	0.52	3.92	0.61	4.00	0.61
	일반고	65.75	1098	88.7	3.45	0.51	3.95	0.58	4.01	0.61
	특성화고	67.16	417	87.8	3.35	0.54	3.76	0.60	3.92	0.61
	특목고	63.45	77	85.6	3.60	0.58	4.11	0.70	4.16	0.60
	자율고	64.90	144	88.3	3.49	0.52	4.13	0.61	4.07	0.58
	기타	66.71	25	80.6	3.29	0.55	3.50	0.73	3.63	0.65
학교 소재지	대도시	65.50	3193	85.8	3.40	0.54	3.76	0.64	3.99	0.64
	중소도시	64.79	2104	79.8	3.39	0.54	3.72	0.66	3.90	0.65
	읍면지역	64.41	2318	80.2	3.36	0.55	3.73	0.64	3.92	0.65
교사 소속	학생부	65.06	4692	87.0	3.43	0.53	3.77	0.63	3.97	0.63
	일반	64.79	2923	75.8	3.33	0.56	3.70	0.66	3.91	0.66
교사 성별	남	65.73	3739	84.7	3.38	0.54	3.78	0.64	3.95	0.63
	여	64.25	3876	80.1	3.39	0.55	3.70	0.65	3.94	0.66
교사 경력	1-5년	64.89	1462	78.2	3.37	0.55	3.64	0.67	3.88	0.67
	6-10년	64.87	1262	80.1	3.39	0.56	3.71	0.65	3.90	0.64
	11-20년	64.22	2244	82.8	3.39	0.55	3.73	0.64	3.95	0.64
	21년 이상	65.66	2647	85.5	3.39	0.53	3.84	0.62	4.01	0.62
교사 연령	30 이하	64.74	1218	77.0	3.37	0.55	3.61	0.67	3.86	0.67
	31-40	64.43	2542	81.6	3.39	0.56	3.72	0.65	3.92	0.65
	41-50	65.22	2820	84.6	3.38	0.54	3.80	0.63	3.99	0.63
	51 이상	65.87	1035	85.0	3.39	0.52	3.85	0.62	4.02	0.62
학급 규모	5학급 이하	65.02	565	81.9	3.33	0.53	3.72	0.61	3.96	0.65
	6-11학급	63.75	1346	78.0	3.37	0.57	3.71	0.66	3.89	0.67
	12-17학급	64.94	848	82.1	3.39	0.54	3.76	0.63	3.96	0.65
	18-35학급	65.45	3599	84.5	3.39	0.54	3.75	0.64	3.96	0.63
	36-41학급	64.82	721	83.0	3.40	0.53	3.75	0.67	3.94	0.66
	42학급 이상	64.99	536	79.8	3.43	0.55	3.71	0.65	3.96	0.65
합 계		64.94	7615	82.3	3.38	0.55	3.74	0.65	3.94	0.65

3. 학생활동(학생참여, 학교자치, 동아리 및 봉사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 및 봉사활동 운영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규칙 재개정 시 학생의 참여를 묻는 문항에 대한 교사의 응답 비율은 82.3%인 반면에 학생의 응답은 84.6%, 학생자치에 대한 교사의 평점은 3.38점, 학생의 평점은 3.53으로 학생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활동 운영에 대한 인식은 교사 3.74점, 학생 3.81점, 봉사활동의 경우는 교사 3.94점, 학생 3.99점으로 동아리 및 봉사활동 인식 역시 교사보다 학생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가 9.9%로 높은 차이를 보였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참여에 있어 학생보다 교사의 인식이 8.2%나 높게 나타났다. 학생자치 수준, 동아리 및 봉사활동 운영 수준 역시 초등학교 급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초등학생이라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자치를 묻는 문항에서 학생보다 교사의 인식이 0.08점 더 높게 나타났고, 특목고의 경우 동아리활동 운영을 묻는 문항에서 학생보다 교사의 인식 수준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봉사활동 수준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식 수준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보호감독적인 문화와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 및 봉사활동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통제이념(PCI) 점수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PCI 점수도 높아져 보호감독적인 문화임을 알 수 있는데,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수준 역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낮은 점수를 보여 보호감독적인 문화일수록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학교소재지별로는 대도시학교가 가장 보호감독적으로 나타났지만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수준은 대도시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역시 남교사집단이 좀 더 보호감독적으로 나타났으나,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수준은 남학생들의 응답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 〈표 Ⅲ-4〉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 및 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비교 결과

		PCI	학생참여		학생자치		동아리		봉사활동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설립 주체	국·공립 사립	64.77	82.1	85.6	3.38	3.54	3.73	3.82	3.93	4.01
		65.97	83.3	80.4	3.38	3.46	3.79	3.74	4.01	3.89
학 교 급	초등학교	63.68	76.0	85.9	3.39	3.63	3.64	3.86	3.87	4.10
	중학교	66.39	88.6	85.1	3.33	3.46	3.77	3.80	4.02	4.00
	고등학교	65.93	88.2	81.9	3.43	3.39	3.92	3.73	4.00	3.75
	일반고	65.75	88.7	82.0	3.45	3.37	3.95	3.75	4.01	3.73
	특성화고	67.16	87.8	79.6	3.35	3.39	3.76	3.62	3.92	3.73
	특목고	63.45	85.6	84.7	3.60	3.59	4.11	3.83	4.16	3.95
	자율고	64.90	88.3	85.1	3.49	3.44	4.13	3.91	4.07	3.88
	기타	66.71	80.6	93.3	3.29	3.43	3.50	3.75	3.63	3.75
학교 소재지	대도시	65.50	85.8	84.6	3.40	3.58	3.76	3.85	3.99	4.05
	중소도시	64.79	79.8	81.6	3.39	3.45	3.72	3.74	3.90	3.90
	읍면지역	64.41	80.2	87.1	3.36	3.53	3.73	3.83	3.92	3.99
성별	남	65.73	84.7	84.7	3.38	3.55	3.78	3.83	3.95	4.02
	여	64.25	80.1	84.4	3.39	3.50	3.70	3.78	3.94	3.95
합계		64.94	82.3	84.6	3.38	3.53	3.74	3.81	3.94	3.99

4. 교사-학생 간 상호존중문화에 대한 학생 인식

학생들에게 교사-학생 간 상호존중문화를 묻는 문항은 〈표 7〉의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서로 존중한다’ 문항은 평균 3.72점, 표준편차 0.87이고, ‘선생님들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 문항은 평균 4.02점, 표준편차 0.90점,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문항은 평균 3.82점, 표준편차 0.93점으로 응답하여,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보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초등학교, 특목고, 대도시, 남학생, 전교임원들의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특목고의 경우, 고등학교 전체 평균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한다가 3.66점, ‘선생님들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가 3.70점, 학생이 교사의 인권을 존중한다가 3.54점인 반면에 특목

고는 각 3.95점, 3.90점, 3.94점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생의 지위에 따라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교임원, 학급임원, 일반학생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의 지위에 따라 교사의 태도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표 Ⅲ-5> 교사-학생 간 상호존중문화 구성 문항

	문 항	척 도
1	학생들이 서로 존중한다	Likert 5점 척도
2	선생님들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	
3	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권을 존중한다.	

학교의 보호감독적인 문화와 교사-학생 간 상호존중 문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CI 점수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CI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학교급의 경우, PCI 점수가 낮은 인본주의적 성향의 초등학교 및 특목고 집단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 문화 인식 또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보호감독적인 학교 문화보다 인본주의적인 학교 문화에서 교사-학생 간의 상호존중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표 Ⅲ-6> 교사-학생 간 상호존중문화 인식 조사 결과

		PCI	학생들이 서로 존중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 존중		학생이 교사의 인권 존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설립 주체	국·공립	64.77	3.72	0.87	4.06	0.89	3.85	0.93
	사립	65.97	3.69	0.86	3.80	0.91	3.64	0.91
학 교 급	초	63.68	3.81	0.87	4.29	0.81	4.12	0.85
	중	66.39	3.63	0.87	3.85	0.89	3.59	0.92
	고	65.93	3.66	0.86	3.70	0.91	3.54	0.90
	일반고	65.75	3.68	0.82	3.71	0.87	3.51	0.88
	특성화고	67.16	3.52	0.92	3.62	0.97	3.49	0.96
	특목고	63.45	3.95	0.85	3.90	0.96	3.94	0.85
	자율고	64.90	3.84	0.81	3.79	0.91	3.68	0.90
	기타	66.71	3.57	1.07	3.71	0.99	3.57	0.95

		PCI	학생들이 서로 존중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 존중		학생이 교사의 인권 존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 소재지	대도시	65.50	3.78	0.86	4.10	0.89	3.89	0.93
	중소도시	64.79	3.63	0.86	3.92	0.89	3.69	0.93
	읍면지역	64.41	3.72	0.89	4.00	0.89	3.85	0.91
성별	남	65.73	3.74	0.89	4.05	0.91	3.85	0.95
	여	64.25	3.69	0.85	3.98	0.88	3.79	0.90
학생 지위	전교임원	N/A	3.85	0.85	4.12	0.85	3.86	0.93
	학급임원		3.74	0.86	4.06	0.89	3.85	0.93
	일반학생		3.64	0.88	3.93	0.91	3.76	0.92
합 계		64.94	3.72	0.87	4.02	0.90	3.82	0.93

IV. 결론 및 제언

학교의 문화를 보호감독적인 문화에서 인본주의적인 문화로 바꾸는 쉽고 빠른 방법은 없다. Hoy & Miskel(2010)에 따르면 학교 문화의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첫 번째, ‘임상적 전략’은 학교컨설팅과 같이 집단 간 그리고 대인 간 상호작용을 조정함으로써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조직에 대한 지식 얻기, 진단, 예측, 처방, 평가의 단계를 거쳐 학교 내 하위 집단 간 관계변화를 통해 학교문화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성장 중심 전략’은 개인의 전문적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화는 건 강한 학교 조직의 특성이고 방향성을 가지며 교사들이 변화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일반적 가정들을 수용하고 이 가정들을 행정적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로써 사용한다면 학교의 성장이 가능하며, 전문적 개발을 위한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규범변화 전략(a norm-changing strategy)’이다. 규범변화 전략은 조직 구성원들은 그들 집단에 적용되고 있는 규범들을 나열할 수 있고, 생산성이나 사기를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새로운 규범들을 제안할 수도 있다. Kilmann(1984)에 따르면 학교구성원으로서의 학생들도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전략은 동시에 사용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 학생들의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적인 학교 문화로 변화하고 적절한 인성교육이 실천되려면 교사와 행정가들에게 구체적인 기법과

절차를 제공하는 ‘규범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의 변화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둘째,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 운영하면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셋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규범적인 변화를 통해 인본주의적 학교문화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방안 중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로 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르면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규칙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규칙 제·개정에 있어 학교규칙을 실제로 실천하는 학생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이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보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학생회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리더십 함양과 더불어 민주시민의식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학교문화에서 학생 자치 수준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므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동아리 및 봉사활동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아리를 ‘특기, 적성, 취미, 소질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의 모임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하는 자치활동’으로 정의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고시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 동아리활동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동아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중요시하게 된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봉사활동은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인성함양, 심신단련, 사회성 개발 등을 위한 실천, 체험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중시하는 방안의 하나로 1996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학생봉사활동은 균형적인 인성교육이나 생활체험적인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식위주의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과 삶의 보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실천중심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교육과학기술부(2012). 인성교육 실태조사.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 본격 추진.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100대 학교문화 우수사례집.
- 구분용, 박제일, 이은경, 문경숙(2010).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006).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 김소미(2007). 학교조직유형과 교사의 학생지도관에 따른 학생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용린, 최지영, 박종효, 신순갑, 장맹배, 이지혜(2008). 공공의식 배양교육의 제도적 방안
연구: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보고서.
- 서정화 외(2012). 학교경영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2011학년도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집.
- 유낙주(1995). 학교 조직풍토, 교사의 학생지도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환(201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이슈페이퍼, 2012(6). 한국교육개발원.
- 진영종 외(2007).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 현주 외(2009). 학교 인성교육의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Hoy, W. K., and Miskel, C.G. (2010). Educational Administration, Mcgraw-Hill College.
- Willower, D., Eidell, T., Hoy, W.(1967). The Schools and Pupil Control Ideolog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 Willower, Donald J. & Joseph W. Licata(1997). Values and valuation in the
practi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ousand Oaks, Calif. : Corwin
Press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1분과 논문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과 민주시민교육

■ 정 제 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과 민주시민교육¹⁾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민간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동으로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인성교육 비전(시안)’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배려, 공감, 협동심 등을 핵심가치로 하는 ‘바른 인성’을 키우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사회적 약속을 이해하고, 그 약속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Griffin, McGaw and Care, 2012: 301; OECD, 2005; 류성창 외, 2011). Griffin 등(2012)은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생각의 방식, 일하는 방식, 일하는 기술, 삶의 방식’ 등 4가지 범주로 나누고, 10가지 핵심적인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삶의 방식에 속하는 것이 ‘시민의식(citizenship)’이다. 시민의식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교육의 목표이고,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왔지만, 21세기에 필요한 시민의식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시민의식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화된 시민의식을 포함하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민주시민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민의식의 개념 규정과 함께 학교교육에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1) 이 발표문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2년에 발주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학교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교육의 결과로 개인적 수준에서 인격(人格)을 함양하고, 국가 수준에서는 국격(國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종재 외, 2012: 27, 정범모, 2010).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도 ‘교육은 홍익인간(洪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교육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설정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교육, 소위 ‘입시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영혜 등(2011, 45-46)은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분석하고, 일곱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 시민(global citizen)이라는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서의 주제가 다양화되고,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실생활의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재 및 수업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서술방식의 개선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민적 체험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의 풍토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학교공동체 안에서 민주시민의 삶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일곱째, 정치적 교화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에서 살펴볼 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는 부분은 바로 학교규칙의 개정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교조직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Glickman, Gordon, & Ross-Gordon, 2010: 31; 정제영, 2004: 5). 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의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론 중심이 아닌 생활 속

에서 체득하는 언어 예절, 타인 존중, 자기 절제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발표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규칙의 의의와 내용

가. 학교규칙의 의의

학교규칙은 학교 내에서 조직의 구성원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생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교규칙은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정과 개정 절차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 <표 II-1> 학교규칙 관련 법령 사항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② 삭제 <2005.1.29> 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 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크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1, 2, 3, 4, 5, 6, 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7, 8, 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학교규칙은 학생의 자유로운 생활을 제한하는 규제적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강인수, 1999). 그동안 학교규칙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학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학교규칙의 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결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와 결정에 대한 책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단위학교의 차원에서도 학교규칙의 제·개정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다는 상급관청의 통제를 강조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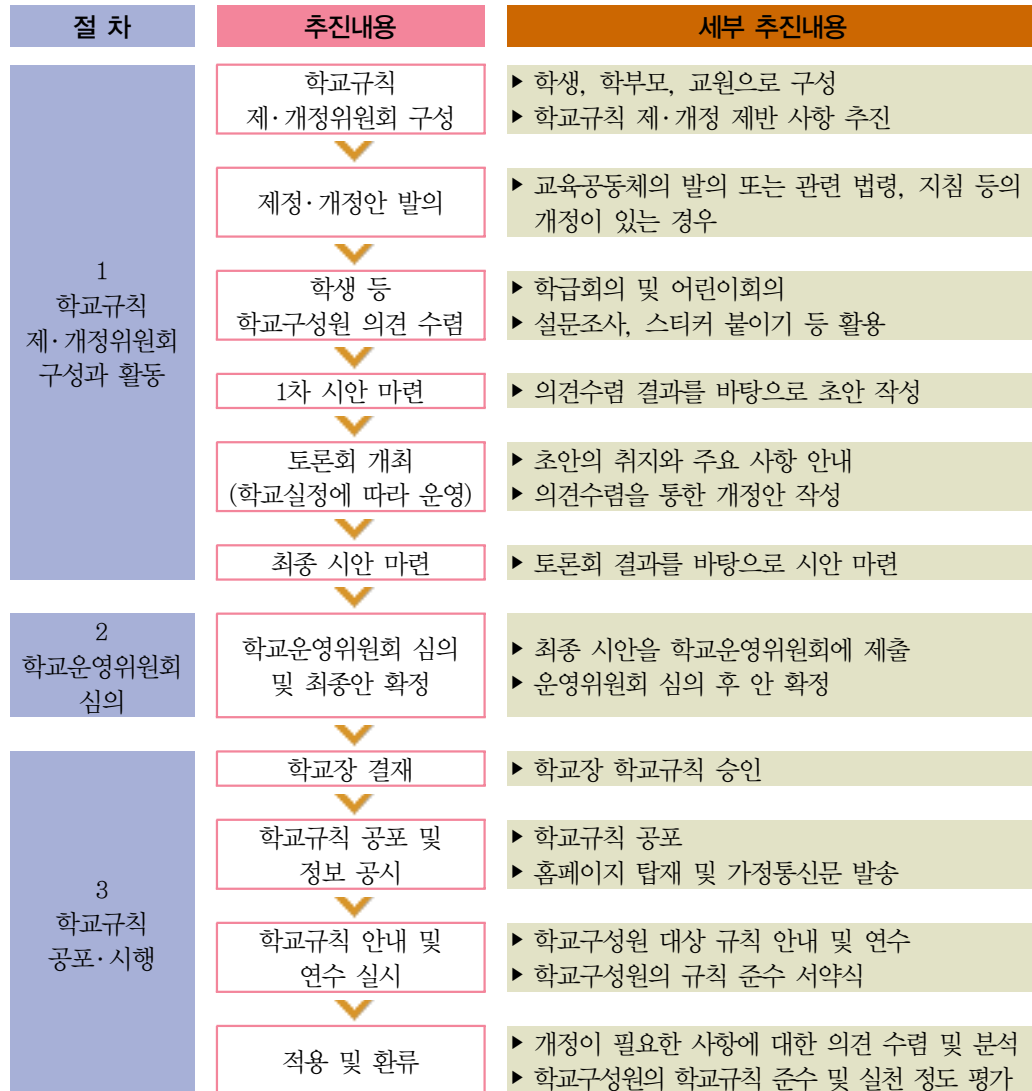
2012년에 이루어진 법령 개정은 학교규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2년 3월 21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학교규칙의 제·개정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20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제정과 개정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법령에 나타난 학교규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첫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의 근간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하다. 둘째, 학교규칙은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 학교규칙에는 학교마다의 특색 있는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지도방법 등을 담아낼 수 있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규칙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첫째, 학교규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둘째, 학교규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나. 학교규칙의 제·개정 절차

학교규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p.17.

【그림 II-1】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

3. 학교규칙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응답률

2012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5,883교, 중학교 3,154교, 고등학교 2,283교 등 총 11,320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1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별 응답 대상은 총 9명으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다. 교사는 생활지도부장 또는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 1명과 생활지도부에 소속되지 않은 담임교사 1명이다. 학생은 전교학생회장(어린이 회장) 1명, 학급반장 또는 부반장 3명(학년별 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4, 5, 6학년만 대상임), 학생회장·반장·부반장 외 일반학생 3명(학년별 1명) 등이다.

설문대상은 학생 79,240명, 교사 22,640명 등 총 101,880명인데, 그 중에서 학생 29,180명(36.8%), 교사 11,434명(50.5%) 등 총 40,614명(39.9%)이 응답하여 온라인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1〉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학교급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대상	101,880	79,240	22,640	52,947	41,181	11,766	28,386	22,078	6,308	20,547	15,981	4,566
응답자	40,614	29,180	11,434	19,024	13,304	5,720	12,771	9,505	3,266	8,819	6,371	2,448
응답률 (%)	39.9	36.8	50.5	35.9	32.3	48.6	45.0	43.1	51.8	42.9	39.9	53.6

나. 학교규칙 관련 응답 내용

학교규칙에 대한 설문문항 중 ‘우리 학교의 학교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89.7%, 교사는 95.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8.5%, 중학교는 91.3%, 고등학교는 9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94.3%, 중학교는 97.6%, 고등학교는 97.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은 교사와 학생 모두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2> 학교규칙 인지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학생	전체	26,185(89.7)	2,995(10.3)	29,180(100)	49.955***
	초등학교	11,769(88.5)	1,535(11.5)	13,304(100)	
	중학교	8,680(91.3)	825(8.7)	9,505(100)	
	고등학교	5,736(90.0)	635(10.0)	6,371(100)	
교사	전체	10,965(95.9)	469(4.1)	11,434(100)	76.075***
	초등학교	5,393(94.3)	327(5.7)	5,720(100)	
	중학교	3,188(97.6)	78(2.4)	3,266(100)	
	고등학교	2,384(97.4)	64(2.6)	2,448(100)	

***p<.001 **p<.01 *p<.05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학교규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은 가정통신문 50.7%, 학교홈페이지 48.0%, 유인물 39.3%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학교홈페이지 67.9%, 유인물 60.7%, 가정통신문 48.3%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가 학교규칙을 알게 되는 주요 매개체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과 유인물이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홈페이지와 유인물이 학교규칙을 알게 되는 주요 통로로 나타났다.

■ <표 Ⅲ-3> 학교규칙을 알게 된 경로

구분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설명회	유인물	게시판	교내방송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전교생 조회시	기타
학 생	전체	14,922(57.0)	12,568(48.0)	4,667(17.8)	10,284(39.3)	8,102(30.9)	8,420(32.2)	4,509(17.2)	8,784(33.5)	1,609(6.1)
	초등학교	7,236(61.5)	7,105(60.4)	1,488(12.6)	2,069(17.6)	3,774(32.1)	3,766(32.0)	1,497(12.7)	3,707(31.5)	949(8.1)
	중학교	4,897(56.4)	3,391(39.1)	1,784(20.6)	4,794(55.2)	2,549(29.4)	2,720(31.3)	1,786(20.6)	2,974(34.3)	403(4.6)
	고등학교	2,789(48.6)	2,072(36.1)	1,395(24.3)	3,421(59.6)	1,779(31.0)	1,934(33.7)	1,226(21.4)	2,103(36.7)	257(4.5)
교 사	전체	5,291(48.3)	7,445(67.9)	3,847(35.1)	6,656(60.7)	2,107(19.2)	1,485(13.5)	2,376(21.7)	2,242(20.4)	1,056(9.6)
	초등학교	2,615(48.5)	3,781(70.1)	1,718(31.9)	2,715(50.3)	750(13.9)	441(8.2)	1,250(23.2)	836(15.5)	514(9.5)
	중학교	1,637(51.3)	2,067(64.8)	1,296(40.7)	2,241(70.3)	718(22.5)	619(19.4)	650(20.4)	841(26.4)	305(9.6)
	고등학교	1,039(43.6)	1,597(67.0)	833(34.9)	1,700(71.3)	639(26.8)	425(17.8)	476(20.0)	565(23.7)	237(9.9)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46.7%, 교사는 8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의 제·개정하는 경험은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38.4%, 중학교는 53.3%, 고등학교는 54.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교규칙 제·개정경험 많았으며, 교사의 학교규칙 제·개정참여 경험은 중학교에서 8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4> 재학 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학 생	전체	13,635(46.7)	3,496(12.0)	12,049(41.3)	29,180(100)	784.941** *
	초등학교	5,113(38.4)	1,649(12.4)	6,542(49.2)	13,304(100)	
	중학교	5,063(53.3)	979(10.3)	3,463(36.4)	9,505(100)	
	고등학교	3,459(54.3)	868(13.6)	2,044(32.1)	6,371(100)	
교 사	전체	9,250(80.9)	2,184(19.1)	—	11,434(100)	21.788***
	초등학교	4,535(79.3)	1,185(20.7)	—	5,720(100)	
	중학교	2,718(83.2)	548(16.8)	—	3,266(100)	
	고등학교	1,997(81.6)	451(18.4)	—	2,448(100)	

***p<.001 **p<.01 *p<.0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84.6%, 교사는 8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5.9%, 중학교는 85.1%, 고등학교는 81.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교규칙 제·개정참여율이 낮았으며, 교사의 경우 중학교가 88.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 <표 Ⅲ-5> 재학 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학 생	전체	11,534(84.6)	2,101(15.4)	13,635(100)	26.698***
	초등학교	4,390(85.9)	723(14.1)	5,113(100)	
	중학교	4,311(85.1)	752(14.9)	5,063(100)	
	고등학교	2,833(81.9)	626(18.1)	3,459(100)	
교 사	전체	7,615(82.3)	1,635(17.7)	9,250(100)	243.976***
	초등학교	3,447(76.0)	1,088(24.0)	4,535(100)	
	중학교	2,407(88.6)	311(11.4)	2,718(100)	
	고등학교	1,761(88.2)	236(11.8)	1,997(100)	

***p<.001 **p<.01 *p<.0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57.6%, 교사는 8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부모의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응답 중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4%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실과 인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표 Ⅲ-6> 재학 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부모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학 생	전체	7,894(57.9)	1,185(8.7)	4,556(33.4)	13,635(100)	165.866***
	초등학교	3,178(62.2)	435(8.5)	1,500(29.3)	5,223(100)	
	중학교	3,013(59.5)	364(7.2)	1,686(33.3)	5,063(100)	
	고등학교	1,703(49.2)	386(11.2)	1,370(39.6)	3,459(100)	
교 사	전체	8,074(87.3)	1,176(12.7)	—	9,250(100)	40.902***
	초등학교	4,017(88.6)	518(11.4)	—	4,535(100)	
	중학교	2,398(88.2)	320(11.8)	—	2,718(100)	
	고등학교	1,659(83.1)	338(16.9)	—	1,997(100)	

***p<.001 **p<.01 *p<.05

교사들만 응답대상이었던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8.0%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높은 참여율은 학교 급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Ⅲ-7> 재학 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교사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교 사	전체	9,067(98.0)	183(0.2)	9,250(100)	5.544
	초등학교	4,442(97.9)	93(2.1)	4,535(100)	
	중학교	2,677(98.5)	41(1.5)	2,718(100)	
	고등학교	1,948(97.5)	49(2.5)	1,997(100)	

***p<.001 **p<.01 *p<.0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토론회, 공개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54.7%, 교사는 69.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이 교사들에 비해 의견수렴의 통로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초등학교 64.7%, 중학교 52.6%, 고등학교 43.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교사는 초등학교 71.3%, 중학교 69.6%, 고등학교 63.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의견수렴의 통로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표 Ⅲ-8> 학교규칙 제·개정 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학 생	전체	371(2.7)	897(6.6)	3,328(24.4)	4,789(35.1)	2,669(19.6)	1,581(11.6)	13,635(100)	923.632** *
	초등학교	65(1.3)	112(2.2)	936(18.3)	1,860(36.4)	1,446(28.3)	694(13.6)	5,113(100)	
	중학교	135(2.7)	376(7.4)	1,349(26.6)	1,839(36.3)	825(16.3)	539(10.6)	5,063(100)	
	고등학교	171(4.9)	409(11.8)	1,043(30.2)	1,090(31.5)	398(11.5)	348(10.1)	3,459(100)	
교 사	전체	73(0.8)	392(4.2)	2,403(26.0)	4,363(47.2)	2,019(21.8)	-	9,250(100)	115.717** *
	초등학교	33(0.7)	189(4.2)	1,079(23.8)	2,068(45.6)	1,166(25.7)	-	4,535(100)	
	중학교	22(0.8)	105(3.9)	701(25.8)	1,334(49.1)	556(20.5)	-	2,718(100)	
	고등학교	18(0.9)	98(4.9)	623(31.2)	961(48.1)	297(14.9)	-	1,997(100)	

***p<.001 **p<.01 *p<.05

‘우리학교는 학교규칙의 준수·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의 46.8%, 교사의 59.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학생이 교사보다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1.2%, 중학교 44.8%, 고등학교 40.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규칙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중학교가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초등학교가 57.1%로 가장 낮은 비율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 간 학교규칙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큼을 시사하였다.

■ <표 III-9> 학교규칙의 준수·실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실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생	전체	874(3.0)	3,260(11.2)	11,397(39.1)	9,663(33.1)	3,986(13.7)	29,180(100)	490.884** *
	초등학교	385(2.9)	1,154(8.7)	4,959(37.3)	4,457(33.5)	2,349(17.7)	13,304(100)	
	중학교	246(2.6)	1,220(12.8)	3,784(39.8)	3,181(33.5)	1,074(11.3)	9,505(100)	
	고등학교	243(3.8)	886(13.9)	2,654(41.7)	2,025(31.8)	563(8.8)	6,371(100)	
교사	전체	71(0.6)	686(6.0)	3,896(34.1)	5,576(48.8)	1,205(10.5)	11,434(100)	114.969***
	초등학교	41(0.7)	431(7.5)	1,982(34.7)	2,589(45.3)	677(11.8)	5,720(100)	
	중학교	16(0.5)	123(3.8)	1,101(33.7)	1,681(51.5)	345(10.6)	3,266(100)	
	고등학교	14(0.6)	132(5.4)	813(33.2)	1,306(53.3)	183(7.5)	2,448(100)	

*** $p<.001$ ** $p<.01$ * $p<.05$

‘우리학교는 학교규칙과 관련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53.4%, 교사는 31.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의 준수노력에 대한 부분은 학생이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3.0%, 중학교 39.0%, 고등학교 2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34.0%, 중학교 29.4%, 고등학교 26.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학교규칙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표 Ⅲ-10> 학교규칙 관련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노력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생	전체	1,002(3.4)	3,665(12.6)	11,857(40.6)	8,959(30.7)	3,697(12.7)	29,180(100)	1590.936***
	초등학교	286(2.1)	1,068(8.0)	4,894(36.8)	4,609(34.6)	2,447(18.4)	13,304(100)	
	중학교	330(3.5)	1,364(14.4)	4,107(43.2)	2,833(29.8)	871(9.2)	9,505(100)	
	고등학교	386(6.1)	1,233(19.4)	2,856(44.8)	1,517(23.8)	379(5.9)	6,371(100)	
교사	전체	253(2.2)	2,393(20.9)	5,239(45.8)	2,981(26.1)	568(5.0)	11,434(100)	105.710***
	초등학교	116(2.0)	1,071(18.7)	2,588(45.2)	1,575(27.5)	370(6.5)	5,720(100)	
	중학교	69(2.1)	729(22.3)	1,507(46.1)	823(25.2)	138(4.2)	3,266(100)	
	고등학교	68(2.8)	593(24.2)	1,144(46.7)	583(23.8)	60(2.5)	2,448(100)	

***p<.001 **p<.01 *p<.05

다. 논의 및 시사점

설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학교규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학교의 주체별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 수렴과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설문조사와 비교해 볼 때,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9월에 고등학생 교육정책 모니터단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²⁾를 보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25%이고, 부정적인 응답이 52.2%로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학 시에 학교규칙 개정이 있었던 경우, 학생들은 81.9%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43.0%로 2011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11년에 고등학생 교육정책 모니터단 조사는 2011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2일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고객서비스(PCRM)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1,030명의 대상자 중에서 463명(44.9%)가 응답하였다.

■ <표 Ⅲ-11> 학교규칙 관련 학생들의 의견 반영 및 참여 비교 (고등학생 인식 비교, %)인식 (비교,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1년 학생 의견 반영	13.9	38.3	22.0	18.3	7.4
2012년 학생 참여 여부	18.1			81.9	
2012년 다양한 의견 수렴	4.9	11.8	30.2	31.5	11.5

둘째, 학교규칙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 응답자의 89.7%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5.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가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인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은 향후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회 임원은 93.3%가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학급 임원은 90.3%, 일반학생은 87.6%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학교규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된 요인은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2012년 4월 20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제정과 개정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 학교규칙과 관련된 매뉴얼을 보급하고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공동체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4.6%인 반면에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참여는 82.3%로 나타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식만으로 보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순으로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역시 실질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 〈표 Ⅲ-12〉 재학 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공동체 주체의 참여 여부 (%)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학생	학생	84.6	15.4	33.4
	학부모	57.9	8.7	
교사	학생	82.3	17.7	
	학부모	87.3	12.7	
	교사	98.0	0.2	

넷째, 학교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토론회, 공개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이를 반영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적용할 경우 평균 3.70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들은 평균 3.85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평균 3.43으로 나타난 반면에 교사들은 평균 3.63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칙과 관련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은 3.37로 긍정적인 반면에 교사들은 3.11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규칙 제·개정 시에 다양한 의견 수렴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노력,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 등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은 학생들의 인식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규칙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표 Ⅲ-13〉 학교규칙 제·개정 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

구분		평균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학생	다양한 의견 수렴	3.70*	371(2.7)	897(6.6)	3,328(24.4)	4,789(35.1)	2,669(19.6)	1,581(11.6)
	다양한 캠페인, 홍보	3.43	874(3.0)	3,260(11.2)	11,397(39.1)	9,663(33.1)	3,986(13.7)	-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	3.37	1,002(3.4)	3,665(12.6)	11,857(40.6)	8,959(30.7)	3,697(12.7)	-
교사	다양한 의견 수렴	3.85	73(0.8)	392(4.2)	2,403(26.0)	4,363(47.2)	2,019(21.8)	-
	다양한 캠페인, 홍보	3.63	71(0.6)	686(6.0)	3,896(34.1)	5,576(48.8)	1,205(10.5)	-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	3.11	253(2.2)	2,393(20.9)	5,239(45.8)	2,981(26.1)	568(5.0)	-

*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대한 평균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한 것임.

4. 결 론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만큼 학교 규칙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 상호간에 배려하고, 공감하고, 협동할 수 있는 역량은 21세기의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다. 사회적 약속을 이해하고, 그 약속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나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교규칙에 대한 인지수준은 학교나 학급의 임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나 학급의 임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체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식으로 보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순으로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규칙 제·개정 시에 다양한 의견 수렴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노력,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 등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규칙의 제정과 개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학교현장에서 학교규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학교 수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보면, 학교규칙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일은 학교 급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에서 올바른 시민의식의 습관을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학교규칙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영혜 등(2012, 155-160)은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기준의 정립, 둘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위치와 비중 정립, 셋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유목화, 넷째, 민주시민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다섯째, 민주시민교육 친화적인 학교문화 구축,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지원 기구의 활성화 등이다.

정규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 이외에 학교규칙의 개정과 실천,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다양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참여 등도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와 풍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우선시 되고 있다. 그동안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우선순위가 밀려온 것이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분위기는 학교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고입에서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대입에서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은 교과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학교의 문화를 보다 개방적이고 참여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위학교의 노력도 함께 되어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육 본연의 모습인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혜 외(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인수(1999). 초·중등교육관계법의 주요과제-학생·교원·학부모의 교육권 보장과 조화. 교육법학연구, 11.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 본격 추진.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 국가청소년위원회·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006).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 류성창 외(2011). 스마트 세대를 위한 KEDI 교육 미래비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환(201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이슈페이퍼, 2012(6).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이차영·김용·송경오(2012). 한국교육행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범모(2010). 교육은 왜 하는가?: 일송기념사업회(편) 「한국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pp.15-44). 서울: 푸른역사.
- 정제영(2004). 초·중등학교의 지식경영 수준과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현주 외(2009). 학교 인성교육의 실태분석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Glickman, C. D., Gordon, S. P., & Ross-Gordon, J. M. (2010). SuperVision and Instructuinal Leadership. Boston: MA, Pearson.
- Griffin, P., McGaw, B., & Care, E. (2012).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 stcentury skills. Springer.
- OECD. (2005). Formative assessment: Improving learning in secondary classrooms. Paris: OECD Publishing.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1분과 사례 1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큰 기쁨을 만들다!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든 학교규칙

■ 대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큰 기쁨을 만들다!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든 학교규칙

대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1. 학교규칙 개정 배경

학교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며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은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사의 지도방식도 규제나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인격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현실은 개방화와 다양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학생과 교원 간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학교문화 환경을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자율과 책임, 감성과 소통 중심의 학교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에 최근 각 학교에서는 학생의 권리 신장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활동을 권장하여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학생중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적 학교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인성교육실천의 한 가지 방안으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규칙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규칙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교는 이러한 방침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재의 학생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규칙을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하였다.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지닌 학생들과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규칙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학교, 학생들의 욕구와 개성이 존중받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조화와 협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자율과 책임 참여와 소통이 살아 숨 쉬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2. 개정 목적

- 1)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감, 나아가 사회라는 보다 큰 공동체의 규범인 규칙에 대한 신뢰와 준법 태도를 함양하기 위함이다.
- 2)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성공적인 집단생활을 위한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가짐 등 공동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함이다.
- 3) 자율과 책임, 배려와 존중, 협력과 나눔의 태도를 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 긍정적 자아인식과 공동체에 대한 공감능력을 계발하여 미래를 열어갈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3. 개정 방침

- 1) 학교규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하도록 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3) 학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 4) 규제와 처벌보다는 학교규칙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기규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 5) 학칙은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토론의 산물이며, 규칙에 대한 공유와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 하며, 또한, 학생들은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인식 하에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4.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1) 단계별 추진 절차 및 내용

① 단계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홍보 (6월)
-------------	--------------------------------

- 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교원·학부모대표 위원 구성함.
- 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규칙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연수를 통해 홍보하고 교육함.

〈표 IV-1〉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할
▶ 학 생 대표 4명 교 원 대표 3명 학부모 대표 3명 (총 10명으로 구성함)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학생홍보 및 대표 선출〉	〈학부모 홍보 및 대표 선출〉	〈교직원 홍보 및 대표 선출〉

【그림 IV-1】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선출

② 단계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안 발의 (6.29)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에 의거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학교규칙의 개정을 요청함.

③ 단계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7.1~13)

가. 의견수렴 방법은 위원회가 주관하였으며 학교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

① 학생의견 수렴과정 및 내용

가)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급회의 개최(학급별로 학생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나) 학급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합하여 학생대의원회 주 안건을 추려냄.

(두발규정, 휴대폰관리규정, 상·벌점규정, 복장규정 등)

다) 주요 안건을 설문조사표로 만들어 점심시간을 이용 식당에서 스티커붙이기로 학생들이 개정을 원하는 한도를 알아봄.

② 학부모:

가)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학교 규칙 개정을 공지함.

나) 전체 학부모 회의와 학부모 임원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규칙 중 개정을 원하는 조항들과 불만사항을 알려주고 토론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함.

③ 교직원: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함.

나. 의견수렴 결과 내용

① 학생의견

가) 두발규정: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두발 자유화를 원함.

나) 휴대전화사용 적발 시 압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압수 기간 단축을 원함.

다) 상·벌점제에서 벌점의 과다를 지적하고 벌점을 줄이고 상점을 늘려줄 것을 요구

라) 용의복장에서 식당에서의 슬리퍼 착용을 요구함.

② 교사 및 학부모 의견

가) 대체적으로 현재의 학교규칙이 학생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데 치우쳐 있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두발자유화 등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현 규정을 완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음.

나)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은 삭제, 수정하고 학생의 권리조항을 신설하여 넣기로 의견을 모음.



【그림 IV-2】의견수렴 과정

④ 단계 공청회 실시 (7.17)

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생안, 교원안, 학부모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개정을 원하는 조항을 쟁점 토론 주제로 선정함.

(두발규정, 휴대폰규정, 상·벌점규정, 복장규정)

나. 학교규칙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함.

① 공청회 주제, 일정 등 관련 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자메시지로 학부모들에게 공지함.

②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대표가 각 2명씩 동수로 토론에 참여함.

- ③ 공청회는 원하는 학생·학부모·교원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의 응답 및 발언권을 갖도록 함.

다. 공청회 내용 및 결과

- ①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3시간 10분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휴대폰규정, 상·벌점규정, 복장규정에서 토론을 통해 규정개정에 근접한 결과를 얻음.
- ② 두발은 학생과 교사 간의 입장차가 있었고 공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따르기로 결정함.



【그림 IV-3】 공청회 실시 모습

⑤ 단계

최종시안 및 학교운영위 심의시안 마련 (8.13)

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방학 중 3차에 걸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학생·학부모·교사가 합의한 최종 시안을 마련함.

- ① 학교규칙 개정 최종 시안의 주 내용 정리

■ <표 IV-2> 학교규칙 개정 최종 시안

구분	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이유
개정 조항	두발 규정	이발 기계를 사용한 상고 머리 형태로 2달마다 두발 검사 실시	가위를 사용한 머리 형태와 매월 두발검사 실시로 변경	학생의견과 학부모, 교사의견 절충
	복장규정	슬리퍼는 본관에서만 착용한다.	식당에서 슬리퍼 착용 허용으로 변경	학생의견 반영
	휴대폰관리 규정	1차 압수 시 2달간 학생부 보관	1차 압수 시 2주간 학생부 보관으로 변경	학생의견 반영
	상벌점 규정	벌점이 상점에 비해 과다하고 벌점부여 항목에 비해 상점부여항목이 지나치게 적음	상점을 높이고 벌점을 줄여 적절하고 공평하게 부여 하고 상점을 줄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추가함.	학생의견 반영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 시 학생 동의 조항 없음	학생의 동의를 받고 실시함으로 변경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생 간 갈등요인 제거
추가 조항	학생의 권리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이전에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함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제고
	교육별	훈육·훈계 지도방법은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인 교육별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여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도록 한다.		다양한 맞춤형 대안 교육을 통해 학습 참여와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규정의 개정	학교의 장은 본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⑥ 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8.23)

- 가.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정안의 수립경과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함.
- 나. 운영위원회 심의 및 통과 후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함.



【그림 IV-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⑦ 단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확정·공포 (8.28)

- 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함.
- 나.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함.

⑧ 단계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홍보 (8.31)

- 가. 새로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보내 개정내용을 알림.
- 나. 학교생활규정을 담은 규정집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학교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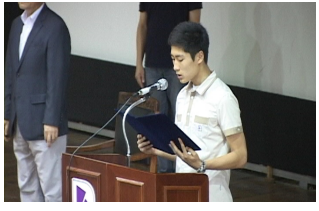
〈학교규칙 개정 학생 연수〉	〈학부모 가정통신문〉	

		
〈규칙개정 교직원 연수〉	〈규정집 제작 학생 배부〉	〈학교 홈페이지 공지〉

【그림 IV-5】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홍보

⑨ 단계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 (8.31)
-------------	-----------------------------

- 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연수와 함께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을 실시함.
- 나. 학칙준수 결의문 낭독(학생, 학부모, 교사)
- 다. 학칙준수 선서
- 라. 학생대표가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자는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함.

		
〈학칙준수 결의문 학생, 학부모, 교사〉		
		
〈학칙준수 선서〉	〈학칙준수 서약서 전달〉	〈학생 ppt 발표〉

【그림 IV-6】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

10 단계 **적용 및 환류 (9월~)**

- 가. 지속적인 학교규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연수 및 평가(만족도, 규정에 대한 의견 등)를 실시하여 환류할 계획임.
- 나.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상벌점제, 자치법정, 선도규정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임.



【그림 IV-7】 학교생활규정 준수 캠페인

5.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 학교규칙 개정 만족도

설문내용	학교규칙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공동체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학교규칙 개정 방법 및 절차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	
결과 분석	개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교사나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만족하다고 답하였다. 보다 많은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규칙 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내용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조사결과	Stacked bar chart showing satisfaction levels for school rules among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e y-axis ranges from 0.0 to 1.0. The legend indicates: 매우 만족 (blue), 만족 (red), 보통 (yellow), 불만족 (green), 매우 불만족 (purple). The chart shows high satisfaction for all groups, with students and teachers showing slightly higher satisfaction than parents.
결과 분석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나 교사나 학부모에 비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비해 개정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약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개정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첫 시행임에도 만족스러웠다고 답하였다.

설문내용	개정된 학교규정 중 가장 만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결과	Grouped bar chart showing the most satisfying school regulations among students and teachers. The y-axis ranges from 0 to 50. The legend indicates: 학생 (blue), 교사 (red). The chart shows that the most satisfying regulations are '수업규정' and '휴식규정', with teachers generally showing higher satisfaction than students.

설문내용	개정된 학교규정 중 가장 불만인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결과	Grouped bar chart showing the most unsatisfactory school regulations among students and teachers. The y-axis ranges from 0 to 45. The legend indicates: 학생 (blue), 교사 (red). The chart shows that the most unsatisfactory regulations are '수업규정' and '휴식규정', with teachers generally showing higher dissatisfaction than students.
결과 분석	두발규정은 학생들의 관심과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았지만 좀 더 완화되기를 바라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상벌점제에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점은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있어서 상점주거나 칭찬제의 비율을 높여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부분이다.

2) 학교규칙 개정 후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내용	학교규칙 개정 전	학교규칙 개정 후
나는 동아 마이스터고 학생인 것이 자랑스럽다.	Stacked bar chart showing satisfaction levels before school rule revision. The y-axis ranges from 0.0 to 1.0. The legend indicates: 매우 그렇다 (blue), 그렇다 (red), 그렇지 않다 (yellow). The chart shows a mix of satisfaction levels, with a significant portion of students feeling 'very satisfied'.	Stacked bar chart showing satisfaction levels after school rule revision. The y-axis ranges from 0.0 to 1.0. The legend indicates: 매우 그렇다 (blue), 그렇다 (red), 그렇지 않다 (yellow). The chart shows a higher proportion of students feeling 'very satisfied' compared to before the revision.
결과 분석	규정개정 후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이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에 매우 큰 기여를 했음을 결과로서 볼 수 있다.	

설문내용	학교규칙 개정 전	학교규칙 개정 후
나는 동아 마이스터고에서 즐겁고 행복하다		
결과 분석	규정개정 후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규정을 개정한 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두발규정 등 학생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던 학교규칙을 학생들과 합의하여 개정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서 학교규칙 개정이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에 매우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3) 학교규칙 개정 후 학생의 학교규칙 이해도

설문내용	학교규칙 개정 전	학교규칙 개정 후
학교규칙에 대해 잘 알고 이해 있다.		
결과 분석	학교규칙 개정 전에는 학생들이 학교규칙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규칙 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학교규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4) 학교규칙의 개선점

설문내용	내년에 학교규칙을 개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점을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조사결과	<table border="1"> <caption>별1: 학교규칙 개선점</caption> <thead> <tr> <th>개선점</th> <th>횟수</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의견 반영</td> <td>38</td> </tr> <tr> <td>인권친화적인 방향</td> <td>16</td> </tr> <tr> <td>학생위원 증수</td> <td>25</td> </tr> <tr> <td>기타</td> <td>22</td> </tr> </tbody> </table>	개선점	횟수	학생의견 반영	38	인권친화적인 방향	16	학생위원 증수	25	기타	22
개선점	횟수										
학생의견 반영	38										
인권친화적인 방향	16										
학생위원 증수	25										
기타	22										
결과 분석	두발규정은 이번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더 많은 학생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지도의 방식도 규제나 통제위주의 벌점제보다는 칭찬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규칙 개정 심의위원회의 학생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보다 잘 관철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여 내년 규정개정 시에는 금년도의 미숙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6. 기대효과

학교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한 학교규칙 개정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들이 학교규칙 제·개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규칙을 지키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2) 학교규칙 제·개정과정을 통해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지향하여야 할 공동선을 충분히 인식하게 됨에 따라 교육공동체가 학교생활에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3)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학교규칙이기 때문에 준수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며 준법정신이 향상되어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학교규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교에서 이루어진 이번 학교규칙 개정은 그간의 학교의 일방적인 주도로 만들어지던 학교규칙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는 점, 학교 공동체가 서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특히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관자가 아닌 주도자로서 참여하여 직접 학교규칙을 만들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학생들의 심각한 학교폭력과 욕설,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응 등 인성부재 사안이 증가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또한 심각한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규칙 개정사업은 학교교육현장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타인존중, 자기 절제, 법과 질서의 존중, 책임의식, 정의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에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가일층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학교교육현장은 권위주의적인 오랜 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적인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학교 교육 현장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바른 민주시민을 길러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망설여지는 일이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작은 실천부터 해나간다면 그 작은 변화는 더 큰 보람과 교육적 효과를 불러와 모두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 올 것이 분명하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1분과 사례 2

새로운 시도

학교구성원(학생 · 학부모 · 교사)이 함께 만드는 학교규칙

■ 인천 서곶중학교



새로운 시도

학교구성원(학생·학부모·교사)이 함께 만드는 학교규칙

인천 서곶중학교

I. 들어가며

21세기, 극도로 분업화된 산업구조는 조직의 유지를 위한 성실과 협동의 덕목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도 조직의 경직성보다는 학생들의 개별 자율성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습의 계획수립부터 완결까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강조, 학생 주도의 행사 진행, 어른들의 선거 열기보다도 더 뜨거운 학생회 선거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적 압박에 어머니를 살해한 고등학생, 친구를 죽이고 야산에 암매장하는 학생들 등으로 청소년의 인성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이런 참담한 몇몇 사건이 아니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일에도 폭력과 욕설이 일상으로 되었고, 서로 할퀴는 날선 감정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학생들 밑바닥에 끈적끈적하게 늘어붙어 있다. 더구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학생들이 유별난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교에도 2011학년도 11회의 학교선도위원회와 8회의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별점 누적으로 특별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학교규칙을 사이에 두고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찾던 중 학교규칙을 만드는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보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학교규칙은 교사주도로 규칙을 제·개정하였었다.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학생들은 수동적인 태도로 학교규칙이 제·개정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한다면, 각 구성원은 주체성의 발휘와 더불어 책임의식을 갖고 학교규칙을 준수하여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라는 희망을 갖고, 2012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에 모든 교육구성원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Ⅱ. 학교구성원의 합의하여 함께 만드는 학교규칙

1.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규칙 제·개정 인식 공유

가.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규칙 제·개정 인식 공유

과거의 학교 문화에서 학생들은 학교교육의 타율적·수동적인 지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학교행사의 참여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도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어려웠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 내지는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들은 학교 행사를 주도적이고 자율적·창의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도 당당하게 참여하여 함께 제·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교사는 통제와 규제 위주의 관점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던 풍토가 강했었다. 이것은 학생과의 소통과 공감의 단절되어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유발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생의 자율의지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학교규칙을 제·개정 할 때에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학부모의 동의와 합의가 바탕이 되는 학교규칙 제·개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부담감과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고 상담주간과 학부모 평생교육의 운영 등에 힘입어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가 활성화 된 바, 학교교육을 제·개정하는 당당한 한 주체로 참여해야 함을 인식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교사와 더불어 학생·학부모도 학교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나.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주체별로 5인을 선출하였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 이전에 교사와 학생에게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각 교육주체별로 적절한 위원 수

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다. 설문결과 주체별 3~7인의 위원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라는 설문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사는 55인 중 5인이 선출되었는데 학생생활부장(남), 교무부장(여), 연구부장(여), 인성상담부장(여), 1학년부장(남)이 선출되었다. 선출자의 교직경력은 평균 21년이었고, 연령은 47세였는데, 저경력 교사들은 학교규칙의 제·개정 활동에 경험미숙의 부담감이 작용하여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고사하였다.

학생은 학생회 임원과 33개 학급의 학급간부가 참여한 총학생회 회의에서 5인을 선출하였다. 학생회장(3학년, 여), 부학생회장(3학년, 여) 부학생회장(2학년, 남) 2학년대표(여), 1학년대표(남)를 회의를 통하여 선출하였는데, 토론회나 공청회 때 의견 대변자로서 성별과 학년의 의견발언을 위한 적절한 구성으로 판단되었다.

학부모 5인은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부모회 안내를 통하여 선출하였다. 가정통신문의 발송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5인의 학부모가 의사를 표시하였고, 학부모회를 통하여 선출되었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어머니들로만 구성되었는데, 아버지의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점이 아쉬웠다.

다.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회칙 마련과 위촉장 수여

위원회 회칙은 학교 측에서 마련하였다. 임기는 1년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교감을 당연직으로 두었고, 교무기획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두어 각종 회의의 협의록을 작성하여 기록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여 학교장의 위촉형식을 빌어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촉장 수여의 효과는 위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양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illegible]

【그림 Ⅱ-1】 학교규칙 개정위원회 구성

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일정

현재 본교는 학교규칙의 제·개정을 마치고 공포를 하여 홍보와 시행을 병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학교규칙 제·개정은 <표 II-1>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표 I-1〉 서곶중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추진

일정	학교규칙 제·개정 추진 내용	
~ 4월 초순	인성 교육 실천 학교 운영 방향 모색	학교규칙제·개정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 모색
↓	↓	↓
4월 하순	학교규칙 관련 법률 개정	· 학교규칙 관계 법률 개정에 따른 발의 필요성
↓	↓	↓
5월 중순	학교규칙 개정 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규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회칙, 절차 마련
↓	↓	↓
5월 하순	개정안 발의	· 학교주도의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발의
↓	↓	↓
6월 말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학생 - 학급회의, 학생회를 통한 의견수렴 · 학부모 - 학부모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교사 - 교직원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	↓
7월 5일	1차 시안 마련	· 구성원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	↓
7월 11일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학운위 상정 시안 토대 마련
↓	↓	↓
7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	↓	↓
7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안 확정
↓	↓	↓
7월 28일	학교장 결재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학교장 결재
↓	↓	↓
8월 11일	안내 및 홍보	· 홈페이지 탑재 · SMS문자 발송 · 학교규칙 주요내용 학급별 게시
↓	↓	↓
8월 17일	학교규칙 선포식	· 학교규칙 주요내용 가정통신문 발송
↓	↓	↓
8월 17일	학교규칙 준수 선서· 서약식	· 학교규칙 준수 선서식 · 학생·교사 서약문 제출 · 학부모 학교규칙 준수 자녀교육 동의문 제출
↓	↓	↓
현재	학교규칙 준수문화 정착 중	· 학교규칙 준수 문화 정착 중

2. 학교규칙 제·개정 추진

가.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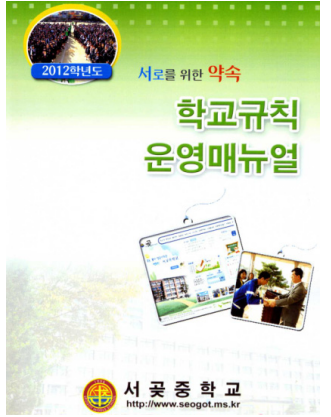
학교규칙 관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규칙 제·개정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가정 통신문으로 발송하였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장 서한문 형식의 학교규칙 제·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공고문을 각 학급에 게시하여 발의하였다.

여기에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학교 규칙을 만들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에 뜻과 마음을 모아줄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소집

학교규칙의 제·개정의 발의에 따라 여러 사항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이 때 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학교규칙운영매뉴얼을 위원 수만큼 인쇄하여 배부하였고, 본교의 학교 규정집 중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계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문을 발췌하여 인쇄, 배부하였다. 이후의 일정도 협의하였다.

이것은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의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위원들의 책무성을 고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학교규정을 공개함으로써 중복되거나 과중되거나 부조리한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가정통신문 [학교규칙 제·개정 안내] 서귀중학교 담당: 김선화 전화: 052-0084 존경하는 학부모님에 쓰기를 맡아 속해서도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열제 일선에서 열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양력드림 말씀이 있어 서한을 보냅니다. 이런에 우리 서귀중학교는 학교 유익에서 학생생활관련 사항 중 학생보상, 경제, 정 제 외의 지도방법, 주말·복합 등 중요,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를 검사, 휴대 전화 등 전기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 학생, 교사의 충족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님의 참여 신청을 받은 가정통신문 을 발송한 예정이며, 학부모 대표 위원이 선출되면 대표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 부모님의 학교규칙 개정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 우리 서귀중학교는 1990년 개교하여 서귀소리를 학생들을 배출하고, 좋은 학교 명 를 지니고 이어나가고자 계속하여 노력한 학교입니다. 이에 이번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u>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사회 중년에 크게 미흡하지 않고 학 생, 교사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에 뜻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u> 학부모님의 자녀들이 좋은 시대에 비광의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두루두루 이에 열인바기를 기원합니다. 서 귀 중 학 교 장	서귀중학교 학생여러분 여러분 기쁨을 주사의 시로고 쓰기를 맡아 속해서도 열제의 정복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서귀중학교와 나마나 대한민국의 이대나 문은하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에 우리 서귀중학교는 학교규칙을 학생, 교사, 학부모의 공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규정을 제정 하는데 개인적 사사(私私)로운 입장을 앞세우거나, 사 단(私團)을 구축하여 못하여 전선하지 못한 학교 교육을 형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여러분, 우리 서귀중학교는 1990년 개교하여 서귀소리를 학생들을 배출하고, 좋은 학교 명 를 지니고 이어나가고자 계속하여 노력한 학교입니다. 이에 이번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u>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사회 중년에 크게 미흡하지 않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즐거운 학교 를 만드는 것에 뜻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u> - 학교 규약 제정 위원 인사 사항 - 학교규칙 제정위원회는 도록 14에서 그 구성위원 학생위원 20명이, 학 교 위원 10명, 학부모 위원 10명 으로, 총 40명으로 구성됩니다. <table border="1"> <tr> <td>학교규칙 (학생)</td> <td>1. 위원장 (학생) : 한기원 2. 학생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3. 교직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4. 학생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5.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6.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7.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8.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9.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0.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1.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2.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3.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4.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5.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6.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7.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8.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9.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20.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td> </tr> </table> 위의 학교규칙 등 학교 학생생활 관련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안전하고, 전선하며, 즐거운 학교를 위하여 인격적인 생활에 여러 학생 여학생의 의견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여러분, 여러분은 21세기의 전선한 세기를 살아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미래에 대비하오니 만큼 바람직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12. 5. 30. 서귀중학교장 이 서 글	학교규칙 (학생)	1. 위원장 (학생) : 한기원 2. 학생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3. 교직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4. 학생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5.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6.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7.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8.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9.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0.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1.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2.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3.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4.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5.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6.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7.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8.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9.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20.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학교규칙 (학생)	1. 위원장 (학생) : 한기원 2. 학생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3. 교직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4. 학생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5.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6.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7.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8.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9.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0.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1.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2.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3.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4.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5.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6.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7.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8.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19.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20. 학부모위원 :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한기원		
〈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통신문〉	〈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학교장 서한문〉		
 2012학년도 학교규정집 서귀중학교 http://www.seogot.ms.kr 〈 제·개정 이전의 학교규정집 〉	 2012학년도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서귀중학교 http://www.seogot.ms.kr 〈학교규칙 제·개정 운영매뉴얼〉		

【그림 II-1】 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다. 학교구성원별 의견 수렴

1) 교직원 의견 수렴

교직원 개개인의 개정사항에 대한 개인의견을 설문지 형태로 조사하였다. 이것은 생활 지도에 대한 태도의 편차가 넓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발부문에서도 완전자율의 의견에서부터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개진되었다. 이에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120분 동안 진행하여 교직원 제·개정안을 정하였다. 이 회의 진행 사항은 본교 학교홈페이지 연구학교 자료실에 탑재하였다.

2) 학생 의견 수렴

학생 의견 수렴의 방법은 학급회의와 학생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학생들은 학교장의 서한문을 보고 어느 항목에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지를 알고 있었으며 개인의 의사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급회의를 통해 각 학급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학급대표가 모여 120분간 학생 대의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두발 부분에서만 60분에 걸쳐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이 회의 진행의 모습도 본교 학교홈페이지 연구학교 자료실에 탑재하였다.

3) 학부모 의견 수렴

학부모 의견 수렴은 학부모회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학년별 소회의와 전체 학년 대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가장 관심 갖는 분야의 학부모 평생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참여를 도왔고, 학부모 대표위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부모 또한 학생 두발과 상·벌점제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진지한 자세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진행모습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의견 수렴을 위한 교직원 회의〉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학급회의〉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 회의〉

	학교 규칙 또는 규정	학생	학부모	교사	비고
두 발	제9조 (두발)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 음 각 항 과 같다. ① 남학생의 머리 길이는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고, 옆머리가 귀를 덮지 않도록 하며, 뒷머리는 뒷덜머리를 덮지 않도록 한다.(비대칭머리, 귀파기, 삭발 등 불가)	- 앞머리 규정 폐지 - 옆머리 귀 덮기 허용 -귀 파기 금지 -뒷머리 카라당지 않도록	① 현행을 유지 하되 안 간의 구레나룻 허용 (단, 너무 길거나 술이 많으면 안된다.)과 귀를 파지 않고 덮지 않을 정도로 한다.	-남학생의 경우 현행 유지	
	②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교복을 착용한 후 목과 어깨의 경계선 정도의 단발머리로 묶지 않는다.(비대칭머리, 바가지 머리 등 불가)	- 머리길이 명찰까지 - 머리 묶는 것 허용	② 머리길이는 목지 안을 때는 귀밑 10cm, 뒤편을 때는(당고머리 불허용, 감정곤 사용) 15cm로 한다.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채골까지 허용 - 머리묶기 허용 - 당고머리 불허용	
	③ 머리에 일체 장식을 불허한다.(젤, 무스, 스프레이, 왁스 등) ④ 염색과 파마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⑤ 수발은 위시 1, 2, 3, 4항의 사항을 준수하며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⑥ 타인에게 혐오감 및 학생 풍위에 어긋나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⑦ 세 지능 존이나 신비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머리를 길러야 할 경우는 학교장서 허락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앞머리 현행 그대로 *현행 유지	-앞머리는 현행 *현행 유지	- 앞머리는 현행유지 *현행 유지	

〈각 주체별 의견 수렴〉

【그림 II-2】 학교규칙 제·개정안 의견 수렴

라. 1차 시안 마련

각 구성원별로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1차 시안을 마련하고, 쟁점이 되는 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토론회 및 공청회를 준비하였다.

다음은 각 구성원별로 의견을 수렴한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안 교사주도의 학교규칙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표 II-1〉 학교규칙 구성원별 1차 시안 주요 내용

구성 항목		학생	학부모	교사
두 발	남 학 생	◦ 앞머리 규정 폐지 ◦ 옆머리 귀 덮기 허용 ◦ 귀 파기 금지 ◦ 뒷머리 목에 옷깃을 닿지 않도록 한다.	◦ 현행을 유지 하되 약간의 구레나룻 허용(단, 너무 길 거나 술이 많으면 안된다.) ◦ 귀를 파지 않고 덮지 않을 정도로 한다.	◦ 현행 유지
	여 학 생	◦ 머리길이 명찰까지 ◦ 머리 묶는 것 허용 ◦ 앞머리 현행 유지	◦ 묶지 않을 때는 귀밑 10cm ◦ 묶을 때는(당고머리 불허용, 검정끈 사용) 15cm까지 ◦ 앞머리는 현행 유지	◦ 머리길이는 쇄골까지 ◦ 머리 묶기 허용 ◦ 당고머리 불허용 ◦ 앞머리는 현행유지
	장 식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용의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소지품 검사		◦ 사건 발생 시 불시 검사	◦ 때에 따라 소지품 검사 ◦ 여학생은 여자선생님, 남학 생은 남자 선생님이 검사	◦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지품 검사 실시
통신 기기		◦ 통신기능이 없는 휴대기기 휴대 허용	◦ 현행 유지	◦ 현행유지 ◦ 위반 시 지도교사가 4주간 보관
복장		◦ 교복 속에 색깔티 착용	◦ 교복 속에 흰색티 허용 ◦ 치마 길이는 무릎 선	◦ 현행 유지
징계 및 상벌점 제도		◦ 1일 교사의 상점 발급 10점 제한 금지 ◦ 상점 항목 늘리기 ◦ 상점에 기타 항목을 만들어 교사재량으로 발급	◦ 상점항목 19항목에서 24항 목으로 5항목 추가 제시 ◦ 벌점항목 44항목에서 47항 목으로 추가 제시	◦ 상점항목 10항목 추가 ◦ 벌점항목 45항목으로 기존 벌점항목의 삭제·추가 ◦ 선도위원회 회부 후 과제이 행시 벌점 삭감 범위 확대

마. 토론회 개최

1) 토론회 진행

각 구성원별 대표와 200여명의 방청객이 저녁 7시부터 10시 40분까지 긴 시간을 함께 하였다. 토론회를 저녁 시간에 개최한 것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참여 시간을 일과 후로 정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의도였다. 그런데 예상 시간 2시간을 훌쩍 넘겨 학생들의 귀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인근 지구대에 연락하여 순찰차 방법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학기 2회 고사(기말고사)가 끝나 학습의 압박감이 해소된 상태에서 학교규칙의 개정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섰고, 이것은 많은 방청객의 참여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200여명의 참여로 토론회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하였으며, 최종안으로 마련된 학교규칙에 대하여 별도의 홍보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학생들에게 입소문으로 전파되었다.

진행은 대표 학부모 위원 5인, 학생 위원 5인, 교원 위원 5인으로 구성된 15인과 방청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규칙은 용모, 소지품 검사, 통신 기기 관리, 복장,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 두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토론이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어 주제 별로 반론 2분, 재반론 2분, 자유발언 1분, 방청객 의사발언 1분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합의 도출을 위해 대표 15인이 거수로 결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반론과 재반론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맨 마지막으로 두발 항목을 다룬 것은 가장 민감한 문제여서 다른 항목들의 원만한 회의 진행 후 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청객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효과를 거뒀다. 긴 시간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의 규칙을 두고 머리를 맞담으로써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성숙해 질 수 있었다.

2012학년도

학칙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2. 7. 11. 19:00
장소 : 본교 시청각실(3층)

서곶중학교

〈학교규칙 토론회 프리젠테이션〉

통신기기 관리

학생

· 휴대전화·경기·통신기기가 없는 휴대기가 휴대 의무 (단, 수업 중 사용 불가, 위반시 4주간 보관함)

학부모

· 현행 유지

교사

· 통신기기 관리를 현행 유지
· 위반 시 지도교사가 4주간 보관함

현행

1. 교내에서 휴대전화, MP3, MP4, PMP는 소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한 경우 지도교사가 보관함
3. 휴대전화 교내에서 반드시 전원을 끄고, 교문 밖에서 사용한다.
4. 수업 중 휴대하는 교문 밖을 회회하면 활동한다.
5. 교내 정복통신 기지국을 아이고 설치해 금지한다.

〈학교규칙 중 통신기기관리 관련 자료〉

학칙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 소감

번호 : 14

[작성자 : (박재미)]

오후 7시 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이 되었다. 아이들은 두말에 관한 토론이 마지막에 있어서인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남아있었다. 학생들이 예상외로 몰려와서 소란스럽고 경신없기는 했지만, 학칙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았다. 장소가 좁아 사람들이 집중할 수가 없었고,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속박한 느낌이 의견이 많이 모아지지않고 그냥 표출해 말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웠다.

다시 이런 토론회를 하게된다면 조금 넓은 장소에서 조금은 이른 시간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학교규칙 제· 개정 참여 학생 소감문〉

인천신문

2012년 07월 16일 월요일
013면 사립과사학

서곶중, 학칙 제·개정 토론회

인천 서곶중학교(교장·이서관)는 최근 지역 최초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학교규칙 제· 개정 지역신문 보도〉

〔그림 II-3〕 학교규칙 토론회 및 보도

2) 2차 시안 주요 합의 내용 및 학생 반응

■ <표 II-2> 학교규칙 2차 시안 주요 내용

구성 항목		2차 시안 주요 합의 내용	학생 방청객 반응
두 발	남 학 생	◦ 현행을 유지 하되 약간의 구레나룻 허용 ◦ 귀를 파지 않고 뒷목의 옷깃을 덮지 않을 정도로 한다.	◦ 현행과 유사하게 되어 결정되어 불만을 토로함
	여 학 생	◦ 머리길이는 쇄골까지 ◦ 머리 묶기 허용 ◦ 당고머리 불허용 ◦ 앞머리는 현행유지	◦ 더운 여름에도 머리를 묶지 못하였던 것이 머리 묶음이 허용되었고, 머리 길어도 현재보다는 많이 길어지게 결정되어 남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만족감 표현함
	장식	◦ 현행 유지	◦ 긍정적 반응
용의		◦ 현행 유지	◦ 긍정적 반응
소지품 검사		◦ 때에 따라 소지품 검사 ◦ 교내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되도록 남교사가, 여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여교사가 소지품을 검사 ◦ 교외활동일지라도 여학생의 경우 남교사의 신체접촉에 의한 소지품 검사는 불허용	◦ 사건 발생 이전에도 소지품 검사에 동의 ◦ 여학생들의 성추행 예방을 위하여 남교사의 신체 직접 검사를 제한하여 만족감 표현함
통신 기기		◦ 현행유지 ◦ 위반 시 지도교사가 4주간 보관	◦ 휴대용 음악재생기기의 소지 불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함 ◦ 교사와 학부모는 동영상기기의 문제점과 청력보호, 교우관계 고립 예방 등으로 학생 설득
복장		◦ 교복 속에 흰색 티셔츠 허용 ◦ 치마 길이는 무릎 선까지	◦ 속옷만이 허용되었었으나 흰색 면티도 허용되어 상대적으로 만족감 표현함 ◦ 치마 길이가 무릎선 아래였다가 현실적인 무릎선 길이로 개정되어 만족감 표현함
징계 및 상벌점 제도		◦ 상점항목이 19항목에서 28항목으로 추가 ◦ 벌점 항목의 44항목에서 45항목으로 변경되었고, 내용의 명확성 추구 ◦ 선도 처분시 벌점 삭감 범위 확대 ◦ 교사의 상점 제한 항목 20점으로 확대	◦ 학생 구성원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어 만족감 표현함

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토론회에서 결정된 2차 시안의 내용을 7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에 발송하여 7월 19일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이전에 학교운영위원들을 학교규칙 토론회 때 방청객으로 초빙하여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안내하였기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2차 시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2) 학교장 결재

학교장은 학교규칙 제·개정 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학교 운영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을 학교규칙으로 결재하였다. 다만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자는 당부가 있었다.

3. 학교규칙 홍보와 공포

가. 학교규칙 홍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제·개정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고 이를 SMS문자를 통하여 안내하였다. 개학날에는 학교규칙 중 주요규칙을 통신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각 학급과 교무실 그리고 복도에 중요 학칙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여 학생과 교사가 학교규칙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도록 도왔다.

<학교규칙 홈페이지 탑재 안내 및 통신문>

<학교규칙 학급게시 홍보물 제작>

나. 학교규칙 선포 및 준수 선서식

2학기 개학일(2012.8.17.)에 학교장은 201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을 공포하였고,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선서식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학교규칙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교규칙을 준수하려는 의식을 함양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자녀가 학교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같이 힘쓰겠다는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규칙 제·개정 선포 및 선서식〉



〈학생·학부모·교사 대표 선서〉

학교 규칙 준수 선서문

우리는 2012학년도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서곶중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푸른 꿈이 영글어 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 ▶ **학 생** 우리는 친구 및 선·후배들 사랑과 믿음으로 존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원천하며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 ▶ **학부모**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서곶중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을 선서합니다.
- ▶ **교 원** 우리는 학생들을 사람으로 가르치며 다양한 경험과 책임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학생 대표 박 소 현
학부모 대표 김 기 남
교사 대표 류 광 준

〈 학교 규칙 준수 선서문〉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준수 서약서**

나 학생 _____ 는,(은)

2012학년도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개정 한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임의식을 지녀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이름 : _____ (서명)

〈학교규칙 준수 학생 서약서〉

Ⅲ. 나오며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학생들은 많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학교규칙에 대한 불만감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도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처한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건전한 방향을 잡아 배려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학교규칙을 만들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낸 학교규칙을 학생들은 지킬 것이며, 자신이 합의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긍지심을 가질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으며,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활동의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학교규칙 제·개정에 대한 소감 〉

1) 교사 (교무기획부장 임재령)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규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우리 학교도 학생, 학부모, 교사 즉 3주체가 의견을 각각 수렴하여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직접 우리 손으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였다. 제·개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 시간만 3시간 반이 넘게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학교규칙 공동 시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 과정을 같이 겪어온 교사 대표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 학부모 대표가 부모로서의 의견을 진지하게 대변하는 모습, 교사가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의 고충 토로와 관계된 의견 발표 모습 등을 보이며,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3주체의 성숙된 토론 모습 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규칙’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개학식 날 선서식에서 직접 만든 학교 규칙이기 때문에 잘 지키려고 다짐하는 학생들의 모습, 교사들도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사랑으로 지도하겠다고 선서하는 모습, 학부모님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서하는 모습 등이 가슴 벅찼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든 학교규칙인 만큼 모두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

2) 학부모 (2-3 김준우 모 김수영)

학교규칙 제·개정에 있어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정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연구 과제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을 지켜봤는데, 규칙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모두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정을 알 수 있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와의 의사소통이 확 트인 듯 합니다. 학교와는 친밀감이 형성되고 학부모가 교사와 학생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며 의견을 수렴하는 동안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다 알 수는 없었겠으나,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수렴하고 절충하면서 교사·학부모·학생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교생이 다 참석할 수는 없었으나 토론회에 참관하여 지켜보던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하여 절충하며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의 의견을 수렴·절충하여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학생 (학생회장 3-10 박소현)

예전에는 학칙을 정할 때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었다. 학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대로만 학교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칙을 정하는 과정이 바뀌어 학생들도 학칙 제·개정을 할 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먼저 각 반의 학급회의에서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들이 다시 학생회의에서 모아져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학칙 제·개정 토론회에서 학생 대표 5명이 학생의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학칙 제·개정 회의에는 학부모 대표 5명, 학생 대표 5명, 교사 대표 5명이 각각 모아진 의견들을 놓고 토론하면서 학칙을 정했다. 그리고 학칙이 다 정해진 후에 학칙을 잘 지키겠다는 선서식까지 하였다. 그 토론회에는 학생대표가 아닌 다른 학생들도 방청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학칙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학칙이 정해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예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보다 더 잘 수용할 수 있었고, 전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나 또한 예전에는 학칙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학칙 제·개정 토론회에 학생대표로 참석해 학칙이 모두의 의견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학칙을 불만 없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이 함께 정한 학칙이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지키려고 마음 먹게 되는 것 같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1분과 패널토론 1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서의 학교규칙 제·개정

■ 송 재 범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서의 학교규칙 제·개정

송 재 범(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교과부가 발간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2012)에 따르면, 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들어 각 급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제 발표 및 중·고교의 사례발표는 이러한 움직임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

우선 주제 발표자는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의 의의와 제·개정 절차를 소개하고, 학칙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학칙 제·개정 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 제목이 ‘학칙 제·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과 연결시킨 것이 흥미로우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본 토론의 글도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서의 학교규칙 제·개정」으로 잡아보았다.

그리고 중·고교의 사례발표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부터 학칙 확정까지의 구체적인 절차 및 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칙 제·개정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기와 어려움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주제 발표자와 사례발표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에서의 학칙 제·개정에 대한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학칙 제·과정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었고,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여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학생은 더 이상 외부에서 만들어진 학칙을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은 학교구성원의 중요한 일원으로 참관자가 아닌 주도자로서 참여하여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학칙 제·개정 과정은 단순히 단위학교에서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 공동체적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학교 구성원 3주체가 함께 학칙을 만들어가면서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서의 중요한 경험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주제 및 사례발표는 학칙 제·개정의 의미 및 구체적 적용과

정을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과정을 ‘민주시민교육’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미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발표된 주제 및 사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규칙은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규칙 운영매뉴얼」(교과부, 2012)에 학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칙은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1,2,3,4,5,6,10호)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7,8,9호)으로 구분되는데,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이 학생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학칙은 학생들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단순한 의무이며 통제수단의 의미밖에 없다.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에 있듯이, 교원에게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또한 학부모에게 학칙은 학생지도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학칙이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례는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교과부, 2012)에도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다.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운영’ 소개 사례 등을 보면, 학칙은 ‘학생의 약속’, ‘교사의 약속’, ‘학부모의 약속’처럼 3주체의 공동 약속이다.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만 지켜야 하는 규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공동체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학칙 제·개정 과정 중에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이고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칙이 학교구성원 3주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학생들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좀 더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구성원 3주체의 의견 비중을 기계적으로 삼등분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때 학생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자발적인 준수 의지도 떨어질 것이다. 주제 발표자의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학교의 학칙을 알고 있

는가?’에 89.7%, ‘현재 학교에서 학칙 제·개정 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가?’에 84.6%의 학생들이 긍정적 답변을 한데 반해, ‘현재 학교에서 학칙 제·개정 시 토론회, 공개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는가?’에는 54.7%로 다른 질문에 비해 긍정적 답변 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적 의견 수렴이 아닌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및 홍보, 철저한 의견 조사 등이 필요하다. 중·고교의 사례 발표를 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를 개최하였다.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학급단위 학생들의 토론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교원들의 의견은 전체의 설문지를 받아보면서 학생들의 의견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전체 학생의 의견보다는 학급회의와 학생회의 절차로만 대신하지 않는가? 등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고등학교 사례발표를 보면, 초기 의견수렴에서 두발규정에 대해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두발 자유화를 원하고 있음에도, 학생과 교사 간의 입장차이로 수정·합의된 두발 규제의 학칙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학칙에 대한 만족도가 교원과 학부모에 비해 학생들이 낮게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칙 제·개정 과정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민주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주제 및 사례 발표자도 학칙 제·개정 과정을 민주시민교육과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칙 제·개정 과정이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 토론자에게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하나 제시하라면, 심의민주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모형과 실천방안 연구],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 2012).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인 심의성(deliberation)의 회복이 필요하다. 심의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참여를 실질화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적 절차가 단지 결론의 도출을 위한 기능적인 과정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차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소위 결과지향적인 ‘산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심의민주주의는 절차를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스스로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만들고, 그를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 능력의 제고, 즉 민주주의적 임파워먼트(democratic empowerment)에 역점을 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2012)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을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시민지식’(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수준, 민주시민 관련 지식 등) 점수가 565점으로 세계 2위(공동 1위 덴마크·핀란드 576점)인데 반해,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영역(6개 영역)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시민역량에 있어서 지식은 많은데 실천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칙 제·개정 과정은 학생들의 실질적 심의성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과정,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중학교 사례발표의 학칙 제·개정에 대한 소감에서 담당 교사는, ‘다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규칙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는 학생자치과라는 부서가 생겼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되는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방향은 학생자치와 학생참여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학칙 제·개정 과정은 참여를 통한 학교구성원으로서의 민주적 효능감(시민적 자아효능감, civic self-efficacy,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시민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일련의 활동들을 완수할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이 될 것이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1분과 패널토론 2

학교(학급)규칙

■ 설 선 국
(서울 장원중학교 교사)



학교(학급)규칙

설 선 국(서울 장원중학교 교사)

1.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 학생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학칙은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는다.

학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 교원

학칙은 학교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학칙은 상·벌 등 학생지도에 대한 기준이 되며,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을 한다.

■ 학부모

학칙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한다.

학칙은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될 때 학교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칙은 학생지도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 학칙 제·개정 절차

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학칙 제·개정 절차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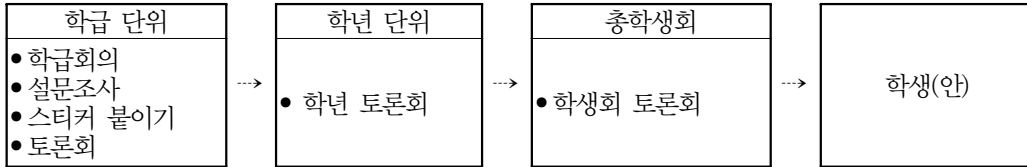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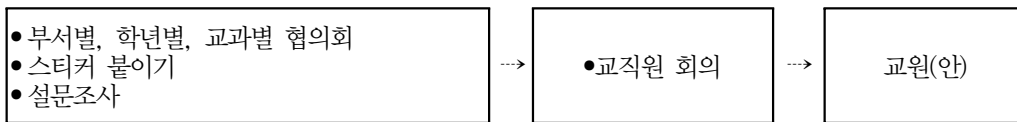
제 9 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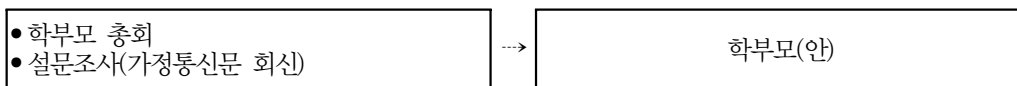
▶ 학생



▶ 교원



▶ 학부모



4. 학교규칙 관련 법령 사항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② 삭제 <2005.1.29> 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 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	--

정제영 교수 정리자료 발췌(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그림 1)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

절 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제정·개정안 발의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학급회의 및 어린이회의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1차 시안 마련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토론회 개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최종 시안 마련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3 학교규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학칙 승인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p.17.

5. 학생자치활동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8호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6. 학급규칙 제정

가. 학급규칙 제정절차 예시

순서	학급 규칙 제정 절차	시기	비고
1	학급규칙 제정의 필요성 연수 - 학급규칙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점	3. 12	담임교사 (총 30명)
2	학급 상황 파악	3. 15	1주일 간
3	학급규칙(안) 작성 - 학급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	3. 19	
4	학급규칙 제정 - 학급 자치회의에서 결정	3. 26	
5	학생자치지원부에 제출 및 검토 -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지 검토	3. 29	
6	학급규칙 제정 알림 -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4. 2	
7	학급규칙 중간 수정 점검 - 학급규칙 운영 후,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학급회의에서 논의하여 수정 및 확정	5. 1	
8	수정된 학급규칙 알림 -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5. 7	

나. 학급규칙 예시

첫 째, 따돌림 없는 화목한 반을 만들자. 둘 째, 친구를 돕고 칭찬하여 나쁜 짓을 말리자. 셋 째,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상처주는 말은 하지 말자. 넷 째,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자. 다섯째, 학교 물품은 아껴 쓰자. 여섯째, 친구의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자.	일곱째, 청소를 열심히 해 깨끗한 반을 만들자. 여덟째,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해 건강해지자. 아홉째, 친구들이 싫어하는 장난은 괴롭힘임을 알자. 열 째, 준비물, 숙제 등 수업 준비를 잘 알자. 열한째,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고 솔직하자.
--	---

7. 교육법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이하 생략)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8. 학생(학급)자치법정과 상·벌점제

가. 의의

학생자치법정은 상·벌점제에 의한 누적벌점이 학교에서 정한 일정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받아 법정에 회부하여 정해진 일시에 재판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이 법정에서 부과된 긍정적인 벌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벌점을 차감해 주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미이행 하게 되면 (소)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나. 학급 자치법정 운영방법

- 학급정부회장 선출: 학생선관위에 의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학생들이 지지하고 신뢰하는 학급임원 선출
- 학급규칙 제정 : 학급회의를 통하여 학교규칙 범위 안에서 학급규칙을 제정하고 학급규칙 위반 시 학급자치법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법정구성원 선발 : 학급회장이 판사, 부회장이 진행인, 학급서기가 법정서기, 법정경위와 청소년참여인단은 재판이 열리기 직전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 학급자체 부과과제 선정: 학급회의 또는 법정구성원회의를 거쳐 학급규칙 위반 시 학급자치법정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과과제 10가지 이내 선정
- 과벌점 학생 : 학급규칙에서 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학생으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학급자치법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자체 상벌점제 규정에 따름.
- 억울한 대접을 받은 학생 : 학급자치법정 법정서기에게 자치법정을 개최할 것을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학급자치법정을 진행함.
- 담임교사가 처리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 1차적인 재판

※ 학급자치법정과 학생자치법정(청소년참여법정)의 절차 및 진행방법은 동일함

다. 기대효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자치의 의미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학교에 개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폭력과 같은 부정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개념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식을 기를 수 있다.

학생 생활지도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92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_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고) 스티커 붙이기 벌점 개정 양식(2012. 8.13, 강일중학교)

	별점 항목	별점을 받아야 할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스티커 붙이세요.				
		1점	2점	3점	0점	
1.	염색, 파마, 붙임머리, 눈썹 붙이기	13	2	1	8	
2.	교복미착용 변형, 타교교복 착용, 실내외화 미착용	7	10	7		
3.	화장, 손톱, 장신구 착용	17	2	1	4	
4.	쓰레기 무단 투기, 침 뱉기	8	14	1	1	
5.	무단외출, 도박, 외설물 소지	8	1	13	2	
6.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폭언,	4	5	15		
7.	수업방해, 준비미비, 잠자기, 휴대폰 사용	7	8	3	6	
8.	적발 시 도주행위, 담배, 라이터 소지	0	7	16	1	
9.	위험한 장난, 불량장난, 학교기물파손	2	1	20	1	
10.	기타 (과도한 애정 행각)	2	5	16	1	

단, 위의 사항보다 중대한 경우는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한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1분과 패넬토론 3

기자 입장에서 본 학칙 제 · 개정 -교육현장의 반응과 제안-

■ 최 예 나
(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기자 입장에서 본 학칙 제·개정 - 교육현장의 반응과 제안 -

최예나(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1. 학칙 제·개정의 근거를 마련했을 때 현장의 모습

1) 부정적인 반응

- 2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일부 지역 학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음.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두발·복장의 자유나 간접체벌을 허용을 학칙으로 정해도 교육감이 제재할 수 없음.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우선이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

① 교육청: ‘학칙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면 안 된다’

- ▷ 서울시교육청: “학칙인가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학교가 조례에 위반되는 학칙을 기재하면 안 된다”
- ▷ 경기도교육청: “학칙인가권이 폐지돼도 학교가 조례에 부합되는 학칙을 제정하도록 지도하겠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칙의 상위법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맞지 않는 학칙을 제정하면 장학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 ▷ 광주시교육청: “학칙 제·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지만, 최대한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도록 지도하겠다.”

② 학교

- ▷ A 지역 B중: “교육청이 조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니 학교가 나서서 학칙을 개정하기 어렵다. 학생들도 반발할 거라 걱정된다.”
- ▷ B 지역 C고: “초·중등교육법이 위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약간이라도 두발을 규제하는 학칙으로 제·개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③ 언론에서 본 모습

언론	일자	제목
경향신문	2월 29일	학칙 제·개정 권한 학교장에 있어...학생인권조례 무용지물 될 수도
SBS	4월 17일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력화...학칙에 두발·복장 기재 명시
뉴스1	4월 18일	서울시교육청, “학칙 개정해도 서울학생인권조례 내에서 해야”
KBS	5월 3일	일선 학교서 만든 학칙,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2) 긍정적인 반응

- 일부 지역에서 학칙 제·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교들도 있음. 이들은 자율적으로 학칙을 만들 수 있는 자율성을 반기는 분위기. 특히 실제로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했던 학교들은 ‘학칙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좋다는 의견.
- 특히 현재 시점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학칙을 그대로 둔 채 때마다 다르게 적용했던 학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지킬 수 있는 학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이는 학칙을 지키지 않아 벌을 받게 돼 학생과 교사 간, 때때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발생했던 갈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인천 서곶중

- 학생회장: “학생 의견을 어른들이 들어준다는 게 제일 좋았다. 이전에 학칙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을 때보다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두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 불만이 많긴 했지만, 모두가 참여한 만큼 결정된 걸 지켜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 교무부장: “이제는 학칙이 규율적 성격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일방통행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간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는 사실이 가장 좋다.”

2. 제안점

1) 학칙 제·개정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 처음 교과부에서는 2학기 때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제·개정 학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음. 당초 8월 전까지 학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음. 그러나 현재 이 과정을 모두 완료한 학교들은 그리 많지 않음.
- 취재 과정에서 이 과정을 모두 완료한 학교들조차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었음. 각 수요 주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그걸 반영하는 걸 처음 해봤기 때문. 한 교장은 “모두가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다”고 말해.
- 교과부가 학칙 제·개정을 우수하게 해낸 학교들 사례를 발굴해 보급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또 그 우수학교가 학칙 제·개정을 하려는 학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좋을 듯함. 자기 학교가 했던 과정보다 조금 더 신속하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게 가능함.

2) 학생인권조례와 학칙이 상충된다는 생각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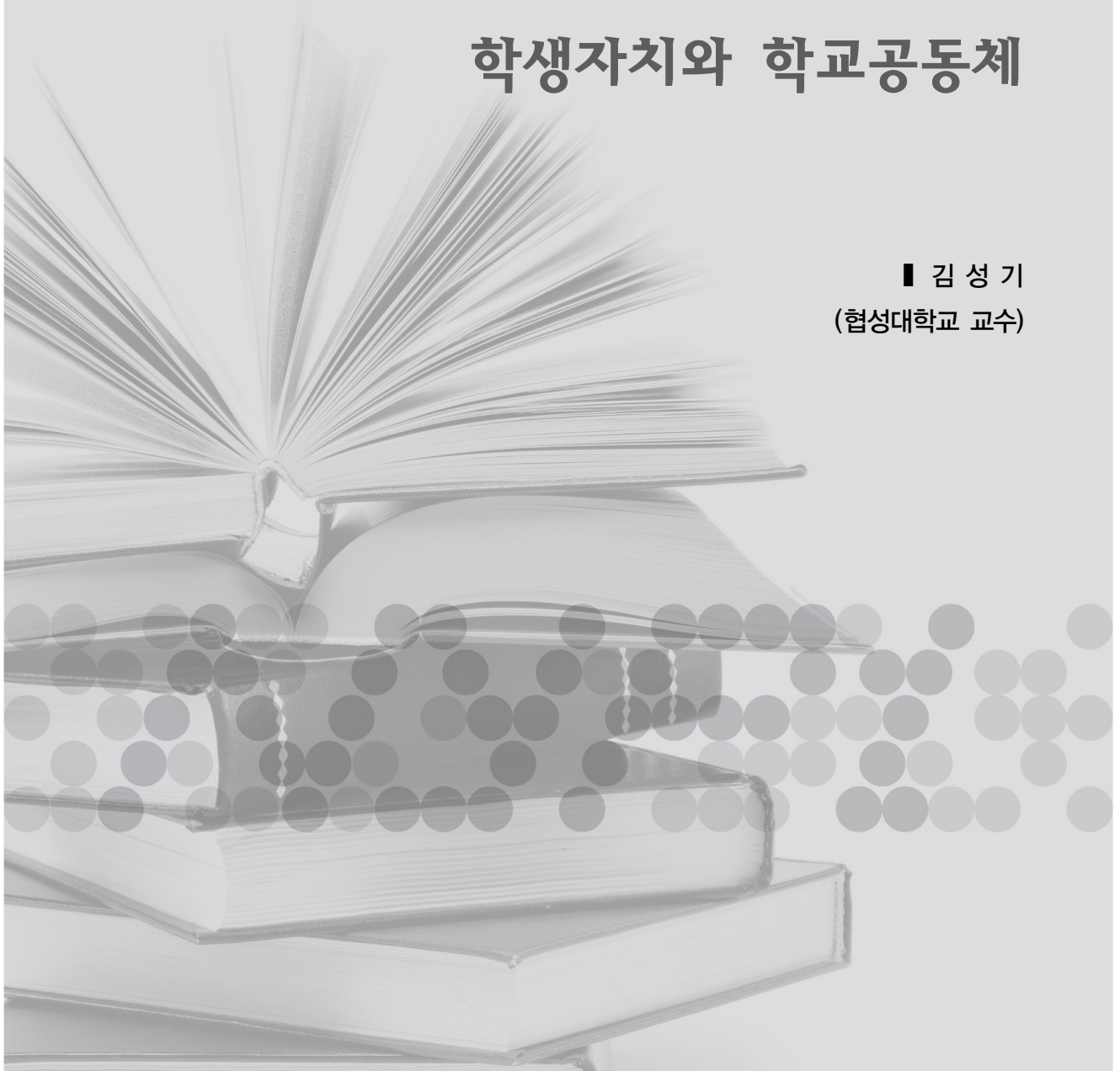
-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두발·복장 및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을 설사 학칙에서 일부 규제하더라도 그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님.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논의 끝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 정도를 지키자’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두발·복장이나 휴대전화 소지 등에 있어 무조건적 자유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음.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교육청이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자유의 보장 범위는 각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학교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학칙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함.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2분과 논문

학생자치와 학교공동체

■ 김 성 기
(협성대학교 교수)



학생자치와 학교공동체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

전통적으로 학생은 가르침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학생은 학습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있어 학생의 의견이 자율적으로 생성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학교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학생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감에 있어 학생자치의 의의와 역할을 제시하였다.

1. 학생자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

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학생자치의 개념적 관계

학생자치는 넓게 보면 교육자치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자치라는 것이 일반 행정이나 중앙행정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 결정,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학교자치와 학생자치도 교육자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학교자치란 다른 공간이 아닌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외의 타 조직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자치도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구성원의 한 집단인 학생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생성하여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교육자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자치를 배제한 채 교육자치가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자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기본법 동조 제2항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의 한 외연이라 볼 수 있다. 자율성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으로 본다면 구성원들의 의지로 학교운영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치적 성격을 가지며 자기구속적 행위를 말한다. 결국 학교자치라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교육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표는 일차적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실

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자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학교운영의 자율화는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학부모들의 특성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학생지도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공동체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만족도가 증대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교교육의 책무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이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도급경비제를 시행한다든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자율권이 많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치적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한계들을 갖고 있다(김성기, 2005:64-65).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학생자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 발전되어 왔고, 학교자치는 학교자율화 정책에 의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학생자치는 많이 진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에서야 학생체벌과 학생인권조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학생에 관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학교자치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과정으로서의 학생자치는 학교자치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학생자치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학교자치의 근거

제목에서의 ‘학교공동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행위 하는 상태가 바로 학교자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자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자치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의 자치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심의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

조문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만을 천명하였을 뿐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 자치의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 그 틀을 쉽게 바꾸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현대사회의 다원화로 인해 교육적 공공성의 구체적 형태도 학교별로 다원화되어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교운영의 자주성, 곧 학교자치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논리적·필연적으로 자율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이란 사회일반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 따위를 미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을 길러내는 일로서 사회일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적 주체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공적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획일적 통제로 그 공공성을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 그 공공성을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방식의 하나가 바로 학교자치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그 공공성을 누가 판단하는가?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판단해 왔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그 이익의 실체가 사회계층과 같은 집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합의된 공공이익이라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등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단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외의 많은 학교운영의 측면은 국가단위의 단일한 규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수혜자들의 교육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과정만 하더라도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즉 교육 공공성의 실체적 내용은 이제 단위학교별로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개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일종의 작은 사회로서 여러 계층의 아동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바뀔 때 그 인적 구성의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마다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그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선택권이 제한된 제도적 상황은 교육수요자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시장적 원리에 의해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서 입학한 것이라

면 그것은 이미 그 학교의 운영방식에 대해 동의, 계약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직접통제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초·중등학교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학교선택권이 제한당한 상태에서는 재학기간 중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직접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자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참여의 법적 근거

위와 같이 본다면 학생자치는 학교자치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자치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1)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가능성

현행 교육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학생은 학교운영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이를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며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부터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학생회 지원 및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보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장이 학생상벌이나 생활지도,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에 대해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수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학생이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장이 이 조직운동을 지원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은 학교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

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2. 학생 자치의 현황³⁾

위의 법령에서 규정한 강제규정과 권고규정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의 설문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⁴⁾ 부분적으로 2004년에 최순영 국회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현황

44.2%의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23.2%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53.8%), 학교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응답도 과반수(59.7%)로 나타났다.

나.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58.5%)였다.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경우는 47.8%(부정적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학급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과반수(51.8%)로 나타났다.

3) 2004년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서울, 전남, 울산, 경남, 강원지역의 중학교 79개교, 고등학교 176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자치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바 있다.

4) 문항에 따라서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응답이 다른 경우가 있다. 교사들은 학교 측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또한 학생들이 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라 보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생들의 응답결과로 현황을 제시하였다.

다. 학생회 지원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1) 재정적 지원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은 56.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회가 필요한 비용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31.8%(그렇지 않은 경우는 14.8%, 나머지는 무응답)이고,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22.5%(비공개 30.7%, 나머지 무응답)밖에 되지 않아 재정적 지원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2004년의 설문에서는 학생회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58.5%였고,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71.5%로 많았다.

2) 학생회실 지원

학교에 학생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1.8%이고 미설치교는 42.5%(나머지는 무응답)였다. 2004년에 학생회실이 있는 경우는 59.2%였음을 볼 때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회실이 없는 경우 전교 학생회의 등 학생회 회의를 개최할 때는 주로 일반교실을 이용(30.7%)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교과교실(22.7%), 도서관(16.7%), 다목적실(13.0%), 강당·시청각실(11.7%), 기타(5.2%)를 이용하고 있다.

3) 학생운영위원회 참여

학생회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도 48.2%(비참여는 14.3%, 나머지는 무응답)로 2004년도의 29.3%보다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4) 학칙 제·개정 시 참여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84.6%로 나타나 2004년의 92.8%보다는 약간 떨어졌다. 학칙 제·개정 시 참여하는 학생(복수응답문항)은 학생회임원이 7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급대표 58.5%, 학년대표 43.7%, 일반학생 39.7%, 기타 5.0%였다. 학칙 제개정 시에 임원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학생에 의한 참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라. 소결: 학생자치의 실태

위의 설문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학생자치활동은 그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첫째로,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과반수가 약간 넘을 뿐이다. 학교운

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직까지 학생을 미성숙자로만 보아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칙 제·개정 시에는 학생참여가 8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진영중 외(2007)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자치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학생 자치를 위해 배정되어 있는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학교당국에 면담을 요청해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학부모단체나 회장단 어머니들에게 학교 행사에 꽃다발과 다과를 준비하게 하거나 금품, 행사 참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 보호자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설문결과에서도 학생회실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반교실을 회의실로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회 자치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아쉽다.

이 외에도 진영중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학생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과 동아리 활동 규제 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자치권 제한의 사례로는 학급대표, 전교 학생 대표 선출시 간선제를 운영하는 경우, 학생회 입후보 자격에 교사 추천, 징계경력 없음, 품행단정 등의 요건을 두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경우, 학생회 선거 공약을 사전 검열하는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학교당국의 승인절차를 두는 경우, 일부 학생의 선거 참여가 아예 불가능한 날에 선거일을 잡는 경우, 대의원회의 소집 시 학교장이나 자문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회의 안건이나 활동 내용을 교사들이 정해주는 경우, 학생회 예산에 관한 권한, 회칙 개정권 등을 포함하여 자치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 학생회 집행부를 학교가 대신 임명하는 경우,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회실 열쇠를 교사가 갖고 있는 경우, 학생회의 1년 목표를 교사가 대신 정해주는 경우, 학생회에 각종 성금 모금, 캠페인, 선도활동 등을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지시하는 경우,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를 포함하여 회의 결정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경우, 타 학교 학생회와의 연합 활동을 불허하는 경우, 학생대표의 방문이나 답변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가 가로막혀 있거나 회의록 공개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동아리 활동 규제의 사례로는 동아리 설립 허가제를 두거나 까다로운 설립 절차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가 인정하는 동아리 가입만 허용하거나 특정 동아리에 대한 선입견을 함부로 유포하는 경우, 특정 동아리의 축제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연에 필

요한 공간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 방송부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동아리만 지원하고 다른 동아리에 대해서는 활동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설립 취지와 관계없는 활동으로 때워지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3. 학생참여 활성화 방안

가. 학생대표기구로서의 학생회 활동 보장

1) 학생회의 공식적 인정

학생자치활동은 사실상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를 학칙 등에 공식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법정 기구는 아니지만 단위학교에서부터 학생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학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를 공식적인 학생대표기구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칙 또는 학생회 관련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회의 활동과정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교사의 지도는 자문 수준에 그치도록 하고, 학생회의 활동내용이나 결정에 대해 사전, 사후 승인 절차 등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학생회실 설치 및 운영 예산 확대 지원

학생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생회실 확보가 시급한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실을 활용하여 학생회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실이 있는 경우라도 책장과 서류함, 작업용 컴퓨터 등 기본시설이 부족하다. 학교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예·결산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학생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정 지원 외에 학생들이 바자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호응하여야 할 것이다.

나. 대표 선출의 합리성과 민주성 제고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고 사회적 원리가 통용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면 학생들은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 성적 등에 의해 선거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않듯이 학교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교사의 추천, 성적, 징계 경력, 품행, 종교 등이 자격기준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학생이 대표로서 적절한지는 유권자인 학생들이 판단할 일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학교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관리도 학생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일반 사회에서의 투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선거로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서 학교가 사후승인을 하는 등 학생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학생회의 권한 확보

학생회가 학교에서 공식적 학생대표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 학생회 임원 선임권
- 학생회칙,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관련규정에 대한 제·개정안 발의권
- 학생으로부터의 금전 징수·모금 등에 있어 학생회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
- 학생회 운영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 학생회 활동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
- 교외 학생회나 단체와 교류할 권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의견을 개진할 권리

라. 학교운영에의 학생참여 활성화

1)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정 위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가 학운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권리 행사이다.

2)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담회 상설 운영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임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임은 학교장과 학생회의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진다.

마. 학생회의 자발적 노력

학생회가 학교나 외부의 도움만을 받아 운영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자치가 아니라 타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 자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존립의 토대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측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학생회가 스스로 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로서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생회 주관의 공개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인근 학교의 학생회와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면 학생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학생회 활동이나 사업이 주기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스스로 그 활동 등을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평가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수립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교공동체의 발전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학생자치는 넓게는 교육자치의 한 부분이며, 학교자치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나 학교자율화 정책 등에 의해 교육

자치와 학교자치의 외연은 많이 발전되었지만 학생자치는 많이 진전되지 못했다.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객체로, 능동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대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보다는 통제하고 지도해야 하는 타율적 존재로 보아온 인식의 문제가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교원들은 국가에서 공인된 교원자격증소지자로서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 교직원회의나 교원노조, 교원단체와 같은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장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제한적이거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법률로 보장된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학생회는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학생이 소외된 학교공동체란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이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2011).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길라잡이.
- 경기도교육청(2012). '폭력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만든다.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100대 학교문화 우수사례집」
- 구본용, 박제일, 이은경, 문경숙(2010).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기(2005). 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교육법학연구」17-1, 대한교육법학회.
- 김성기, 조석훈(2009). 초등학교 학생행정 가이드. 서울: 학지사.
- 김현진(2011). 고등학교 학생대표자 선출 방식 : 경기도 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최지영, 박종효, 신순갑, 장맹배, 이지혜(2008). 공공의식 배양교육의 제도적 방안 연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2009). 손에 꼬옥 잡히는 생활지도.
-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2011학년도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집,
- 서정화 외(2012). 학교경영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 세계일보(2005). “회의실도 없어요. 이름뿐인 학생회”
- 안승문(2008). 핀란드 헬싱키의 ‘청소년의 목소리’, <http://educa21.tistory.com/76>
- 진영종 외(2007).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 최순영(2004). 학생자치활동 현황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2분과 사례 1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자율적 학교 문화 조성

■ 서울 구암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중심의 자율적 학교 문화 조성

서울 구암고등학교

I. 문제제기

- 가. 초·중학교에서의 자유스런 학교생활 행태의 만연
- 나. 학교생활 규정 및 기초 질서 준수에 대한 준법의식의 상실
- 다. 동료 간, 선생님, 웃어른에 대한 전통적인 예절의 상실
- 라. 저조한 학업성과 정서·행동발달 검사의 부정적 결과

II. 문제 분석과 대안 모색

- 가. 정의, 예절, 준법의식의 배양을 위한 의식개혁 인성교육 필요
- 나. 수업 전 '수업머리 훈화'를 통한 의식 개혁
- 다.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맨십 함양으로 예절의 실천과 준법 의식의 배양
- 라. 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준법의식 고취와 법치주의 인식 확대
- 마.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감사와 사랑의 자율적, 실천적 학교 문화 확립

III. 실천 과제

추진과제 1

정의·예절·준법의식의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과 스포츠맨십 함양을 통한 자율적 실천 태도 고취

1. 수업머리 인성교육을 통한 정의·예절·준법의식의 확립
2.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스포츠맨십 함양으로 자율적·실천적 태도 고취

1. 수업머리 인성교육을 통한 정의·예절·준법의식의 확립

가. 목적

- 1) 정의·예절·준법의 덕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훈육한다.
- 2) 교과별 관련 단원을 통해 올바른 삶을 위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 3)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자율적 규칙 준수 태도와 책임 있게 행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상호존중과 배려의 스포츠맨십을 형성한다.

나. 운영 방침

- 1) 전 교과 수업 시작 전 5분간 정의·예절·준법의 덕목에 관한 훈화를 실시한다.
- 2) 조회, 종례 시에 기초질서 준수와 바른 생활 태도 형성을 위한 실천방안에 관해 담임 훈화를 통한 의식 교육을 실시한다.
- 3) 아침방송과 점심시간 방송을 통하여 욕설 추방과 바른말 쓰기 캠페인 방송을 실시한다.
- 4) 스포츠클럽 리그를 통해 자율적 규칙 준수 태도를 형성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실천적 태도를 고취한다.
- 5) 통합특수 교육 운영으로 배려의 마음을 실천하도록 한다.

다. 세부 추진 내용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자긍심 교육	1. 학교장 신입생 특강 수업 2. 자기소개하기를 통해 자긍심 함양(국어) 3. 교육공동체 공감프로그램을 통해 자긍심 함양 4. 신문을 활용한 즐거운 유머 코너 운영으로 긍정적 자아 형성	3월 3월 7월 연중
바른말 쓰기 교육	1.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주제로 논술쓰기 수업 진행 2. '말이 가진 힘'에 대해 토론 수업 전개 3. 자기주도적 삶을 개척하는 내용의 동영상 수업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 교육 실시	4월 5월 3월~12월
효사상의 실천 교육	1. '예송 논쟁'과 '환국'의 역사적 사건과 효 사상에 관한 수업 전개 (국사) 2. '만득이'소설 속 인물의 긍정적 마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토론 수업(국어)	4월, 10월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생명윤리의식 교육	1. 생명윤리에 관한 동영상 수업 및 토론 수업 전개(과학)	6월, 10월
민주시민의식 교육	1. 4.19와 참여 정신에 관한 수업(국사) 2. '살아 있는 정신, 김수영'에서 참여 정신 이야기하기(국어)	6월 4월
특수반과의 통합교육	1. 자긍심 함양을 위한 현장 실습 위주의 개별화 수업 전개 2. 굿프렌드 도우미를 통한 자발적 배려심 함양	연중

2.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스포츠맨십 함양으로 자율적·실천적 태도 고취

가. 목적

- 1) 1인1특기 운동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건강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갖는다.
- 2)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실천적 스포츠맨십을 함양한다.
- 3) 스포츠맨십을 통한 실천적 준법 생활태도를 갖는다.
- 4)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 운영 방침

- 1) 1인 1특기운동을 적극 육성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 2) 학생들이 흥미와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
- 3) 학교스포츠클럽의 종목별 연습일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
- 4) 학생자치회 주관 반별 대항 교내 리그전을 통해 실천적 규칙준수태도를 갖는다.

다. 세부 추진 내용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1. 인사 잘하기 2. 1학생 1특기운동 활동 권장(학생 맞춤형 운동 전개) 3. 방과 후와 주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스포츠맨십을 통한 자율적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의 강화 (체육특기진학반, 농구반, 배드민턴반, 소프트볼반, 풋살반 운영) 4. 동아리와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방과 후 특기적성과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주말 스포츠 리그와 연계 운영	연중

라. 활동 내용 사진 자료

학생자치회주관 조희 학교장님 특강	명사초청 강연
	
학생회 주관 교복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	장애우 이해를 위한 합동 수업
	
반대향 농구대회	여학생 소프트볼 클럽
	

추진과제 2**학생자치법정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준법 준수 태도 확립**

1.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3주체 협의회 운영
2. 학생 자치 법정 운영을 통한 준법 의식 고양과 자치 질서 준수 태도 확립

1.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3주체 협의회 운영**가. 목 적**

- 1)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학교구성원3주체 간 협의회를 통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율적 준법 생활 의식을 함양하여 책임있는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한다.
- 2) 사랑과 감사의 상호 존중 태도를 실천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풍토를 조성한다.
- 3)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 시민 정신을 함양한다.

나. 운영 방침

- 1) 학교공동체간 협의회를 통한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의 이행과 ‘학교생활 규정’ 개정
- 2)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실천적 인권 교육을 위한 연수 확대 실시
- 3) 인권과 책임의식의 고양을 위한 학급 및 전체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

다. 세부 추진 내용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학급자치규약의 협약과 실천	1. 학급자치회의 학급자치 규약 협약 2. 학교생활규칙 준수와 학급자치규약 준수 실천 선서식 3. 학급자치규약 준수 실천 우수학급 시상 4. 선행 학생 표창	4월 5월 7,9,12월 7월,12월
학생생활규정 개정	1.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3주체 간 협의회 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 3. 학생생활규정안 심의 및 토론-협의회 4. 학교운영위위원회의 심의로 개정	5월 2월 3월 4월 6일
학생생활규정의 실천 교육 전개	1. 학생회 주관 학생생활규정 자율적 준수 캠페인 2. 학생생활평점제 취지의 이해와 실천 3. 학생생활평점제의 교육적 활용 -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자치법정 도입 - 학생 옴부즈맨 제도 실시	4월~5월 4월 5월~8월 7월

2. 학생 자치 법정 운영

가. 목 적

- 1) 법적 권리와 의무의 이해와 사법절차의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고취한다.
- 2) 학생자치법정의 사법절차의 이해를 통해 학생상호간의 합리적 사고력 함양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율적 학교분위기 조성 및 주인의식을 고취한다.

나. 운영 방침

- 1) 학생생활평점제에 의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의 과벌점이 10점 이상 누적되었을 때 학생자치법정을 개정하여 징계 처리한다.
- 2) 단, 학생자치법정은 징계처벌이 목적이 아닌 자성적 반성을 통한 준법의식의 고양이라는 긍정적 교육목적의 근본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 3) 학생자치법정의 사법적 절차를 통한 자성적 반성과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폭력이나 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의 기회를 제공한다.
- 4) 학생자치법정의 사법적 절차의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법적 소양을 배양한다.

다. 세부 추진 내용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학생 자치법정 여건 조성	1.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교 신청 및 지정 2. 학생자치법정단 구성 및 법정단 법원 연수 - 전문성 교육 3. 학생생활평점제의 일부 개정-학생자치법정 시행	3월 5월 5월
학생 자치법정 운영	1. 회부대상 : 과벌점 10점 이상의 학생 2. 영·미법제의 배심원제 재판 방식 운영을 위한 학습 3. 심의내용 : 과벌점 진단 및 학생제도 수준 결정 4.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보완 지도 철저	연중

라. 활동 내용 사진 자료

학부모와 교사 학교규칙 개정 모임	학생생활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자치회 모임
	
학생자치법정 개정을 위한 준비 모임	변호사 초청 학생자치법정단 연수
	
제1회 학생 자치법정 개정	학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
	

추진과제 3**학생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감사와 사랑의 실천 학교문화 확립**

1. 감사와 사랑의 학교 문화 조성으로 실천적 감사 태도 함양
2. 학교구성원 공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
3. 학생자치회 주관 학교 행사 활성화 및 각종 캠페인·봉사활동 활성화

1. 감사와 사랑의 학교 문화 조성하기**가. 목 적**

- 1) 상호 존중의 태도를 실천하는 교육 전개로 인권 친화적 학교 풍토를 조성한다.
- 2) 감사의 인사 예절 교육과 바른말 교육을 통해 상호존중의 교육 문화를 조성한다.

나. 운영 방침

- 1) 감사의 학교 문화 조성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2) 감사의 인사 예절 교육을 강화한다.
- 3) 바른말 사용하기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언어폭력을 예방한다.
- 4) 학부모 연수를 통해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다. 세부 내용 추진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감사의 실천 교육	1. 감사의 인사예절 지도 - 점심, 저녁 등의 급식 시 감사의 인사하기 지도	연중
	- 교과 수업 시 바른 수업 태도와 감사의 인사하기 지도	연중
	2. 바른 말 사용하기 수업머리 교육 - 교과 수업 시 바른 수업 태도와 바른 말 사용 교육	3월
	3. 바른 말 사용하기 밥상머리 교육 - 학부모 연수 시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 연수	6월
	- 가정과 학교에서 언어폭력 추방 운동 전개	9월
학생자치회 주도의 자율적 운동 전개	1. 사랑과 감사의 상호 존중 하는 마음 갖기 결단식	4월
	2. 학생 자치회주도의 사랑과 감사의 학교 문화 조성	
	- 학교 사랑 2행시 짓기 대회 개최 및 심사	5월
	- 사랑과 감사의 편지쓰기 대회 개최 및 심사	
	- 사랑과 감사의 UCC대회 개최 및 심사	

2. 학교구성원 공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

가. 목 적

- 1) 소통과 배려의 실천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든다.
- 2) 사랑과 배려의 공감프로그램 운영으로 감동의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 3) 2012학년도 학교교육활동의 학생참여 부분은 모두 학생회 주관으로 실행하여 학생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 4) 발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도 동참하여 함께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
- 5) 동아리 발표와 함께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단결심과 애교심을 함양한다.

나. 운영 방침

- 1)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폭력, 컴퓨터, 약물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 2) 아버지 학교 상담을 강화하여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든다.
- 3)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캠프를 운영하여 공동체로서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4) 동아리 및 계발활동 부서에서 작품 전시나 공연을 하도록 축제 참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5) 철저한 계획에 의해 연습하여 책임감 있는 활동이 되도록 지도한다.
- 6) 모든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홍보하고 지도한다.

다. 세부 내용 추진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예방 교육의 강화	1. 폭력 예방(언어폭력, 성폭력, 집단 폭력) 교육 강화 - 학생, 학부모 교육 강화 2.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분노 조절 교육 강화 - 컴퓨터 중독, 약물 중독, 폭식증 예방 교육 3. 또래 상담활동을 통한 예방교육 강화	연중 3,6,9월 3월 4월 6일 연중
아버지 참여교육 강화	1.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아버지 모임 구성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부모 상담 정례화 2. 아버지와 함께 하는 자전거 여행	9월 10월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학교 공감 프로그램	1. 학교 공감 캠프 운영 - 교사, 멘토-멘티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산행 대회 2. 학생대상 지역사회 인사 초청 강연회 - 각종 모금활동 (불우 이웃 및 독거노인 방문 행사, 노인정 방문 행사) 3. 지역사회를 활용한 과학 탐구학습	7월 7월 11월 10월 수시 연중
구암가족축제	1. 동아리 활동 발표회 및 체육대회 2.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구암가족 축제	10월 25일

3. 학생 자치회 주도의 각종 캠페인 및 봉사 활동 활성화

가. 목 적

- 1) 학생자치회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섬기는 리더십'을 배양한다.
- 2)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 3) 실천 중심의 활동 전개로 실천적 민주시민의식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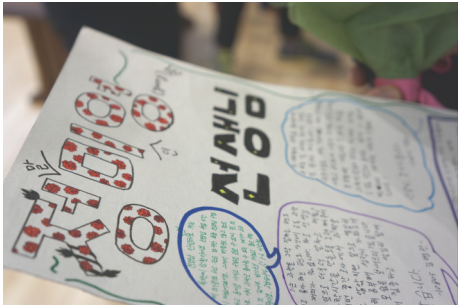
나. 운영 방침

- 1)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 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회 주도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 2) 학급자치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학급규약 및 학생생활규정의 자율적 준수태도와 주인의식을 확고히 한다.
- 3) 정기시험 후 반별 구기대회를 통해 협동심을 고취하고 자율적 준법의식을 확립한다.
- 4) 어려운 이웃과 저개발국가의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사랑과 배려의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다. 세부 추진 내용

활동주제	활동내용 및 운영방법	실시
자율과 책임의식 확립을 위한 각종 캠페인	1. 등굣길 인사 나누기 운동 2. 시간 엄수 및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3. 학급자치협약 및 학생생활규정 자율적 준수를 위한 학생 회장단의 학내 방송 캠페인 4. 방학 전, 개학 후 학교내외 대청소 활동 실시 5.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 행사 캠페인 6. 저개발국 아동 돕기 및 어려운 이웃돕기 캠페인	연중
자율과 책임, 사랑과 배려의 실천적 의식 함양 활동	1. 저개발국 아동 돕기 - 안 신는 등산화 모아 네팔 보내기 모금운동 및 아동신발 보내기 모금과 학용품 모금 운동 2. 겨울철 대비 독거노인 김장봉사 활동(여학생) 및 연탄 배달 나눔 봉사 활동(남학생) 3. 주변 등산로 및 산책공원 정화 활동 4. 한강 정화 활동 참여(스킨스쿠버 활동) 5. 정기 고사 후 반별 구기대회 개최 및 모금운동	연중 11월 6,9,11월 8월 7,12월

라. 실천활동 사진자료

사랑과 감사의 마음 전하기	사랑과 감사의 편지쓰기 및 UCC대회
	
방송반 아침방송 캠페인	컴퓨터 및 약물 중독 예방 교육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 학교장님 면담	전문강사 초청 성폭력예방교육
	

IV. 평가 및 제언

1.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나쁜 습관의 개선의 어려움

- 가. 나태하고 태만함에 익숙해져 있는 나쁜 습관을 고쳐서 예의 있고 올바른 의식을 가진 학생으로 탈바꿈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 나. 자치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인성 교육과 규칙과 질서의 준수에 대한 자율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의 인상이 밝아지고, 불필요한 불평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사를 잘 하는 학생 상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변화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의 필요성

- 가. 의식의 변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는 단기간의 노력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 가지의 학습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반성과 자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
- 나.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농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풋살, 피구 등의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전후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몸소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직접적인 체험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규칙준수와 질서의식이 내면화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2분과 사례 2

학생이 주인공 되는 짱짱 학교문화

■ 경기 오산원일중학교



학생이 주인공 되는 짱짱 학교문화

경기 오산원일중학교

I. 들어가는 말

최근에 들어서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대두된 현상과 문제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매스컴에서 충격적인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도기적인 진통이라고 생각되며, 10년 전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야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는데,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과 문제를 어떻게 잠재우고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국가와 학교는 앞으로 글로벌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으로 교육과정과 학교문화를 학생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대화와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을 합치기를 바란다.

교육과정상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있는 자치활동인 학급회와 학생회를 활성화하여 학생자치문화를 학생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는 도와주었으면 한다. 단시일 내에 되는 일이 아니기에 교사, 학부모가 지원 방안을 찾아 주는 동시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취미, 개성을 살리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학생들도 학교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 한 명 한명을 글로벌 인재로 바라보고, 자기 나름대로 빛깔과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해주어야 한다.

본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 규칙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준법의식, 스스로 학교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게 하고자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는 다양한 자치활동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학생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긍정적 자존감을 형성하고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꿈과 비전

을 키우는 소통과 감동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려 하였다. 또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남을 배려하는 봉사와 섬김의 학교문화 리더십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Ⅱ. 우수 사례

1. 학생이 만들어 가는 학교규칙·학급내규

가. 운영 목적

- 학생자치의 기본이며 바탕인 학급단위 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회 중심의 학생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적인 학생자치문화 활성화
- 학생의 학교생활 및 태도의 문제점을 대화 및 상담·조언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함
- 소통과 존중, 배려와 나눔을 통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풍토 조성

나. 운영 과정

-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 내규 확정(2012.3.)
- 학교폭력예방 학급 내규 확정(2012.5.)
- 두발 및 용의복장에 관한 학급 내규 확정(2012.8.)
- 학교규칙 재·개정 과정 주요 내용

날짜	추진사항	비고
2012.6.22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원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교직원회의
2012.6.27	학교규칙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학부모, 학생, 교원 참여
2012.6.28	개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찬반 여론 수렴	학급회, 총학생회, 교직원 회의
2012.7. 2	학교규칙 개정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2012.7. 3	학교규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다. 운영 내용

-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인성교육 중심으로 학생지도를 실시
- 학생회 중심의 자치법정운영으로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을 지도
- 교내방송국을 활용한 아침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학교규칙 지키기 안내방송을 실시
- 학급회,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학생 생활·인권에 대해 홍보

			
학생자치회	학교규칙 준수 서약서	학생회장 교내방송	학교규칙 준수 캠페인

학급 내규 2학년 10반 ◆용의복장이 단정하지 않을 경우: 선생님이 정해진 구역 청소하기. ◆교실안의 비품을 파손한 경우: 과실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함. ◆친구와 싸움을 한 경우: 종례시간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손을 잡고 노래함. ◆핸드폰 미제출: 일주일 동안 압수함. ◆교실에서 음식과자/궂먹은 경우: 선생님이 정해진 구역 청소하기. ◆지각한 경우(08:10까지 입실): 방과후에 남아서 공부한 흔적이 있는 연습장 1장(궂지를 작성 후 제출함) ◆사물함, 책걸상벽에 낙서한 경우: 낙서한 사람이 깨끗이 지우고 동시에 벌칙으로 남아서 교실 벽 청소를 깨끗이 실시함. ◆주변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한 번은 경고차원이나 다음에 다시 지적을 받으면 다음 주에 다시 청소를 해야 함. ◆수업시간에 지적 받은 경우: 방과후에 남아서 공부한 흔적이 있는 연습장(궂지를 지적받은 횟수만큼 작성 후 제출함) ◆청소를 소홀히 한 경우: 한 번은 경고차원이나 다음에 다시 지적을 받으면 다음 달에 다시 청소를 해야 함. ◆벌명(듣기싫은벌명)과 욕설, 괴롭힘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LOVE LETTER를 쓰고 담임선생님과 개별상담 후 반성문을 일주일 동안 제출함.	 학급 자치활동 게시판 
학급 내규	학급 자치활동 장면

라. 운영 효과

- 학교규칙 개정과 자치법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학생생활·인권교육을 실현
- 학생과 교사간의 존중과 배려, 나눔이 함께하는 학교문화가 조성
-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 제고
-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학생생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
-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소속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됨
- 학생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알고, 바르게 생각·판단하는 행동의 주체로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

2.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와 연계한 ‘학생 자치법정’ 운영

가. 운영 목적

- 학생들이 스스로 학칙을 준수하여 민주적인 시민생활을 내면화할 수 있다.
-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는 생활태도를 습관화할 수 있다.

나. 운영 방침

- 기존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 처벌위주의 징계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있어서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관련 부서와 교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학생 생활 지도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긍정적인 처벌의 종류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고 배심원에게 일정 정도의 사안별 긍정적 처벌 종류를 공지해야 한다.

다. 세부 운영 계획

○ 시기별 주요 추진 일정

시기	주요 추진 내용	비고
2012.03.02-04.30 (준비기)	- 학생자치법정 자체 운영 계획 수립 - 교사와 학생의 의견 수렴(설문조사) - 학생자치법정 운영팀 구성 및 협의회 활동 - 각종 정보 수집 및 연수 활동	
2012.05.01-11.30 (실행기)	- 학생자치법정 참가자 선정 - 학생자치법정 교실 선정 및 시연회 준비 - 학생자치법정 시연회 활동(총 2회) - 학생자치법정 운영팀 활동 및 각종 협의회 - 각종 정보 수집 및 연수 활동	
2012.12.01-12.31 (평가기)	- 사후 평가회의 및 개선 방안 마련 - 향후 학생자치법정 운영 계획 수립 - 학생자치법정 결과 작성 및 학생 생활 규정 개정 협의회 정식 보고	

○ 단계별 주요 실천 계획

단계	주요 실천 내용	비고
재판 전 단계	-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과 기준 마련 - 벌점 부과 및 점수 누적 집계 -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 작성 - 통보(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 서기, 배심원, 법정경위) - 재판 공시	
재판 단계	- 학생자치법정 형태 결정 - 재판 횟수 및 일시 결정 - 학생자치법정 준비(법정 배치도) -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 및 권한 : 판사, 배심원, 검사, 피고, 변호인, 서기, 법정경위, 방청객 - 학생자치법정 재판 절차 : 출석 확인-교육-피고인 선서-검사 심문-변호사 심문-검사 구형-변호사 최종 변론-피고 최후 변론-배심원 회의 및 판결-판결 선고	
재판 후 단계	- 학생자치법정 판결 이행시 관리/감독(학생인권부) - 학생자치법정 판결 불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조치 - 사후 평가회의 - 역할 소감문 작성 및 발표	

라. 추진 내용

○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요건 및 선정

1) 요건

- 학생자치법정 지정일로부터 전월 전체 별점이 21점 이상인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사항 별점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
- 누적된 특정 별점 항목에 대해 10회 이상 지적을 받은 학생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생(선도위원회 회부사항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
- 선도위원회 회부사항 중 경미한 내용으로서 학생 선도위원회 자체 심의과정을 통해 오산원일 학생자치법정 회부자로 판단되는 학생

2) 선정 과정

- 학생회에서 1차적으로 선정 대상 학생 파악하여 학생자치부에 통보
- 학생인권부 자체적으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 해당 학생에게 소명 기회 제공 및 의견 반영
- 법정 회부 대상자 최종 선정 및 담임교사(학부모)에게 통보

○ 학생자치법정 운영 횟수 및 일시

1) 운영 횟수

- 학교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법정을 운영한다.
- 학기별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총 4회 운영한다.

2) 운영 일시

- 세부 운영 일시(총 4회)

3) 학생자치법정 사전 교육 및 견학

			
법교육	국회의사당 견학	대법원 견학	법조인 컨설팅

4) 학생자치법정 활동사진

			
학생자치법정 개회	판사들의 모습	변호사들의 모습	배심원 평결

○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의 조직도 및 역할 내용과 선정

1)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조직도

- 학생자치법정 실무 지원팀 : 학생회 임원
- 학생자치법정 실무 운영팀 :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 법정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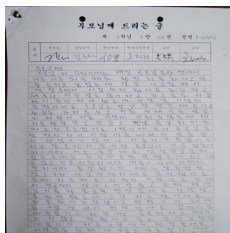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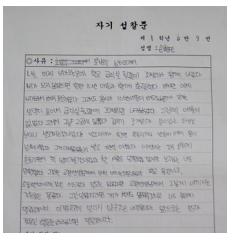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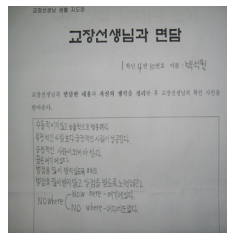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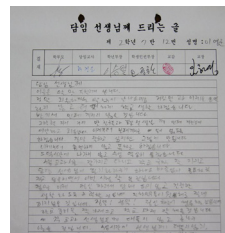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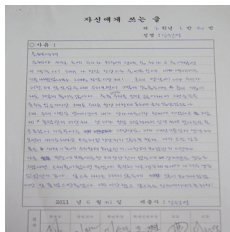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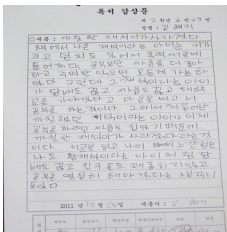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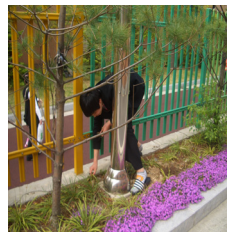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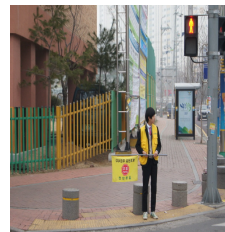
2) 역할 선정 과정

- 학생회 역할 선정 : 전체 학생회원을 법정 실무 지원팀, 검사팀, 변호사팀, 서기팀, 배심원 팀으로 구분하고 내부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역할 배분
- 판사 : 학생회 임원중에서 우수한 법적 소양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 중 선발된 자
- 배심원 : 학생회 대의원회(학급 반장 또는 부반장) 중에서 4명 이내 선정, 일반 학생 중에서 4명 이내 선정, 이전 학생자치법정 회부 학생

○ 긍정적 처벌의 종류

- 1) 긍정적 처벌 :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처치 및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을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처벌

2) 긍정적 처벌의 종류

부모님께 드리는 글, 자기 성찰문, 교장선생님과 면담, 담임선생님께 쓰는 글, 자신에게 쓰는 글, 독서 감상문, 교통봉사활동, 명상 교육, 이바다 캠페인, 포스터 그리기, 상담, 배심원 참여, 나의 다짐쓰기, 에세이 쓰기, 교내 봉사, 역할극 참여, 사회봉사			
긍정적 처벌의 종류			
			
부모님께 드리는 글	자기 성찰문	교장선생님과 면담	담임선생님께 쓰는 글
			
자신에게 쓰는 글	독서 감상문	교내 환경미화활동	교통봉사활동
			
명상 교육	'이바다' 캠페인 활동	포스터 그리기	전문상담교사 상담

마. 운영 효과

- 학교 내 징계 결정 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의 재 비행 방지에 효과가 있다.
-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자치권을 확대시켜 학교 내 갈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학생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로 재판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법 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고 준법정신도 향상되었다.

3. 서로 칭찬해요 ‘칭찬 포트폴리오’

가. 운영 목적

- 학급 내, 교내에서 칭찬을 통해 올바른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 칭찬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 욕설과 저속어, 비방보다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아 성장 동기를 부여한다.

나. 운영 방침

- 칭찬 분위기 확산을 통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생활지도의 방향을 처벌보다는 칭찬을 통한 사전 예방 교육으로 전환해 간다.
- 다른 사람의 칭찬 사례를 통해 자신의 성장 동기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확산하여 바람직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운영 실행

- 학급에 칭찬 포트폴리오(칭찬 노트)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발적으로 친구를 칭찬한다.
- 학교 홈페이지 “칭찬 합시다” 코너를 홍보하여 전교생 및 교직원, 지역사회,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학교 신문 발행 시 칭찬 사례를 소개한다.
- 결과물을 심사하여 연 1회 학교장 시상을 실시한다.(각 학년 1, 2, 3등)

			
칭찬 포트폴리오 작성	칭찬 포트폴리오	칭찬 포트폴리오	칭찬 포트폴리오

라. 운영 효과

- 다른 사람의 칭찬 사례를 통해 자신의 성장 동기가 자극 되었다.
- 욕설과 저속어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올바른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 학생 생활지도의 방향을 처벌보다는 칭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확산하여 바람직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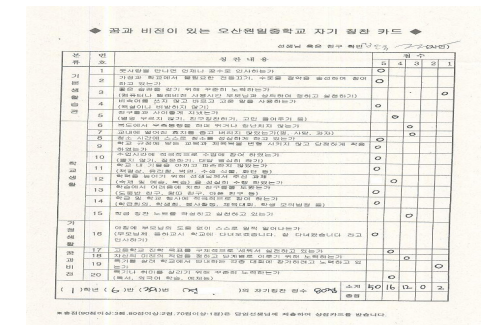
4. 나를 사랑해요 ‘자기 칭찬 카드’

가. 운영 목적

-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한다.
- 준법정신과 봉사정신 함양과 질서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한다.
-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킨다.

나. 운영 실행

- 기존 그린마일리지(상·별점제)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한다.
- 매월 1회 실시 : 학급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실시한다.
- 점수 운영 : 90점 이상 3점, 80점 이상 2점, 70점 이상 1점을 담임교사가 부과한다.
- 처리 절차 : 학급담임은 상점자 명단 및 자기칭찬 카드를 학년부장에게 제출 하고 학년부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학생인권부로 제출한다.

자기 칭찬 카드 결과물		자기 칭찬 카드	
			

다. 운영 효과

-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이 함양되었다.
- 준법정신과 봉사정신이 함양 되고 질서의식이 함양되었다.
- 자신을 통제하고 잘못된 생활을 반성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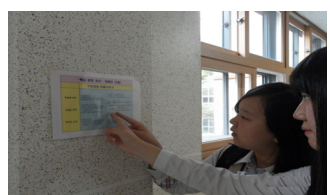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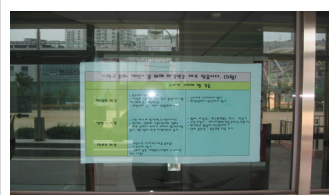
5. “이바다” (이것만은 바꿉시다!) 캠페인

가. 운영 목적

- 학생자치회가 주도하여 학생 생활문화를 개선한다.
-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킨다.

나. 운영 실행

- 학생자치회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생활 문화를 수시로 접수한다.
-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매월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각 반 및 중앙현관, 복도 등에 출력하여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며 캠페인을 전개한다.
- 월별 반성 및 차월 계획을 수립한다.
- 월별 캠페인 활동에 위반되어 학생자치봉사단에 의해 적발되는 학생들은 복도에서 캠페인 활동을 주도한다.

		
학교문화선도학교 홈페이지	학생회의를 통한 “이바다” 결정	교실 “이바다”
		
복도 “이바다”	중앙현관 “이바다”	학생자치회 “이바다” 지도

다. 운영 효과

- 학교문화 선도학교 관련 홈페이지 운영
- 교내에서의 기본질서 지키기와 준법정신이 함양되었다
-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생활문화가 개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반성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6. '또래상담반' 동아리 운영을 통한 친구사랑

가. 운영 목적

- 학생 중심, 학생 주도의 동아리로 운영한다.
-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함께 성장한다.
- 나눔과 배려, 존중과 소통의 학생 중심이며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구현한다.
- 학생들의 재능 계발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동아리 문화를 창출한다.

나. 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

- 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2012.02.24)
- 동아리 홍보 및 면접 실시(2012.03.05~03.09)
- 또래 상담반 소양교육 실시(2012.04.13~05.25)
- 학년별 동아리 임원 및 1인 1역 구성(2012.04.13)

다. 운영 실행

- 각 학년, 반 1명씩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34명 선발)
- 또래상담가로서의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한다.(2012. 04.13~06.08. 6회기)
- 친구사랑의 주간 행사로 "Free Hug Day" 행사를 개최하였다.(2012. 07.09)
- 자신 뿐 만이 아니라 친구들의 문제 해결과 내적 및 외적 성장을 돕는다.

			
또래상담 소양교육(6회)	지역 사회 신문 기사문	Free Hug day 행사	친구사랑 주간 행사

라. 운영 효과

- 교내 학생들이 또래상담반의 활동과 역할을 알게 되었다.
- 소양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또래상담에 관한 관심과 자신감이 커졌다.
- 동아리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학교폭력예방 및 캠페인 활동

가. 운영 목적

- 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학교 폭력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나. 운영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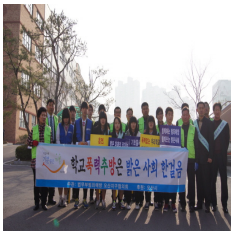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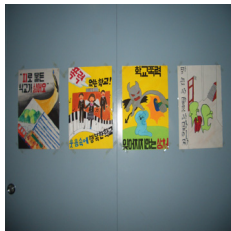
- 학교단위로 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추진 내용

- 학교폭력추방의 날 행사
- 오산시 범죄 예방위원회 연합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활동

146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_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 학기별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학교폭력예방 헌법교실
- 학교폭력예방 강의
- 생명존중 자살 예방 교육
- 언어문화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추방의 날 행사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부모, 법무부범죄예방오산지구협의회 회원들과의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교내 포스터 대회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교내 표어 대회
			
학교폭력예방 강연	학교폭력예방 법교육	언어문화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	생명존중 자살 예방 교육

라. 운영 효과

- 학생 폭력 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었다.
- 기본생활습관(인사예절, 용의복장, 질서 및 준법정신 등)이 형성되었다.
-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등의 적극 참여로 상호 협조하여 요선도 학생에 대한 지도를 적극 추진하여 학교폭력의 요소를 차단할 수 있었다.

8.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찾아가는 봉사활동’

가. 운영 목적

- 봉사활동 과정에서 인격성숙을 도모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유용한 생활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 학부모와 학생이 하나 되어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식을 기른다.

나. 운영 실행

- 학교 근처에 있는 맑음 터 공원에 가서 휴지를 줍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 부산동, 청학동, 지곶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1가구 당 300장의 ‘연탄’을 배달한다.
- 수녀원에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한다.
- 학부모 봉사단과 학생자치회가 하나 되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사랑의 연탄 나눔	수녀원 봉사활동	학교 주변 환경 미화	학부모와 함께하는 봉사

다. 운영 효과

-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 우리 주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Ⅲ. 맺음말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짧은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학교 환경에 맞는 문제와 현상을 이해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사 중심의 학교 문화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식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운영하여야 “즐겁고 행복하며 비전 있는 학교 문화”가 형성된다고 본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영상을 접하며, 문화적 감수성이 기존 교사 문화보다 앞선 세대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안정된 교사 중심의 학교 문화에 익숙해 있으나, 교육 공동체는 열린 마음으로, 같이 공유하며, 협업자로서 학생이 진정한 학교의 주인공으로 학교를 이끌 수 있도록 살아서 숨 쉬며 생동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상벌위주의 인성을 실천하는 방법보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찾아낼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켜 갔으면 한다.

본교에서 실시한 학생자치법정, 칭찬포트폴리오, 자기칭찬카드 등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여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를 형성하였다. 학급내규 제정과 학급자치회의 학급특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은 꿈과 비전을 키우는 소통과 감동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였고, 또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및 꾸러기 학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미니 축구반’ 운영 등을 통하여 봉사와 섬김의 학교문화 리더십을 형성시켰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2분과 패널토론 1

학생자치 활동을 ‘인성교육’에 연계하는 논의에 대한 토론

■ 강 태 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학생자치 활동을 ‘인성교육’에 연계하는 논의에 대한 토론

강 태 중(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오늘 2분과에서 발표된 논문과 사례들은 학생 자치활동이 이른바 인성교육(‘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대안으로써 인성교육)에 유효한 방안임을 전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지 제안하거나(김성기 교수의 논문), 학교에서 어떤 실천 전략(방안)들이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경험을 보고하고(원일 중학교와 구암 고등학교의 사례) 있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이 발표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서고자 합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시각이 아닐지 모르지만, 논문이나 실천 사례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인성교육에 학생자치 활동을 연계하는 생각)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발표 내용 자체에서도 적지 않은 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프로그램 전반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생각, 즉 ‘학교폭력’ 문제를 소위 인성교육으로 해결해 가려는 생각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폭력 행위가 학생 개인의 비틀린 인성에서 비롯된다는 상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바로 잡으면 폭력 행위가 소거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른 인성의 소유자가 폭력적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그 만큼 이 상식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란 문제 사태에서 인성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양한 인성의 소유자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 사례들, 그리고 폭력에 가담하고도 자신이 폭력을 자행했다는 자각을 가지지 못하는 사례들을 감안해보면, 개인 수준의 인성이 폭력 행위에 독자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성과 학생들이 모인 ‘사회’의 조건이 만나 모종의 결합을 이룰 때 폭력이 발생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인’ 촉발이나 유인이 폭력 현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교육’을 강조한다면, 학교 폭력 문제가 마치 인성이 바르지 못한 소수 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문제는 모든 학생에게 그 가담의 위험이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나 성장의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사회화 일반의 위험인 것입니다.

다. 이 점에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하여 인성교육의 방안으로 접근하려는 최근의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의식함이 없이, 오늘 발표된 논문이나 실천 사례들은 최근 정부 정책이 받아들이고 있는 통념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통념 자체를 성찰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이 자리가 더 의미 있었으리라 여깁니다.

구체적으로 김성기 교수의 논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학생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전폭적으로 자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학교공동체를 이루는 방안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연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든 면의 자율을 전폭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일체 언급이 없으며, 학교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사회’(조직)를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을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낭만적이게) 학생들에게 자율의 이름으로 모든 ‘자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김성기 교수의 논문이 더 근본적으로 문제인 점은 학생자치의 근원적인 의미를 교육자치에서 찾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학생자치의 사안을 학교운영의 측면에 경도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예컨대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사태를 상상해 보아도) 이런 ‘행정적인’ 시각의 문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대한 문제는 학생자치의 교육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학생자치가 학교의 과정(課程) 안으로 들어온 것은, 적어도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의 견지에서서가 아니라 시민교육의 견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자치의 본래 취지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온전히 간과하고 학생 자치를 마치 학생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장치 정도로 논의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은 또한 학생자치의 현황을 기술하고 활성화 방안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쉬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현황이 질문지 조사를 통해 확인 된 것이라고 하지

만, 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아 그 타당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제안하는 활성화 방안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동어반복’인 주장으로 채워져 있어서 실제적인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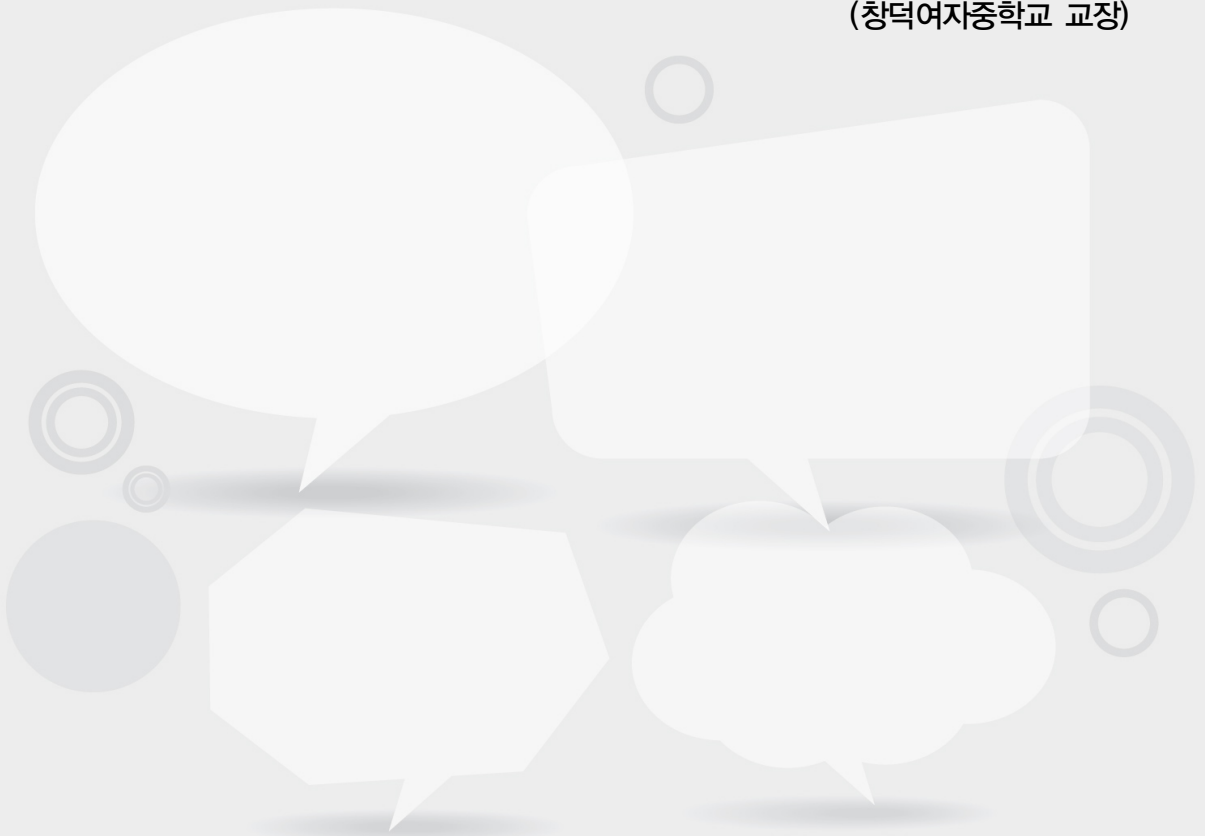
오산 원일 중학교와 서울 구암 고등학교의 사례는 학교에서 학생자치를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를 내려는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들은 서로 비슷한데, ‘형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행사나 캠페인 등의 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 그것들의 효력은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 방안들의 의미는 사실상 특정한 목적(‘학교 문화 조성’)을 향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시(顯示)에 그친다고 여깁니다. 보고에서는 그 방안들이 작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구암 고등학교의 경우는 주장에 다소 유보적이기는 합니다.), 그 방안 시행의 기간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과연 그런 주장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좀 더 진솔하고 현실적인 실천과 그 사례 나눔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2분과 패널토론 2

학교규칙 준수 · 실천 운동 토론문

■ 김 성 수
(창덕여자중학교 교장)



학교규칙 준수·실천 운동 토론문

김성수 (창덕여자중학교 교장)

1. 학교 자치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성공적으로 인식되어 벤치마킹하기위해 방문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본 시설부터 교사들의 학력, 교육과정도 모든 여건이 상당히 좋으나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마음껏 의견을 피력하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생들의 끼와 생각을 마음껏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뒤흔치는 학생들은 학교공동체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자치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학생들이 행복해 하고 더 나은 삶의 질과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자치활동은 학교 자치의 한 부분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현재 우리 여건상 대학입시라고 하는 당면과제가 있어 결코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아무리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학생회가 구성되어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는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데 학생자치라고 하는 모임에서 많은 경험도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일을 꾸려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학생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학업성적과 품행이 나은 학생이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이 될 경우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학생들의 장난에 의해 뽑혀진 경우 자치활동이 미흡하며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대학입시라고 하는 턱 밑의 과제를 뒤로 하고 학교의 축제나 학생회의 운영, 기타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여 전국 학생회 회장까지 역임했건만 당장 현실은 대학 불합격으로 결과가 본인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생이 학교 규칙을 만들고 학급 내규를 만드는 것도 민주시민의 바탕이 되는 좋은 일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사고가 유연하거나 많은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 일시적인 충동이나 인기몰이로 변질될 우려도 다분히 있어 자치활동의 의미가 무색해 질 수 있다.

오늘 발표하는 두 학교는 참 모범적이며 좋은 학교문화를 이루어 나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기존학교에서 전혀 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많은 학교들이 시도하고는 있으나 입시경쟁 속에서 방과 후 학습과 자율학습 및 사교육 시장에 까지 내몰아 가는 형편에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현실에 치중하다보면 자치활동운영 내실화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급자도 충분한 자치활동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고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 자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끌어가기에 위험요소가 참 많다. 한창 좋은 기억력을 가진 시기에 토론과 논쟁의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때까지 주입식 교육의 폐단도 많으나 장점도 참 많기에 두가지를 절충하여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지만 교육으로 이렇게 나라가 발전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자치법정 등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원고와 피고도 되어 보고, 판사나 변호사로서 역할극을 해보며, 배심원으로서의 판결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역할극을 보면서 참 많은 느낌을 받는 학생들이기에 더욱 우리가 자치법정을 통해 서로의 주장과 반론 등을 보면서 토론 문화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건만 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참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간접경험으로라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학교에서 폭 넓은 사고를 위해 많은 독서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학급회의 시간의 부족

현재 자치활동을 하기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학급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당 한 시간씩 하던 예전의 HR 시간이 이제는 한 학기에 몇 번 밖에 되지 않으니 활발한 토론이나 의논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단순한 회의 시간도 중요하지

만 학생들이끼리의 좋은 사교의 장이 되는 것도 참 필요하다. 발표를 활발히 하는 몇 명만의 회의가 아닌 전체가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는 기술도 참 소중하다. 좋은 회의가 아닌 설전이 된다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회의도 닮아 가지 않도록 옆에서 이끌어 가야하나 현실에서는 교사도 시간도 여러 가지 여건도 결코 쉽지가 않다.

3.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하려면

두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발제하신 교수님의 의견대로 학생회실과 학생회의 재정적 지원, 권한 부여, 학교장과의 정기적인 만남, 학생들의 각종회의 참석을 통한 학교 공동체에 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학생회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서 학생자치활동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학교평화의 날 운영
친구사랑주간 등을 학생회가 주관하여 칭찬하기,
마니또 게임 등을 하며
임원 워크숍을 통한 이해교육
학급별 야영이나 수련회 등을 통한 자치활동
학생 동아리 운영
우리반 약속 정하기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반 만들기 등을 들 수도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쉽지 않지만, 최근 학교 현장에서 자치활동 활성화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 의식도 성숙되어 가고 있기에 머지않아 잘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2분과 패널토론 3

학교규칙, 바른 인성 실천의 협약이어야

■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팀장)



학교규칙, 바른 인성 실천의 협약이어야

이재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팀장)

1. 들어가는 말

- 교육은 ‘가치(價値)’ 지향성을 필연적 개념으로 내포
 - 주관적 ‘가치’(Value) vs 사회적 ‘가치’(Consensus)
 - 학교 : Value vs Consensus 충돌 연속의 장(場)
 - 교사 : 개입(지도)의 한계, 딜레마(Dilemma)의 연속
 - 인류 보편가치 ‘인권’ → 그 자유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가치’ vs ‘자치(自治, autonomy)’
 - ‘가치’(Value)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자치’의 영역에서서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Consensus)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권리무능력자(형사 만14세, 민사 만19세)에 대한 ‘자치’영역에는 스스로의 통제외 사회적 가치가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음.
 - 즉,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능력이 있는 성인과 동일시 될 수 없으나, 건전한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자치’를 체득토록 지도하는 것은 학교의 책무
 - 때문에, 학교자치, 특히 학생자치를 교육자치의 ‘완성’의 의미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논리적 비약
 - 재정, 인사 등의 자율성 확보의 ‘자치’와 학생의 자기 결정 능력 배양과는 본질적 차이 존재

2. 본 론

- 학생인권조례와 학교규칙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반영, 학교규칙 개정 강행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 배포(1.27)
- 결사의 자유부터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나친 자구해석 경계
- ‘인권’은 천부적(天賦的), 불가침적 권리로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을 학생에게도 마땅히 보장해야함. 문제는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규범적 원리를 넘어,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등 성적지향, 사상 및 집회의 자유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이념과 윤리 문제를 조례로 강제한 점
- 헌법재판소(95헌바29, 97헌마130)
 - 미성년자인 학생 개인의 인격형성을 위한 본질적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동시에 강조
- 前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어린이에게 성인 옷을 입혀 놓은 격”
- 책임 없는 과도한 권리 부여로 되레 타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침해와 교권침해 양산의 주원인 → 학생 vs 학생, 학생 vs 교원 ‘권리 충돌 및 침해’ 양상

〈2011년 교권침해 국감자료〉

국회의원	교권침해 보도자료 내용
주광덕 의원 (한나라당)	○ 최근 5년 : 1,214건 ■ 2011년 1학기 : 1,795건
김춘진 의원 (민주당)	○ 2010년 폭력·협박 교권침해 156건 ■ 2008년 대비 2010년 : 3배 증가 (서울 64건, 경기 26건 순으로 56% 차지)
이상민 의원 (자유선진당)	○ 지난 5년 : 1,065건 ■ 인권조례(2010년) 이후 523건, 지난 5년간 발생의 절반

※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연합뉴스 2011. 11.17) : ‘학생의 교사 폭행은 49건으로 교사의 학생 체벌 35건 보다 14건이 더 많아’

- 무조건적인 권리의 향유에 앞서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는 자유는 제한되며, 공동체간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올바르게 향유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와 사회의 몫 → 학교규칙의 중요성 부각

□ 단위학교 특성 맞는 학교규칙 : 자율성 확대 방향 공감

○ 단위학교의 학교규칙 재량권 확대

- 초·중등교육법 개정(2012.3.21)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u>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u>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u>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u>

○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2.4.20)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9조④ ----- ----- ----- <u>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 교육공동체의 책임의식 강화

- 학교규칙은 교원, 학생, 학부모 어느 일방이 아니라 교육구성원 모두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구성원의 학교규칙 준수 의식 강화 및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 수용 가능성 제고

□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 콜럼비아 하이츠 교육구⁵⁾

Columbia Heights School Board Policy(199.2.24제정, 2006년 2월 27일 개정)

○ 체벌(Corporal Punishment)

- 원칙 : 교육구의 피고용(교원 등)인 누구도 용납되지 않은 행동의 교정을 위해 체벌을 할 수 없음.
- 예외 : 다만,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위협(harm)과 죽음(death to another)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사와 교장은 합당한 유형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할 수 있음.

5) 공황과 대규모 쇼핑몰 등이 소재해 있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거주하고 있음. 해당지역 10년 유학, 거주한 분으로부터 지난 4월 받은 자료로 대부분의 교육구가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체벌과 소지품 검사에 한해 요약 제시함.

- 학생 사물함, 책상, 소지품 검사⁶⁾
 - 사물함과 그 내용물, 개인소지품
법률과 학교규칙(school rules)을 위반할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 학교(school authorities)는 학생의 동의와 고지 없이 조사(inspection)할 수 있음.
 - 책상 : 교직원(school officials)은 동의와 고지 없이 조사할 수 있음.
- 콜럼비아 하이츠 고등학교(Columbia Heights High School) 규칙
 - 금지품목 : 담배, 마약, 알콜 등 법률과 지역 교육구에서 금지한 품목과 타인에게 신체적 위협 또는 자해가 가능한 무기의 일체 반입금지 및 무관용 원칙
 - 징계조치(disciplinary action)
 - 교사, 상담사, 학교장 면담 / 지역 봉사 / 특전 축소 / 공동 또는 특별 교육과정 활동 중지 / 부모 상담 / 교육프로그램 조정 / 학급추방 / 정학 / 외부기관 의뢰 / 출교 / 경찰 의뢰 / 법정 진정 등
 - 학생 복장
 - 어깨를 반드시 덮는 소매가 있는 옷을 입어야 함. 속옷이 보여서는 안됨.
 - 셔츠와 스커트의 길이는 반드시 허벅지를 반 이상 가려야함.
 - 정규시간에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을 금지함 등 복장과 관련한 금기사항 10가지 열거
 - 특히, 약자 괴롭힘(bullying)과 못살게 굴기(hazing), 폭력(violence)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항목을 두어 그 목적과 정책일반, 정의, 회복절차, 학교징계 조치, 훈련과 교육 등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6) 금지품(contraband) : 무기, 마약, 알콜 등 법률과 교육구 정책에 의해 금지된 품목과 대출 만료기간이 지난 책 등 교육구의 재산과 훔친 물건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 교직원이 판단했을 때 법률, 교육구의 정책과 규칙을 명백히 위반할만한 근거(교직원의 관찰, 학생, 학부모 등의 제보, 학생의 의심스런 행동, 학생의 나이와 과거 경력 기록 등)

3. 맺는 말

-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담긴 학교규칙
 -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 학교규칙은 학교구성원이 약속한 권리장전 또는 현장으로 사회의 합의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함
 - 다수의 이익과 공공을 위해 때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성숙된 자질을 함양 기회 제공 필요

- 법령과 조례의 충돌 혼란 최소화
 - 학교장의 학교규칙 제·개정 등 자율 확대(초·중등교육법 개정)와 학생인권조례 반영 학교규칙 제정 강요 속 학교현장 혼란 경험
 -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학교현장 혼란 불가피

-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실천
 -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규칙 준수 문화 확산 → 민주주의 시민교육 강화
 - 스스로 만든 학교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한 '학교자치법정', '어린이 법제관' 제도 등 학생들의 자치역량 제고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지원 강화
 - 학생자치활동 규정 등의 제정을 통한 학생자치조직의 공식화
 - 학생 연구 활동, 문화·예술·취미 활동, 봉사활동 등 자치활동 지원
 - 최근의 학교폭력 예방을 학생들의 다양한 자치활동 영역 확대
 - 학생 언어문화 순화, 스포츠리그(반별 또는 클럽 대항전) 등

- 타인의 권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학교규칙 강조 필요
 - 학교규칙 규정 내용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적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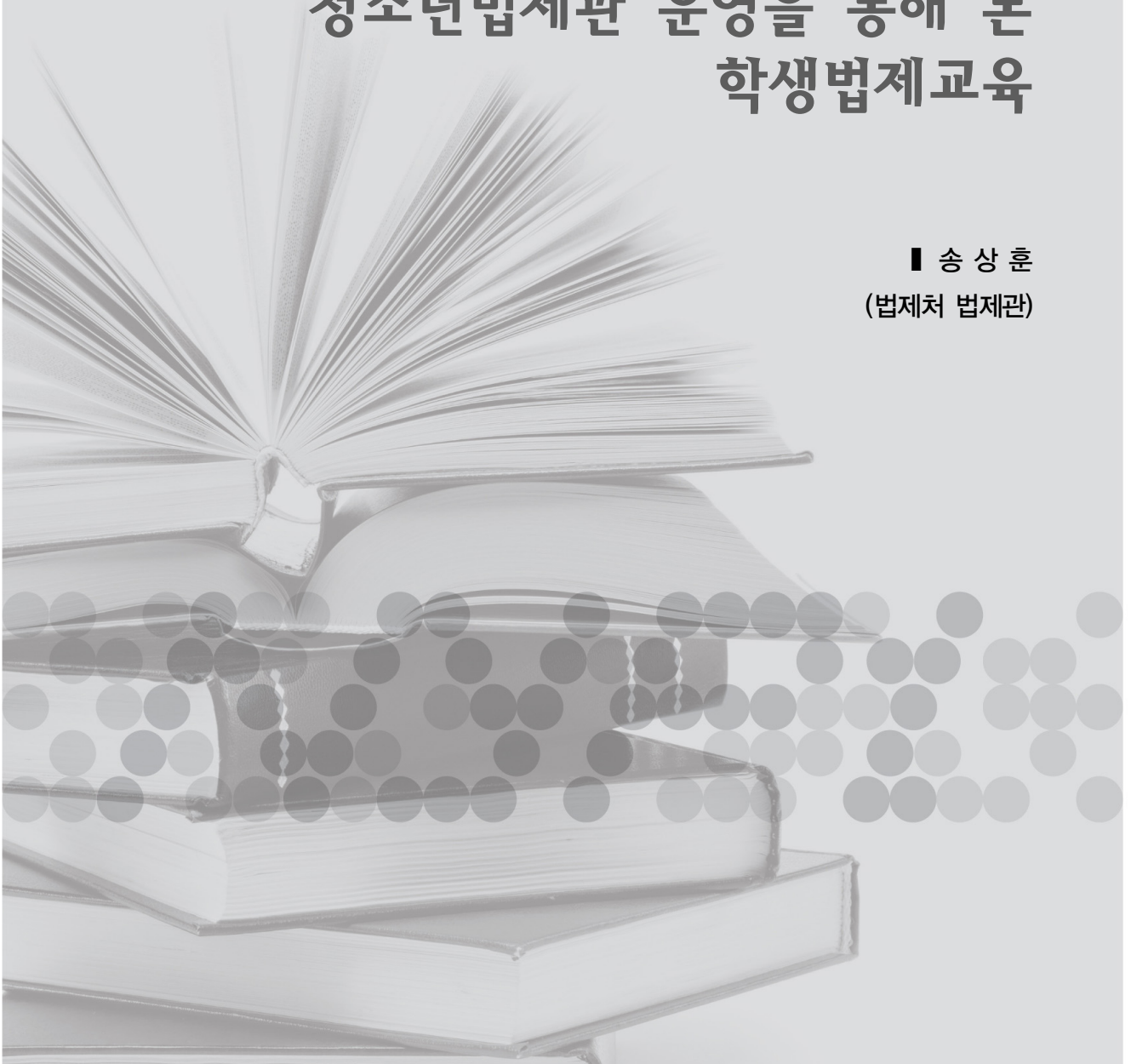
-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는 포상, 징계, 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 학생자치활동의 지속 및 운영, 학교규칙 개정절차를 규정
-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유해, 위험한 물건의 소지,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집단 괴롭힘, 사이버 폭력, 수업 중 불손행위 등 타인(학생, 교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상세한 행동양태와 금지 이유, 처리절차, 징계 등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끝.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3분과 논문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해 본 학생법제교육

■ 송 상 훈
(법제처 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해 본 학생법제교육

송상훈(법제처 법제관)

I.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의의 및 추진 배경

1. 의의

- 청소년법제관 제도는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2. 추진 배경

(1)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2012.2.6.)

- 작년 말과 올해 초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의 자살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법정부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7대 실천 정책을 수립하였다.
- 학교에서 남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하고 학생생활규칙 등 학생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규칙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인성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렇듯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 정립되지 않은 것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됨에 따라 7대 실천정책 중 법제처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과제로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학생생활규칙을 통한 인성교육'이 선정되었다.

- 학생생활규칙을 통한 인성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함으로써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려는 취지이다.
- 학생생활규칙을 통한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로 ‘학생생활규칙 운영 내실화’와 ‘학생생활규칙 현장 착근 지원’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어린이법제관 제도의 확대

- 어린 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제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법제관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 어린이법제관은 3월 중 모집하여 1년간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를 통해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온라인을 통한 법령개선의견 제시와, 법령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법치행정과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월별 주제토론마당을 통한 온라인 토론으로 올바른 토론문화를 습득하고 있다.
- 온라인 활동 외에 어린이 법제관 위촉식, 지역별 토론타당, 법 관련기관 방문행사, 어린이 법제관 법 캠프, 좋은 책 보내기 및 독후감 공모,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여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 어린이들은 법 캠프, 지역별 토론타당, 독후감 공모전 등의 행사를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이해하는 민주적 절차를 체득하게 되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을 접하고 있다.
- 어린이법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법치교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련 제도·법령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한 의견제시제도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가 법령입안 및 개선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이처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계기로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의 법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Ⅱ. 청소년법제관 제도 추진 경과

1. 청소년법제관 시범학교 지정(2012. 4.)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생활협약 제정·운영 등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선도하는 학교 30개 학교를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중 법제교육 선도 부문 학교로 5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 시범학교 현황

- 서울: 풍납중(송파구), 화원중(강서구)
 - 경기: 목암중(고양시), 장자중(구리시), 와부중(남양주시)
-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들 법제교육 선도 부문 5개 학교를 청소년법제관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다. 청소년법제관 시범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청소년법제관 시범학교로 지정된 법제교육 선도 부문 5개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시 법제처 법제관이 참여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적 법제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제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 개선활동을 벌이게 된다.
 - 청소년법제관 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법제소양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법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2012. 5.)

-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는 법제교육 선도 부문 5개 학교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양 부처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어린이·청소년법제관’,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정보 사이트 스쿨로(School-law)’ 운영 등의 사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청소년법제관 주도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자료도 공동으로 개발·보급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법제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서 법제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3. 청소년법제관 위촉

- 법제처는 법제교육 선도 부문 5개 학교별 추천을 받아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두 청소년법제관으로 위촉하였다(총 177명). 또한, 각 학교에 청소년법제관 전담교사를 두어 청소년법제관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확보하였다.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 학교규칙의 제·개정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 중에서 위촉하여 구성함.

■ 〈표 II-1〉 청소년법제관 위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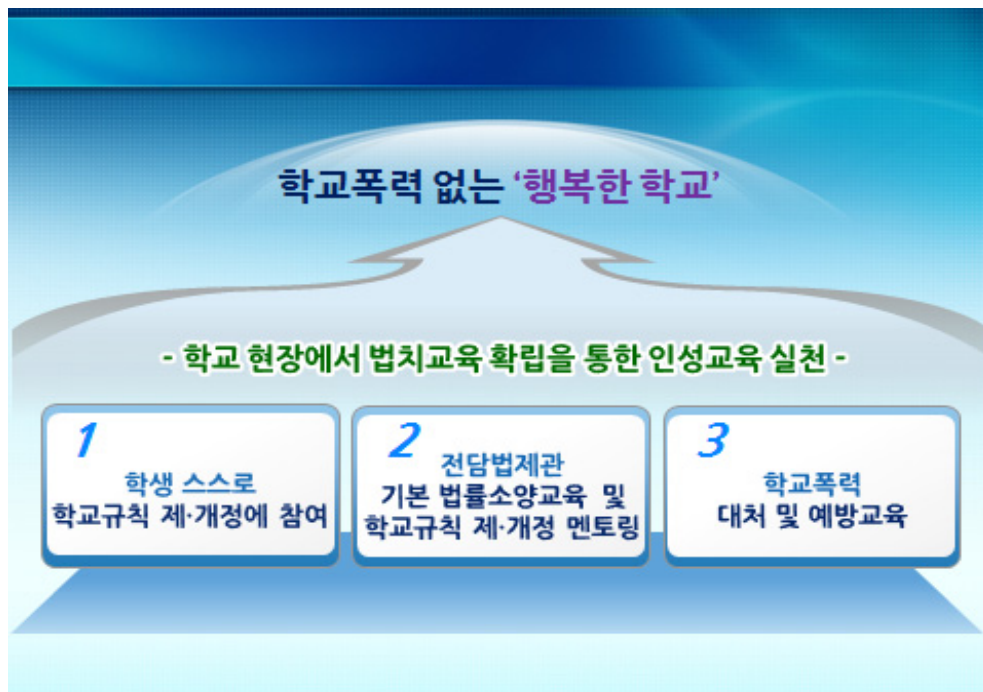
지역	학교명	청소년법제관 인원(명)
서울 송파구	풍납중	29
서울 강서구	화원중	30
경기 구리시	장지중	40
경기 남양주시	와부중	38
경기 고양시	목암중	40
합 계		177



【그림 II -1】 청소년법제관 및 전담교사 위촉식

Ⅲ. 청소년법제관 제도 개관

1.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비전



【그림 III-1】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비전

2. 추진체계

(1) 법제처

- 청소년법제관 위촉·운영
- 1학교 1법제관 지정하여 교육 및 법제지원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대상 법제 교육
- 학교규칙 만들기 법제 지원

(2) 교육과학기술부

- 청소년법제관 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지원
- 대상학교 및 청소년법제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등 각 급 학교 전파·확산

(3) 법령정보관리원

- 청소년법제관 교육교재 제작
-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4) 법제교육 선도 부문 시범학교

- 청소년법제관 추천 및 운영
- 법제처에서 제공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생 교육 실시

3. 주요 내용

(1) 청소년자치법제위원회 설치·운영

- 청소년자치법제위원회는 학교규칙의 제·개정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하며, 각 학급을 대표하는 청소년법제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의결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자치법제위원회는 기존 학교규칙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개선점을 발굴하고 이를 조문화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 되며, 청소년법제관의 주도 하에 학교규칙에 대한 각 학급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학교규칙의 개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 청소년자치법제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 청소년 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토론문화를 익히고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학생 스스로 규칙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규칙을 지키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2) 1학교 1 법제관 Matching

- 법제교육 선도 부문 시범학교와 법제관을 1대1로 매치하여 청소년법제관의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다.
 - 전담 법제관은 학생생활규칙의 제·개정 작업에 청소년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초 법제지식을 교육하고, 학생생활규칙의 제·개정 작업에 멘토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실효성 있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입법과정과 법체계에 대한 교육
 - 담당 법제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출장강의를 통해 법령의 입안과정을 알기 쉽게 교육하여 법의 민주적 행정 과정을 이해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 특히 주5일제 수업제 실시와 연계하여 각 법제교육 선도 부문 시범학교 청소년 법제관을 대상으로 한 토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법제적 지원
 - 담당 법제관이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기초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법제관이 학교규칙 제·개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담당 법제관이 학교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학생·교사 등과 함께 협의하여 학교규칙의 개정 의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을 실시한다.

〈표 Ⅲ-1〉 교육실적

일자	대상학교	참가 인원
6. 9.	풍납중(서울 송파)	29명
6. 22.	회원중(서울 강서)	30명
6. 16.	장자중(경기 구리)	40명
6. 20.	와부중(경기 남양주)	27명
7. 18.	목암중(경기 고양)	40명



【그림 Ⅲ-2】 교육현장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법제관 전담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연수
 - 청소년법제관 전담교사는 청소년법제관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법제관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청소년법제관 전담교사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제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법제관의 학교규칙 제·개정작업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게 한다.
 - 청소년법제관 전담교사 외에 학교와 가정에서 직접 청소년을 접하는 교사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법령정보관리원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정보 사이트 ‘스쿨로(School-law)’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 1박 2일 법 캠프
 - 청소년법제관이 법을 만들거나 법에 관련된 행사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입법과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박 2일 법 캠프 개최를 추진한다.

- 범 캠프에서는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한 성과와 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친교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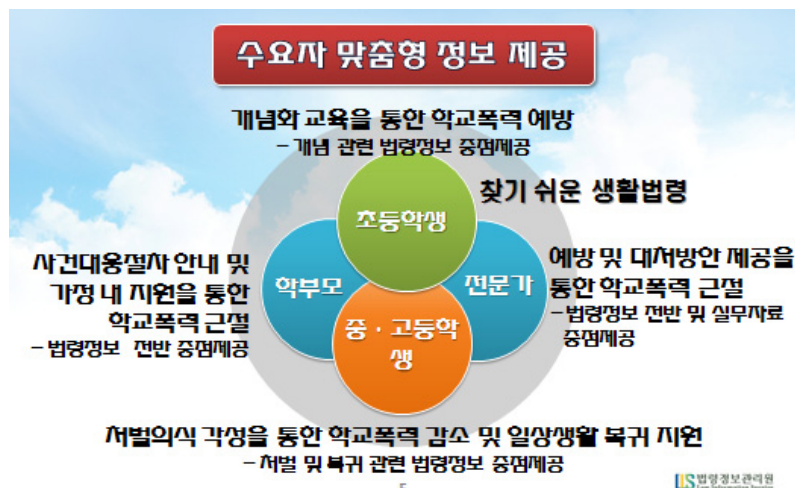
○ 법 관련 기관 탐방 행사

-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등 법 관련 기관에 대한 현장 체험 및 견학을 통해 청소년법제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킨다.
-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의 시설과 업무 현장을 관람하는 견학시간, 법 관련 기관의 연혁과 기능을 현직 법조인으로부터 전해 들어보는 현직 법조인과의 대화, 모의국회·법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법제관이 법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폭력 관련 법령정보 구축 및 교육

○ 수요자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각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재 법령정보관리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근절 종합정보 사이트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를 개설·운영 중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Ⅲ-3】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교육 실시

- 순회 교육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처방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5) 청소년법제관 교육교재 및 우수 학교규칙 제·개정 사례집 발간·보급

○ 청소년법제관 교육교재 제작·배포

-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법제관 기본 법제소양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재를 교육과학기술부, 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법의 정의, 법제처의 기능, 정부입법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방안 등을 자세히 서술하여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재는 청소년법제관 시범 5개 학교에 총 200권 제작배부하였으며(6월) 농촌지역 711개 중학교에 7068권을 배포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였다.

○ 우수 학교규칙 제·개정 사례집 발간 및 보급

- 학교규칙 제·개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 학교, 전담교사 및 학생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
- 학교규칙 우수사례집을 발간·보급하여 각 급 학교에서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전국적인 법치교육·인성교육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IV.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1.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성과

- 실효성 있는 학교규칙 제·개정
 - 학교규칙 제·개정작업에 청소년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 확립 및 법치意識 향상에 기여하였다.
- 체계적인 법제교육 시스템 구축
 - 법제교육 선도 부문 시범학교와 전담 법제관을 1대1로 매치하여 기초 법제지식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실효성 있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 컨설팅 및 멘토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법제관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제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2.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및 법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및 올바른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해 법제처의 교육 인력 및 콘텐츠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유치하도록 한다.
- 청소년법제관 시범학교 및 콘텐츠 확대
 - 현재 지정·운영 중인 청소년법제관 시범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법제관 대상학교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한다.
 - 학교생활규칙 외에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사이버공간의 언어적·정신적 폭력 예방, 게임중독 방지 등)에 대해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생활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전담법제관 등을 통해 법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3분과 사례 1

청소년 법제관 운영과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

■ 서울 풍납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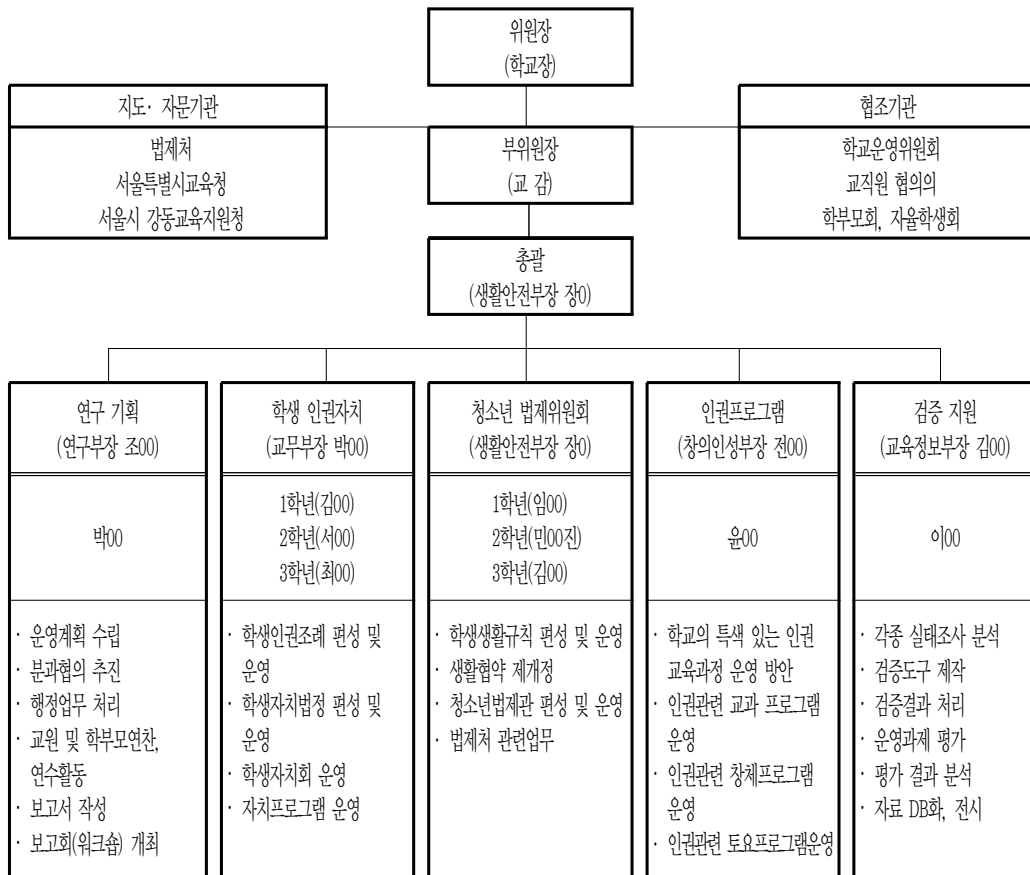


청소년 법제관 운영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서울 풍납중학교

I. 운영 조직

1. 교원 운영 조직



【그림 I -1】 교원 운영 조직도

2. 학부모 법제관 조직

〈표 I -1〉 학부모 법제관 조직

구분	학년 반	학생명	학부모명
회장	3-1	정00	송00
부회장3	3-6	권00	노00
부회장2	2-8	임00	이00
부회장1	1-3	이00	허00
총무	3-5	양00	김00
감사	2-1	안00	김00
감사	1-4	신00	김00

3. 청소년법제관 조직



* 각 학급회장 포함 29명 법제관으로 운영

【그림 I -2】 청소년법제관 조직도

4. 학생 자치법정 조직

〈표 I -2〉 학생 자치법정 조직

담당	구성	담당	구성
판사	심00 외 3명	배심원	이00 외 7명
검사	채00 외 3명	서기(사회)	김00 외 1명
변호사	고00 외 3명	행정(경호)	이00 외 3명

Ⅱ.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1. 인권존중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가. 학급 게시물 좋은 이야기와 마음을 움직이는 매직워드

(2학년 게시물 예시 : 8월 27일 ~ 8월 31일)

좋은 이야기 (준법정신)
중국 노나라에 공자 제자인 복불제라는 분이 어느 마을 원님으로 있을 때 이웃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 왔습니다.
- 내용 중략 -
◆ 매직워드 :

나. 교과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운영

교과 수업을 통해 인권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인권이 특별한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님을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각 교과별 담당 교사의 교과협의를 통해 인권관련 요소를 분석하며 현재의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교육 관련 요소를 추출하며 추출된 인권 요소를 교수학습 지도안 형태로 재 분류하여 각 교과별로 교과시간, 창체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였다. 관련교과는 사회, 도덕, 국어, 기술가정 등의 교과이며 각 교과별 인권 및 비인권 관련 요소 분석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분석하였다.

■ <표 II-1> 1학년 사회 교과 인권교육 예시

단원(대단원)	인권 관련 내용	인권 관련 수업 설계
9. 우리의 생활과 법	시민으로서의 권리	우리의 법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는가? 이에 대해 논의해본다.
10. 인권 보호와 헌법	헌법 속 인권	우리의 법 안에 존재하는 인권 보호의 내용을 찾고, 이를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본다.

* 교수학습지도안 : 생략

2. 청소년법제관 중심의 학생자치활동환경 조성

가. 청소년법제관 사업 월별 추진 계획

■ <표 II-2> 청소년법제관 사업 월별 추진 계획

일정	추진 내용
'12년 4월	· 청소년법제관 위촉 및 청소년법제위원회 구성 * 각 학급회장으로 선정(총 29명) · 학생생활규정 · 학생생활협약 제 · 개정 매뉴얼 자체 연수 * 청소년 법제관 및 운영관계자 ·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 관련 학생 및 운영관계자 교육 * 담당 법제관실과 협의 후 진행
'12년 5월 ~ 10월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 추진절차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 위원회 구성(4월 중) ▶ 학생(청소년법제관),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을 위한 제반 사항 추진 ▶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법제처 법제관 교육 ↓ 학생생활규정 제 · 개정안 발의(5월 중) ▶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7월) ▶ 청소년법제관 중심으로 학급회의, 학생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1차 시안 마련 (청소년법제관 워크숍)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법제처 법제 지원) ▶ 법제처 법제관의 초안 검토 ↓ 토론회, 공청회 개최 (9월 초)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법제처 지원) ↓ 2차 시안 마련 (9월 중순) ▶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법제처 지원) ▶ 법제처 법제관 시안 검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9월 말)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12년 10월	· 학생생활규칙 제 · 개정 사례 결과물 작성 · 배포 · 홍보 및 시행 * 학교홈페이지 등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실제 적용

나. 청소년 법제관 운영으로 자치 의식 함양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 규정과 학생생활협약 제·개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법정을 도입하여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준법정신과 책임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 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II-1】 청소년 법제관 법제교육 강사초빙

다. 학급회 중심 자치종례 때 법제관련 활동 실시

학급회장이 법제관이므로 학급회 중심 자치종례는 금요일 자율시간을 주로 활용하여 인권활동 및 법제관련 활동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한다. 교실에서 학교규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포스트잇 붙이기로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II-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포스트잇 붙이기 참여활동

라. 학생회 중심의 인권 영화제 상영

학생회 중심의 다양한 인권행사 실시로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실천계획으로서 6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인권주제 영화 등을 상영하여 인권의식을 실천하였다.

〈표 II-3〉 풍납 인권영화제 일정

회차	상영영화제목	상영일자	장소
1	날아라 펭귄	6/23	본관 3층 사회과 교실
2	언터처블	7/7	
3	헬프	7/14	
4	내 이름은 칸	8/18	
5	용서받지 못한 자	9/8	
6	제8요일	9/22	
7	천하장사 마돈나	10/6	
8	결혼 피로연	10/20	
9	파수꾼	11/3	



【그림 II-3】영화제 상영 장면 및 영화제 홍보 포스터

3.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학교환경 조성

가. 청소년법제관 운영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표 II-4〉 청소년법제관 운영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내역

발송일	발송 주제	주요 내용
6.21	청소년법제관 참여 캠프 안내	- 청소년법제관, 청소년자치법정위원 - 극기체험, 모의법정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협의
8.31	인성교육 실천 주간 운영 안내	- 인성중심 프로젝트 교과수업 안내 - 청소년 법제관 모의법정 개최
9.4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공청회 개최	- 생활문화 규정 제·개정 발제 및 토론 - 인권문화 규정 제·개정 발제 및 토론 - 학습문화 규정 제·개정 발제 및 토론
9.14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쟁점사항 설문조사 (학생용, 학부모용)	- 쟁점1 : 퍼머, 염색 - 쟁점2 : 귀걸이, 피어싱 - 쟁점3 : 소지품 검사

나. 법제관 운영 협의회

〈표 II-5〉 법제관 운영 협의회 실시 내역

실시일	협의 주제	주요 내용
4.27	선도학교 운영위원회 1차 협의 안건	- 운영조직, 청소년법제관조직 - 운영추진절차 협의
6.7	청소년법제관, 자치법정, 인권프로그램 세부계획	- 위촉장 수여(교원위원, 학부모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청소년자치법정위원) - 영역별 세부계획 수립 및 협의
8.28	학교생활규정 1차 시안 최종 검토	- 영역별, 팀별 1차 시안 발표 - 1차 시안 검토 및 향후 일정협의
9.11	2차 시안 마련 및 인성교육실천 우수사례 학술발표회	- 2차 시안 마련 협의 - 인성교육실천 우수사례 학술발표회 참여



【그림 II-4】 법제관 운영 협의회

다. 청소년법제관 활동

(1) 견학 및 탐방활동 : 국회의사당 8.29 (45명 참여)



【그림 II -5】 청소년법제관 국회의사당 견학 및 탐방

(2) 청소년법제관 캠프활동 : 강원도 영월, 태백 7.14~15 1박2일(42명 참여)



【그림 II -6】 청소년법제관 법제캠프 활동

Ⅲ.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1.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교사용)

설문조사 항목(부록1 탑재), 전후 비교 조사 : 보고서에 탑재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표 Ⅲ-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일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6.11 ~ 6.20	기초자료 수합	학생생활규정 원 자료를 분과별로 분류, 수합
6.21 ~ 6.29	청소년 법제관 분과별 협의 학부모 법제관 협의	청소년법제관 및 학부모법제관 분과별 협의
7.3 ~ 7.20	의견 수렴 (교사, 학생, 학부모)	전교직원, 전교생, 전체 학부모 설문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의견 수렴
8.16 ~ 9.7	1차 시안 마련	의견 수렴의 결과를 분과별로 정리하고 1차 시안 마련
9.10	공청회 개최	1차 시안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분과별 청소년 법제관 팀장이 발표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와 토론 활동 전개
9.14	쟁점사항 재 설문조사	공청회 결과 분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재 설문조사
9.21	2차 시안 마련	재 설문조사한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2차 시안 마련
9.27 이후	학교장 결재, 학운위 심의	최종 학교장 결재를 습득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청

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청소년법제관 활동

가. 기초자료 수합

〈표 Ⅲ-2〉 청소년법제관의 기초자료 수합 활동 내용

일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6.11 ~ 6.20	인권문화팀 제·개정 활동	인권조례, 용의복장, 교문지도 항목
	학습문화팀 제·개정 활동	학급규칙, 수업시간 태도, 교권존중문화 항목
	생활문화팀 제·개정 활동	기본생활 습관, 생활평점제, 성찰교실 항목



【그림 Ⅲ-1】 학생생활규정 기초자료 수합 후 분과별 설명회 활동

나. 청소년법제관 및 학부모법제관 분과별 1, 2차 협의

〈표 Ⅲ-3〉 청소년법제관 및 학부모법제관 분과별 협의 내용

일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6.21 ~ 6.29	인권문화팀 주요 안건 협의	두발(길이, 염색, 퍼머) 관련 교복(치마길이, 바지 변형) 관련 전자기기(휴대폰 등) 휴대사용 관련 악세사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피어싱)관련 인공외모(화장, 매니큐어, 서클렌즈)관련
	학습문화팀 주요 안건 협의	수업태도 관련 교사지도 불응 관련
	생활문화팀 주요 안건 협의	상점 항목 관련 별점 항목 관련
	학부모법제관 안건 협의	인권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주요 안건



【그림 Ⅲ-2】분과별 청소년법제관 팀장회의



【그림 Ⅲ-3】학부모법제관 안건 협의

다. 의견 수렴

〈표 Ⅲ-4〉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내용

일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7.3 ~7.20	교사 의견 수렴	학급 정·부회장 선출 : 런닝 메이트제 준법성과 관련된 징계 : 위법, 교칙위반에 대하여 징계 강화 수업시간 태도 불손, 지도 불응 : 별점 상향 조정 성찰교실 : 학부모 교육 기부단 활용
	학부모 의견 수렴	학습문화 관련 의견 수업태도: 자는 학생을 동영상으로 찍어 부모님께 전송 교사지도 불응 : 수업내용 3번 쓰기, 감상문 쓰기 인권문화 관련 의견 두발 : 염색, 파마는 금지. 단, 두발 길이는 자유 교복 : 치마길이는 무릎선 위에 바지는 약간의 변형은 허용 전자기기 : 수업시간에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 생활문화 관련 의견 상점 항목 관련: 상점을 많이 받은 학생에게 문화상품권 수여 별점 항목 관련: 별점부여 때 부모님 확인전화, 부모의견서 제출
	학생 의견 수렴	생활문화 의견 두발 완전자유화 실시 상/별점제 개선 : 상점 구체화, 기준 추가, 별점 처벌 강화 학습문화 의견 회장 선출방법 변경: 남학생 둘 이상, 여학생 둘 이상 후보 생활협약 : 투표권을 강요 시 그 학생에게 투표권 박탈 수업시간태도, 교권존중 의견 전체적인 처벌 기준을 완화한다. (떠들거나 월장 시 별점 대체)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 있기만 해도 똑같이 처벌받지 않도록 함. 인권문화 의견 두발 여자: 머리길이의 자유. 파마와 고데기 허용, 염색 일부 허용. 단, 염색은 파란색, 분홍색 등 너무 튀는 색은 금지 남자: 파마, 매직, 염색 허용, 길이는 귀 밑 3cm. 뒷머리는 어깨까지 허용 교복 : 체육복 반바지와 교복 t-셔츠 입기 허용 전자기기 : 압수기간 1주일로 축소 인공외모 : 액세서리 허용, 인공적 외모는 허용하되 서클렌즈는 금지, 귀걸이도 4개까지만 허용

라. 1차 시안 마련 (공청회 자료)

〈표 Ⅲ-5〉 주제별 1차 시안

분과	시안주제	주요 시안 내용
인권 문화	두발	길이자율(남여 모두), 염색 탈색금지, 색깔은 학생부 승인
	교복	착용 시기 융통성, 카디건 허용, 혼용금지, 치마길이 무릎 위7cm,
	전자기기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중 적발은 2주간 보관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귀걸이 허용, 피어싱 금지, 귀 4개 허용
	인공외모	서클렌즈, 색조라인 금지, 비비크림 허용, 매니큐어 허용
학습 문화	정부회장	1년 전부터 징계 없어야 함, 임명 후 징계 시 박탈
	수업	늦게 오면 교과담임 재량 벌점부과, 수업방해 시 자치법정 선택
생활 문화	상, 벌점	- 벌점부과: 1~5점, 흡연 적발 시 5점, 2차 적발 시 선도위원회 회부 - 상점부과: 1~3점, 학급활동 도우미 담임재량 - 기 타: 상, 벌점 상황 1주 1회 공개

마. 공청회 개최 : 2012.9.10(월) 15:30 (본교 체육관)



【그림 Ⅲ-4】 학생생활규정 1차 시안 공청회

바. 학생생활규정 쟁점사항 재 설문조사

(1) 학생생활규정 쟁점사항 추출

〈표 Ⅲ-6〉 학생생활규정 쟁점사항 내용

쟁점사항	쟁점사항 내용
본교 징계규정	- 예절 조항의 4항 평소 언행이 불손한 학생(교내봉사→사회봉사) -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사회봉사→특별교육)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통보된 학생(사회봉사→특별교육)의 징계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야 한다.
별점항목의 복장 및 두발	- 복장 및 두발의 규정에서 '규정보다 긴 머리'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화장은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교복바지 줄임(줄바지)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교복 미착용에서 생활복이나 가디건 또는 교복위에 걸치는 옷은 별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별점항목추가	-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학생은 별점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별점항목의 준법	- 개별학습반(장애우 등)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별점을 3점 신설한다. - 수돗가에서 물을 틀어 놓거나 물장난하는 경우 별점 1점 신설한다. - 고의적 학교기물파손(낙서 포함) 및 다른 학생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별점 1점 및 변상조치 신설한다.
상점항목	- 상점항목의 수가 너무 적고 제한적이므로 상점항목의 수를 더 늘리고 구체화한다.
문제행동학생 지도 방법	-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가 된 사항이 무엇 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어 더 이상의 문제행동을 억제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찰교실의 운영	성찰교실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2) 학생생활규정 쟁점사항 재 설문조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쟁점사항(설문 : 교사, 학부모, 학생용)가정통신문(2012.09.14 발송)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쟁점사항 설문조사(학생, 학부모)

* 아래의 항목 중 원하시는 의견란에 “찬성합니다.” 라고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쟁점1 퍼머·염색	허용하되,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해선 안된다.
쟁점2 귀걸이·피어싱	양쪽 귀 합쳐서 4개까지 허용하되, 크기는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용해선 안된다.
쟁점3 소지품검사	교육 목적상 필요시에는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허용해선 안된다.

- 이하 생략 -

사. 2차 시안 마련 : 9.21 쟁점 사항 반영(보고서 탑재)

아. 학교장 결재 및 학운위 심의(9.27 이후 반영)

IV. 청소년 자치법정 운영

1. 운영 목적 및 방침

가. 운영 목적

청소년법제관 운영과 함께 청소년 자치법정을 운영함으로써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 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학생들을 또래 학생의 변호와 선도를 통해 부적격 행동을 교정하게 하는 학생자치 프로그램으로 교칙 위반행위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규율하게 하고 기본생활습관을 고양, 법의식을 신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나. 운영 기본 방침

- (1) 학생 생활지도 시 체벌을 금하고 생활평점제를 대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 (2) 청소년 자치법정 개최는 벌점 누적 점수에 의한다. (누적벌점 20점부터 회부)
- (3) 과벌점 학생들에게 봉사, 계도활동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처벌을 제공하여 기본 생활태도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한다.

2. 세부 운영 계획

가. 행사 단계별 주요 실천 계획

■ 〈표 IV-1〉 단계별 주요 실천 내용

단계	주요 실천 내용
재판 전 단계	- 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 작성 - 통보, 재판공시
재판 단계	- 법정 준비 - 법정 재판절차 재판부 입장 → 개정선언 → 출석 확인 → 판사의 교육 → 과벌점자(피의자) 선서 → 검사의 과벌점자 회부이유 진술 → 변호인변론 → 검사 최종의견 진술 및 긍정적 지도 요청 → 변호인 최후변론 → 과벌점자 최종의견 진술 → 휴정 및 배심원 회의 → 재개정 → 배심원 평결문 낭독 → 판결 선고 → 재판부 퇴장
재판 후 단계	- 법정 판결 이행 관리(생활안전부) - 사후 평가 회의, -참가학생 역할 소감문 작성 및 발표

나. 청소년 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 〈표 IV-2〉 청소년 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합니다.
검사	-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합니다.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변호인	-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 과벌점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배심원	- 검사와 과벌점자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선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합니다. -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법정경위	-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을 알립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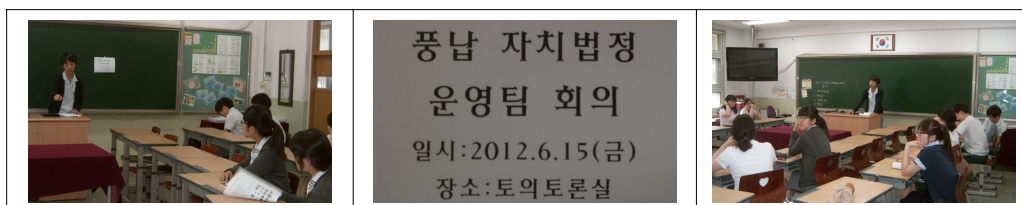
다. 청소년 자치법정에서의 긍정적 처벌 방안

〈표 IV-3〉 청소년 자치법정에서의 긍정적 처벌 방안

긍정적 처벌 방안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부모님과 선생님께 앞으로의 각오에 대한 편지 쓰기 외11건
교사 의견 수렴	- 동 학년 교실 순회하면서, 사과(반성문) 발언(발표)하기 외16건
- 동 학년 교실 순회하면서, 사과(반성문) 발언(발표)하고, 발표회에서 그룹을 만들어 개인기(그룹)발표하기 - 껌 몇 개 이상(종이컵 하나 가득) 떼기 - 동네 파출소 경찰아저씨랑 순찰 돌고 확인서 받아오기 - 학교에서 제공한 영어단어 100개 및 수학 100문제 풀기 - 인성 관련 책 1권 읽고, 독후감 쓰기 - 학급 유리창 20장 닦기 - 운동장 트랙 20~30바퀴 걷거나, 뛰기 - 징계는 피해자의 말도 들어주지만, 가해자의 말도 듣고 결정 - 지각 3번할 시, 1주일간 학교 8시까지 등교 후 확인을 받는다. - 수업시간에 떠들면 체육관 청소, 선생님 안마하기, 장애인 도와드리기와 같은 일을 한다. - 명심보감 쓰기(10장) - 돌이반 1회 봉사(독거노인 반찬) -> 별도로 봉사시간 인정은 되지 않음 - 벌점을 받은 학생들이 만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학생들이 기피하는 힘든 봉사하기 - 형식적인 봉사가 아닌 인정받은 기관에서의 봉사 - 선생님들 심부름 25회 하기 - 문제 학생들 반성 모임을 만들어서 2개월 간 참여하기 -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소감문 쓰기 -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을 하루 종일 따라 다니며 일 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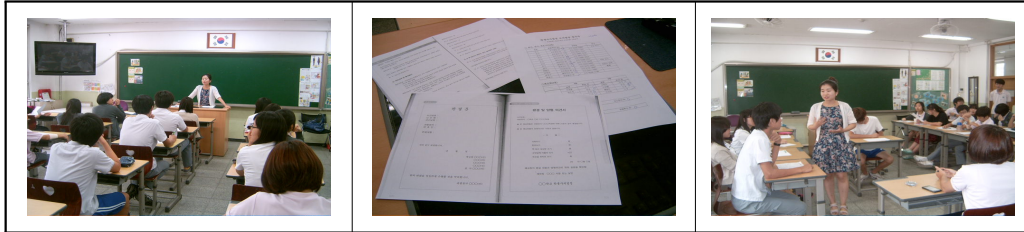
3. 청소년 자치법정위원 주요활동

가. 청소년 자치법정 운영팀 협의(6.15, 7.2)



【그림 IV-1】 청소년 자치법정 운영팀 협의

나. 청소년 자치법정 워크숍(교내 7.9, 8.23 실시, 서울교육문화회관 6.11 실시)



【그림 IV-2】 청소년 자치법정위원 교내 워크숍 운영팀 협의

다. 청소년 자치법정위원 현장 탐방(서울법원종합청사8.2, 헌법재판소8.29)



【그림 IV-3】 청소년 자치법정위원 헌법재판소 탐방

라. 모의법정 실시(8.31 실시, 본교 다목적실)



【그림 IV-4】 청소년 자치법정위원 모의법정 실시

V. 부 록

학부모 설문조사 예시(2012.06.26 발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교육 선도학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는 올해 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통한 법제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청소년 법제관을 중심으로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중인 생활평점제와 연계하여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준수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곳에 ✓표 하세요!

〈학부모용〉

- 내용 중략 -

4. 청소년 법제관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5. 앞으로 청소년 법제관이 우리 학생들이 지켜야 할 법(즉, 학교에서 학생이 지켜할 학교 규칙, 생활규정)을 제·개정하게 됩니다. 제·개정하기 전에 학생들은 학급자치회의나 공청회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게 되는데, 학부모님께서도 참여할 의지가 있나요?

(참고 :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로 학교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게 됩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 이하 생략 -

풍납자치법정 실시 매뉴얼

풍납 학생자치법정

2012. 8. 31.(금) 워크숍 참석자 : ()학년 ()반

① 재판부 입장 및 개정선언

서 기 : 지금부터 풍납중학교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열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들어온다.)

-내용 중략-

⑭ 판결 선고

판 사 : 풍납중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배심원들의 평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과벌점자에 대한 긍정적지도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판 사 : 과벌점자 ○○○학생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평결내용)을 선고합니다.(법봉을 두드린다.)

⑮ 폐 정

서 기 : (일어선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판사들, 모두 일어나 각자의 문서를 챙기고 법정을 나선다.)

서 기 : 풍납중학교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3분과 사례 2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자율과 책임존중의 송향문화 조성

■ 경기 와부중학교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자율과 책임존중의 숭향문화 조성

경기 외부중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정보들이 오남용 되면서 가치 판단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력적, 선정적 내용의 유해매체 증가와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공동체 의식 결여, 왕따, 이기주의를 낳게 되었고 청소년 문화의 부재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보도되는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학교문화가 학생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급속하게 변하는 학생들이나 사회의 의식에 따라가지 못하고 종래의 교육방법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학생이 학교 규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것은 규칙에 대한 인식과 그 절차에 대한 참여경험을 통해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만든 학교규칙이 학생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키는 하나의 약속이 된다는 점에서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대등하게 의견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나아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주적인 성인이 되는 전반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법제관을 통한 학교 규칙 제·개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교 규칙을 제·개정 하는 절차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참여도에 대한 이론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어떠한 형식, 방법, 절차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참여의 의도와 의사결정과정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제로 학교 내·외에서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법제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는데 따른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고, 준수하는데 있다.

둘째,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넓혀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있다.

셋째, 다양한 청소년법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 하고,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학교

학교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교육하는 장소이다. 교과부는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고자 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다. 민주적 공동체는 첫째, 교사와 학생, 학생 간의 평등한 관계와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미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에 대해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상호간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계약관계를 형성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사와 학생이 동의하는 원리와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진 민주적 공동체 학교는 곧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며 결국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써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생활규칙’,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불편이나 요구 사항’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민주적인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만들어질 때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해 내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견해 차이를 조율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합의를 끌어내어 실행에 옮기거나 학교에 건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며,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 역시 교육의 과정이 될 것이다.

2. 외국과 우리나라 학교규칙 제정 차이

외국의 경우 학교 의사 결정기구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법 제도상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입법례들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학생의 자치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각 학교의 학교 협의회는 물론 란트의 학교 위원회에도 학생 대표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초등학교까지 학부모나 교육행정 기관 및 지역 인사 대표와 동수로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 단순히 학생자치권 수준이 아니라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69년부터 학칙을 가지고 학부모 대표와 학생을 포함한 학교 운영협의회에서 토의할 것을 기초학습지도 요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하나의 사회로 보고 학생을 학교라는 민주사회의 구성원 내지 주체로 보아 학교라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참가하는 자체가 장래의 전체 사회의 운영자로서 자질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교육실현의 의미를 부여한 결과이다. 학생이 가령 미성숙, 부능력, 부사려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인간 존엄이 성숙되어야 하며 학교의 대상 내지 객체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 보는 전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칙의 제·개정 에 관한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전에 비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칙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교육 당국의 의지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절차에 의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 공동체에서 학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자는 것에 어느 정도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실태분석 및 실행목표

1. 실태분석

강점(Strength)	○ 학교장의 경영방침과 일치함 ○ 교육열이 높고 다방면에서 우수한 교사 확보 ○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이상 학력이 81.7%로 우수 재원 보유 ○ 학생자치회의실 겸 학생자치법정 전용교실 확보
약점(Weakness)	○ 주5일제 수업의 도입으로 학교일정에 여유가 없음 ○ 과보호로 자란 학생들이라 자기주도적 활동에 미숙함 ○ 참여교사의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 짜임새 있는 활동의 어려움
기회(Opportunity)	○ 학부모들의 높은 참여도 ○ 컴퓨터실의 현대화 리모델링으로 각종 자료수집 수월 ○ 편리한 교통으로 자치법정운영지도에 필요한 외부인사 영입 수월
위협(Threat)	○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기대감 저조 ○ 우수학생의 배타적인 인식 ○ 운영성과 미흡에 대한 비난의 두려움



S-O 전략 (강점으로 기회 획득)	S-T 전략 (강점으로 위협제거)	W-O 전략 (약점보완으로 기회활용)	W-T 전략 (약점보완으로 위협제거)
○ 사업과 일치하는 학교장의 경영방침, 우수한 교사, 참여도 높은 학부모의 협조, 우수한 학생의 참여로 성공확률이 높음 ○ 학생자치활동 전용실 구비와 외부인사 협조가 용이함	○ 학생자치활동 전용실 구비로 우수학생들의 배타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대감으로 참여의식 함양 ○ 우수한 교사의 능력 발휘로 불안감 해소	○ 자기주도적 활동에 미숙한 학생들에게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한 교육기회를 확대함 ○ 교사의 업무과중을 학부모 참여로 해소함	○ 우수학생의 배타적 인식을 직접 참여를 통한 능력발휘의 장으로 활용 ○ 자기주도적 활동에 미숙한 학생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가질 기회 제공

【그림 IV-1】 실태분석도

2. 실행목표

첫째, 청소년법제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셋째, 학교 규칙 제·개정에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규제와 처벌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약’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넷째,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는 정신을 함양하도록 한다.

다섯째, 사제동행 푸른숲교실을 통해 학생과 교사간의 친밀감 형성 및 행동수정을 하고, 나아가 부모님과 함께 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V. 연구의 실제

〈실천 중점 과제 1〉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한 학교규칙 개정

1. 청소년법제관이 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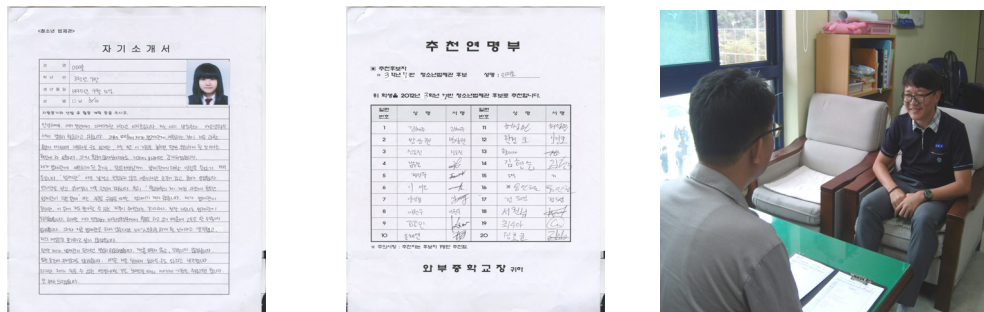
11년차 교사인 나에게도 생소했던 청소년법제관. 학교 규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법제관을 선발하여 규칙제정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것이 어찌면 학교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일반화를 위해 학기 초와 1학기말에 본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림 V-1, 2】 학기 초 청소년법제관 인식도(上) / 7월 청소년법제관 인식도(下)

위 차트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법제관에 대한 인식도가 3월에 비해 1학기말에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법제관이 학교규칙을 제·개정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법제관 선발 및 교육 실시



【그림 V-3】 청소년법제관 면접



【그림 V-4】 청소년법제관 위촉장 수여 및 교육

학기 초 법제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법제교육에 대한 전체 공고를 한 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법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지원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을 실시한 후 청소년법제관을 선발하였다. 다만 한 학급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급당 1명은 무조건 선출하도록 하고, 그 외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을 추가로 선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발된 인원은 총 38명으로 구성되었다.

6월 중순 경 법제처에서 담당법제관님께서 직접 학교로 오셔서 학생과 학부모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칙제정 의의, 방법, 효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을 병행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수한 사투리에 학생들이 재미있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3. 청소년법제관 체험 프로그램



전체 강의시간



대심판정



국회 정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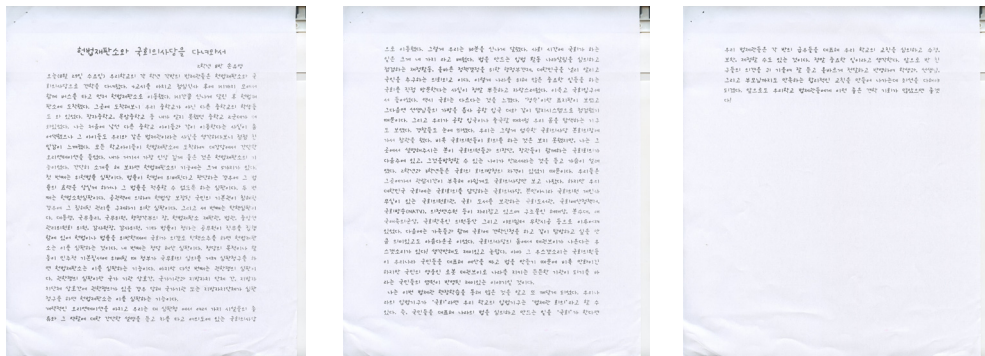
국회 본 회의장

【그림 V-5】 헌법재판소와 국회 견학

218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_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이제는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2학기 개학 후 실시한 청소년법제관 체험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견학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마치 대법관이나 국회의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신기한 듯 사진을 찍어대는 아이들도 많았다. 중학생 시절에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최고의 체험이 아니었나 싶다.



【그림 V-6】 견학 소감문

4. 학부모법제관 운영



【그림 V-7】 학부모법제관 위촉장 수여 및 교육

청소년법제관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법제관이란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졌다. 전체 학부모님 중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학부모법제관 모집을 한 결과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지원을 해주셨다.

주로 학부모회 중심의 어머니들께서 지원을 하였지만, 학교일에 처음으로 참여한 어머니께서도 법제관이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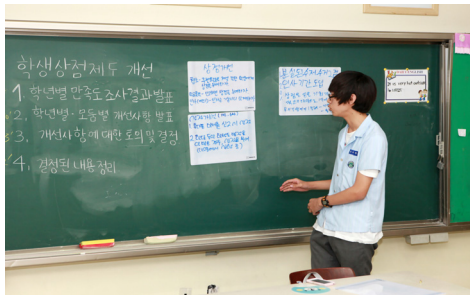
법제관님의 교육과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교육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5.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개최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 하고,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데 있다.

나아가 학생들이 규칙 뿐 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학칙은 학급의 의견수렴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법제관 회의를 통한 1차 시안 마련, 위원회를 거쳐 최종시안 마련, 운영위원회 심의, 최종안 확정, 학교장 결재, 학칙 공포 및 공시의 순서로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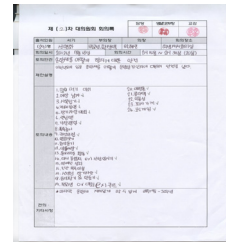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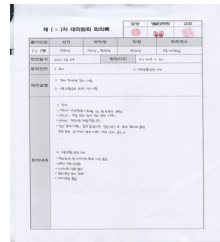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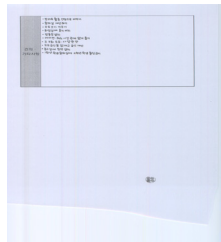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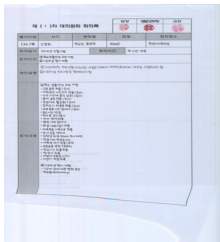
【그림 V-8】 학급회의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학생들 스스로 정하여 기본질서의식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실행하게 하였다. 학급회의를 통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길시 체크 리스트에 표시되어 학급에 대한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정했다. 또한 지속적인 규칙의 위반이 있을시 자리선택에서의 불이익, 청소구역 교환권 배제, 담임과의 면담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하였다. 규칙을 잘 지킨 학생은 학급표창과 자리 및 청소구역 선택권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학급의 기본 규칙으로 수업시작을 알리는 타종 전에 자리에 앉기를 정했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20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방안_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그림 V-9】 청소년법제관 1차 시안 마련 회의



【그림 V-10】 회의록

각 학급 구성원으로부터 나온 많은 안건에 대해 법제관들이 모여서 1차 시안을 작성하였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의견부터 너무나 터무니없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선별하는 회의도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학칙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축제와 기본생활 습관에 관한 의견도 많이 나왔으며, 방충망 설치, 우유크기 키우기 등 재미있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



학칙개정 위원회

【그림 V-11】 학교 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회의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전에 대해 긴 시간동안 의견을 나누었다. 그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학생생활과 관련된 규칙으로 개정된 사항 몇 가지를 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시기인 지금 한창 체격이 커지고 있어 입학식 때 입었던 여학생들의 조끼가 너무 조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의 의견도 동일하였고, 교사도 많은 동의를 하고 있어 여학생도 남학생과 같은 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 남녀 넥타이 색깔이 구별되어 있는 조항도 수정하여 남녀학생이 원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생생활평점제에 나와 있는 상점항목과 별점항목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 학교폭력을 목격하여 신고하면 상점을 주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고, 청소년법제관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던 부분이었다. 학부모님과 교사의 의견도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에 상점을 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 상점을 주어야 한다는 같은 의견이 나와서 개정이 되었다.

넷째, 학급회의에서 학생들 대부분이 여름 교복(하복) 반바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안전도 청소년법제관 회의에서 상정이 되었고, 위원회에서 다루었다.

여름에는 아무리 하복 바지라고 하더라도 활동이 왕성한 중학교 시절에 땀을 흘리는 학생이 너무 많고, 씻을 수 없는 교육 시설이라 수업을 하는데 너무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었다. 여학생도 치마라고 하지만 더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반대의견으로는 반바지를 착용하다가 덥다는 이유로 점차 짧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 핫팬츠로 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교복바지나 치마도 학생들의 개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점차 스키니 바지, 미니스커트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교복 반바지를 착용하는 부분은 당장 실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교복제작 기간이라든지 홍보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모을 수 있었다.

학부모위원 중 한분은 학생들이 규칙 개정해 관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라고 하였다.

6.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



법제관 학생들의 캠페인활동

학교폭력예방 POP 공모전 입상작

【그림 V-12】 학교폭력예방 활동

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써 놓은 유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주1회 등, 학교 시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점심시간 교내 순찰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회와 법제관 주관으로 학칙을 잘 지키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POP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제출하였다. 학생들의 호응도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천 중점 과제 2〉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

1.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 실시



【그림 V-13】 자치법정 진행요원 연수



【그림 V-14】 판사님과 함께하는 모의법정

학생자치법정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미래 판사, 변호사, 검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였다. 특히 변호사와 검사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5대1나 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았다. 무한경쟁 속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과정을 거쳐 인재를 선발하였다. 이후 6차례에 걸쳐 진행요원 연수를 꾸준히 실시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견학을 하면서 실제 법정에서 판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모의법정을 실시하였다.

모의법정이지만 장소가 실제 법정 장소였고, 바로 옆 호실에서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제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마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중간 중간에 판사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면서 실시를 하니 더욱 재미가 있고, 실제법정보다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

학생생활평점제(상벌점)와 연계하여 과벌점 학생에 대해서 기존의 교사 위주의 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자치적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법의식과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사제동행 푸른숲교실 실시



【그림 V-15】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산행

2011년부터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사제동행 등산은 학생생활평점제와 연계하여 과벌점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등산과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상점 항목이 너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개정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었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자율과 책임존중의 숭향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 그동안 법제관 운영과 학생자치회 중심 활동을 하면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법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집단의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법제관이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규칙 제·개정뿐만 아니라 하나의 학교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청소년법제관에 대한 홍보, 설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였으며, 지원자 중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였다. 또한 학부모법제관을 위촉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과거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규칙제정으로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이루어졌지만, 법제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학급회의 주관, 청소년법제관의 1차 시안 마련 회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였다.

- 여학생 조끼 대신 남학생이 착용하고 있는 니트형 조끼를 같이 입을 수 있도록 함.
-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넥타이 색깔을 남녀학생 구분 없이 착용하도록 함.
- 상벌점 항목을 구체화 하고, 특히 학교폭력을 목격하여 신고하면 상점을 부여하도록 함.

위 세 가지는 학교생활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반영이 되면서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켜야겠다는 준법정신이 생기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는 보복이 두려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고 정신을 높이고자 상점항목으로 만들어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현재 여름 하복을 반바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장·단점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둘째, 학생생활평점제와 연계한 학생자치법정은 교사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긍정적인 벌을 내리고 수행하는 학생자치회 중심의 활동으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과벌점자는 또래에게 긍정적 처벌을 받음으로써 교사

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규칙을 지키려는 습관이 형성되고, 법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다.

또한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제동행 푸른숲교실은 학생과 교사간의 친밀감 형성 및 행동수정을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모님과 함께 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처음에 과별점 학생들 위주로 실시를 하였지만 지금은 상점을 받기 위해 참석하거나 학부모님의 참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법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고, 불편하거나 고쳐야 할 법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법’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청소년법제관 활동은 인성교육과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있다.

기존의 규칙 제·개정을 학생 스스로가 아닌 교사나 대표성을 띤 몇몇의 학생들이 명목상으로 참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기존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학생들이 원하는 규칙을 만들어냄으로써 규칙에 정당성이 부여되었고, 규칙의 제·개정이 능동적이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법제관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나 주위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켜봐 왔던 학생들은 규칙 준수의 당위성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에서 법질서를 수호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함양에 좋은 기회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I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거나 악성댓글을 달아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기타 방법으로 욕설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에서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는 습관을 형성한다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상점이라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무심코 지나치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정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제 언

이 연구는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참여함으로써 준법정신, 소속감, 애착감이 생기고, 학생자치활동이 학교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수행에 있어서 통제 불가능한 현실적인 한계점들과 이들에 대한 보완점들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 및 더욱 진전된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법제관 활동 시간이 부족하여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만 학원수업 때문에 법제관 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법제관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급회의와 대의원회의를 수업의 일부로 보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발표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상위권 학생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위권, 소외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법제관 체험을 시키도록 하여 상위권 학생과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II. 향후 계획

1.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및 학부모동의서
2. 청소년법제관 및 학부모법제관 법 캠프 개최
3. 청소년법제관 평가회
4. 학교규칙 책자 제작
5. 2013학년도 신입생 책자 배부

참 고 문 헌

- 안승문(2002).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배우는 학생 자치활동, 학생회와 학급회 지도를 위한 자료(전교조)
- 김계리(2004). 학교규칙의 자율적 제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중등용). 서울:계문사
- 이규재(2012). 학생자치법정 활동이 중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 울산 삼정초등학교(2011). 긍정 · 다정 ·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 토현중학교(2011). 『그린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학생자치능력 신장 및 학교문화개선.
- 법무부. 사이버법교육센터 홈페이지.
- 법사랑. 사이버랜드 홈페이지.
- 법제처. 어린이 및 청소년법제관 홈페이지.

부록 1

제목(사업명) :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자율과 책임존중의 송향문화 조성

■ 지역교육청명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설립 구분 : 공립											
■ 신청유형																	
○ 학교문화 선도부문 (A-type) □																	
○ 법제교육 선도부문 (B-type) □√																	
○ 언어문화 개선부문 (C-type) □																	
■ 학교명 : 와부중학교																	
주 소		471-90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65															
전화 : 031-579-6299				FAX : 031-521-0725				홈페이지 : www.wabu.ms.kr									
교장명 : 김혜식						교감명 : 이해경				담당교사명 : 이화진 (HP:010-4564-7104)							
현재 학교 재직연수 : 0.1																	
학교 현황	총학생수	학급 수	급당 인원			학교 주요 연혁(사업 및 시범(선도)학교 중심으로)											
	1,015	27(1)	37.59			○ 2009학년도 교원 능력개발 평가 선도학교 운영 ○ 2010학년도 2009개정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교원 현황	교 원 수																
	교감	교 사		강사	계												
		남	여														
	1	10	35	3	49												
주요 사업 운영 요약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여건 조성																
	- 각종 소위원회 참여를 통한 학생자치활동 문화 조성																
	- 각종 위원회 참관 및 학생회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여																
	- 학생자치회의실 겸 자치법정 전용실 설치																
	○ 청소년법제관 운영을 통한 학교규칙 제·개정 및 준법정신 함양																
○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능력 신장																	
- 학생자치법정 자체 운영 및 긍정적 지도로 처벌을 대신함																	
○ 학생생활평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바로잡기																	
- Z.T(zero tolerance)로 준법정신 몸에 익히기																	
- 사례동행 푸른숲교실 실시																	

2012. 9.

외부중학교장 직인

부록 3

추천연명부

▣ 추천후보자

○ ○학년 ○반 청소년법제관 후보 성명 :

위 학생을 2012년 ○학년 ○반 청소년법제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일련 번호	성명	서명	일련 번호	성명	서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주의사항 :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 추천함.

와 부 중 학 교 장 귀하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3분과 패널토론 1

청소년법제관 운영과 학교규칙에 대한 토론

■ 정 성 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청소년법제관 운영과 학교규칙에 대한 토론

정성수(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먼저,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확대한 청소년법제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이를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적용한 사례를 잘 발표해주신 세분 발표자께 감사를 드린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하다.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법제관 제도는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키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진화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아직 그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 토론자로서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고 이것이 일반학생들에게도 그 효과가 파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법제관 제도도 주로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 위주이며 법제관 학생들만의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일반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어린 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 및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범학교(5개)의 경우를 보면,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의 학생대표(177명)를 모두 청소년법제관으로 위촉하였으나 향후 일반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법제관들의 주요활동은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대표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규칙을 실효성 있게 제·개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의 기본전제는 학교

규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실, 학교규칙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학교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청소년법제관 제도로 이를 바꾸려는 노력에는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교교육 이해관련당사자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거의 배제되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조차 학생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왔다.

올해 이루어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연구(한유경 외, 2012)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어 주로 교사가 학교규칙 제·개정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했다.

2. 학생 참여 활성화

매 학년 학기 초에 학급별로 학교규칙(특히, 학생생활규정)을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제·개정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제안된 의견들은 제·개정 위원회를 통해 정리하여 다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했다는 주인의식을 가질 것이며 자치활동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한편, 교사들에게도 학교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하여 교사-학생 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 및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이제는 단위학교가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없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규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 및 학교교육에 관심을 둔 일반인이 언제든지 해당 학교의 학교규칙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상당수의 학교가 학교규칙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외

부인의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고 활성화될 때 비로소 학교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다.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3분과 패널토론 2

청소년 법제관계 운영을 위한 제언

■ 서 권 수
(옥련여자고등학교 교감)



청소년 법제관제 운영을 위한 제언

서권수(옥련여자고등학교 교감)

청소년 법제관제 토론회와 관련하여 주변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들어 본 결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청소년 법제관이 뭐냐고?’반문을 하였다. 아직까지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범으로 시작하는 일이지만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생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으로 사회인식이 미미한 현실에서 청소년 법제관을 입안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교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청소년법제관 운영 계획에 있어서 생각되어지는 장점,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법제관제 운영의 장점은?

첫째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규칙을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여 제·개정하고 이를 지켜가는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오면서 우리나라의 가정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많아 교육을 가정에서 보다는 학교, 학원, 과외 등 학력중심의 공부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효심이나, 책임감,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등이 매우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이를 지적해주지를 않아 잘못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동안 교사들이 학교 규칙을 정하고, 규칙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해 왔으나 학생인권보장 등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학교에서도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에 이러한 제도가 학교현장에 적용되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로,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 가는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리라 기대해 본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초등학교에서의 경우 발표수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은 교사 주도의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

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다. 또한 주 5일제 수업, 교육과정시수의 과다 등으로 학생 자치활동의 시간을 할애할 수 가 없고, 오후 일정이나 토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참여도가 낮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장소나 시간의 확보하여 자치법정이나 학교규칙 제·개정 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셋째로, 학생들의 준법정신 향상이 학교폭력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발달이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면 보다는 학교폭력 등 부정적인 면의 영향을 많이 가져왔다. 학생들 간의 이러한 문제를 교사들이 인식하거나 대책을 세우기에는 항상 학생들의 의식이나 행동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청소년법제관의 운영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 문제학생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학교폭력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외 청소년 법제관이 되려면 많은 지식을 쌓게 되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됨은 물론 학력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법치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학교현장 적용에서의 어려운 점은?

첫째로, 풍납중학교의 경우 청소년법제관계 운영 교직원 조직을 보면 기존에 학생생활 지도부서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교무, 연구, 창의인성, 정보부에 부여함으로써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 물론 시범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담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도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둘째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법이나 기구가 너무 많아 운영에 있어서 집중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학급규칙, 학교 생활규칙, 그린마일리지, 선도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등이 있고, 이것을 학생회 선도부,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청소년법제관계라는 새로운 분야가 학교에 투입되면 기준을 생활지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남게 되어 이를 해결할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풍납중의 자치법정 결과 긍정적인 처벌 방안의 의도는 매우 우수하나 그 내용

을 보면 학급유리창 20장 닦기, 선생님 심부를 20회 하기, 운동장 20~30 바퀴 이상 돌기 등 비교육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있어 처벌을 받는 학생이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즉 교과서에 있는 시를 외우고 느낌 쓰기, 부모님께 발을 닦아드리고 인증샷 5회 해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심이나 애교심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와부중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운영의 실천이 늦어 금년에 과제 수행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적절한 결과 도출이 미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학교생활규칙의 개정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 제·개정되어진다면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와 캠페인, 서약식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치법정을 개최하려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이러한 과제수행은 단 시일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전 교직원의 단합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끝으로, 주 5일제 수업, 방과 후 학습 등으로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와부 중학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시간을 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3. 청소년법제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첫째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가 의지를 가지고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면 청소년법제관계는 학교폭력예방은 물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좋은 제도가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하나의 형식적인 연구가 아니라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전 교직원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각종 생활지도 관련 규정의 단순화로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 준다면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잦은 교체를 해소해 줄 수 있고, 업무의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관련 사안이 발생되고, 업무가 폭주하면선 전국적으로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나 교사는 해마다 교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결국 업무처리나 절차의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담당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된다. 청소년법제관계 시범학교 운영이 또 다른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학생회와 각종 위원회와 연계하여 조직의 단순화와 학교 내 규정의 단순화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로, 법제관계 운영 결과처리, 학생들의 징계나 조치, 처벌의 단계를 명확히 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단계에 맞는 기안문, 단계별 처리양식, 양정기준 회의록 작성법 등의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 교사의 경우 하나의 양

식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예시문이나 양식을 공유한다면 업무를 추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이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사회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에 긍정적인 요소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저해요소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정보, 각종 뉴스에서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어른들의 문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개선은 사회구성원이 노력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생들의 문제가 학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제3의 요소인 정보매체의 잘못된 이용이 청소년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청소년법제관계 운영의 사례는 학생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인 제도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학교규칙과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발표대회

3분과 패널토론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차 지 윤
(법률신문사 기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차 지 윤 (법률신문사 기자)

I. 들어가며

1. 학교폭력의 심각성

경찰청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8개월간 폭행·왕따 등 학교 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초·중·고 학생이 6만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7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에 한 명꼴로 구속됐다. 특히 올해 검거된 학생 중 구속된 학생 비율이 1.2%(1~8월, 210명)로, 지난해(0.5%·103명)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검거된 초·중·고교생은 2010년 2만5175명, 2011년 2만1957명, 올 1~8월 1만7792명으로 지난 2년 8개월간 총 6만4924명이다. 경찰 집계를 보면 초등학생 검거가 눈에 띄게 늘었다. 경찰에 검거된 초등학생은 2010년 467명, 2011년 46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올 들어서는 8월까지 894명으로 크게 늘었다.

2. 인성교육의 필요성

인성교육이 교과 교육만의 영역이나 책임이 아니지만 학교생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과활동을 감안할 때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³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가치나 도덕성 추구 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현행 한 시간뿐인 도덕과의 시간만으로는 감당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과 시간을 감축한 것도 도덕과 수업만으로는 가치·태도 교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전 교과로 가치·태도 교육을 확대·강화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지속성의 원리, 통합적 접근의 원리에 비춰도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 4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논의한 자리에서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매학기 초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기로 했다. 학교 별로 다양한 인성교육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인성교육 모델로 어울림학교 50개교를 선정·운영할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상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 학교가 적기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Ⅱ. 법조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1. 법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모의 청소년법정’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관련 연극에 15시간 참여하고 5편의 독후감을 쓰게 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에서 열린 제1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청소년 참여인단은 사건을 심리한 후 판사로 분한 이가영양(3학년)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반 급우에게 물을 뿌리고 커튼 안에 밀어 넣어 폭행해 피해학생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해학생 사건에 참여한 학생들은 판사와 보호소년, 청소년 참여인단 역할을 맡아 실제 소년보호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청소년참여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소년보호재판으로, 학교 측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정을 열어 형사 처벌 대신 청소년의 품행교정을 위한 처분을 내린다. 가정법원은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32개 학교에서 모의 청소년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2. 법무부, ‘대안교육센터’ 운영 확대

법무부는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학생들의 법 교육을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안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안교육센터는

2007년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돼 위기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예방과 재비행 방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안교육센터에는 △학교폭력, 절도비행, 성 비행, 약물 및 인터넷 중독 등의 방지 프로그램과 △분노조절, 또래상담, 예절교육, 장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확정 문제’나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검사나 대학교수, 전문 강사 등이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서울대, 서울교대 등에서 연수교육을 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교육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싸움이나 지각 등 경미한 교칙위반 사항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재판을 하고 처벌까지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6년 5개 학교에서 시작돼 현재 390여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여러 학생들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피해 학생의 심정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변호사단체의 ‘1학교-1고문변호사제’와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제도’

변호사단체도 학교폭력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제도’가 대표적이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학교현장의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변호사들이 돕는 제도로 한국교직원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도입돼 302개 학교에 위촉됐다. 고문변호사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발생 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학교-학부모, 학교-학생, 학생-학생, 학부모-학부모 간 분쟁 시 조정과 중재 등을 맡는다.

서울변회도 2008년부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법률문제를 자문하는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제도’와 461명의 변호사들이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Ⅲ. 마치며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겠다고 밝혔다.

이런 청소년법제관은 청소년자치법제위원회 설치·운영, 1학교 1법제관 Matching, 청소년법제관 전담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연수, 법 관련 기관 탐방 행사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기관에서도 이미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치교육 등 인성교육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어린이법제관’ 제도는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법제관 제도가 다른 기관과는 차별되는 내용으로 또한번 성공적인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